

주관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협동연구기관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국토연구원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인구고령화의 전개와 인구대책

이 삼 식 변 용 찬

김 동 희 김 형 석

집 필진

이 삼 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lss@kihasa.re.kr)

변 용 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byc@kihasa.re.kr)

김 동 회 (통계청, dhkim@nso.go.kr)

김 형 석 (통계청, hskim@nso.go.kr)

2004년도 고령화 사회 대비 협동연구 보고서 제목

번호	보고서 제목	집필 책임기관
04-01	인구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총괄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국토연구원
04-02	인구고령화의 전개와 인구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4-03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04-04	인구고령화와 보건·복지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4-05	인구고령화와 노인주거: 고령화사회 노인 주거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04-06	인구고령화와 거시경제	한국개발연구원
04-07	인구고령화와 재정	한국조세연구원

발간사

20세기 중엽 만해도 우리나라는 고출산 국가로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국가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었다. 급기야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출산억제가 중요한 부문으로 통합되었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은 경제 발전과 사회현상 변화와 함께 출산율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출산억제정책이 실시된 이래 약 20년 만에 우리나라 출산율은 인구 대치수준으로 낮아졌으며, 그 후에도 계속 떨어져 최근에는 세계적인 극저출산국가(lowest low fertility country)가 되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저출산은 저사망과 함께 인구구조상 불균형을 야기하며, 대표적인 현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된다. 인구고령화는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된다. 첫 번째로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두 번째로 생산가능인구가 늙어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노인 중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구고령화의 중요한 의미는 노인이 절대적, 상대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이들을 부양하여야 할 젊은층 인구들은 절대적,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인구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국가 및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1세기 전부터 유럽의 일부국가에서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 들어 더 많은 국가들이 저출산 및 그로 인한 인구고령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그만큼 인구고령화는 경제와 사회를 포함한 국가 전반을 변환시킬 수 있는 중대한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정책당국에서도 대책 부심에 노력을 하

고 있다.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아주 시급하다. 1983년 출산율이 인구대치수준에 이른 이래 20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좀더 일찍이 시작했어야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특히 저출산에 대한 대책은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책이 검토되고 수립될 필요가 있다. 출산억제정책과 마찬가지로 출산장려정책은 향후 인구규모 및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사회 전반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 연구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가 향후 우리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의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과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출산력 변동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들을 도입하여 인구고령화의 전개방향과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인구대책들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들은 오래 전부터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문제를 겪어 왔었던 OECD 국가들의 경험들을 참고하였다.

연구진은 이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준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박사와 오영주 연구원에 감사드리고 있다. 연구진은 또한 이 보고서를 읽고 조언해준 본 원의 장영식 연구위원과 조애저 책임연구원 그리고 동국대학교 김정석교수와 통계청 이지연 박사에게 감사드리고 있다. 편집에 수고해 준 박효준 연구원에게도 감사드리고 있다. 끝으로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것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박순일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목적	3
3. 연구내용	4
4. 연구방법	5
제2장 이론적 배경	7
1. 출산력 변동	7
2. 출산력 저하 원인	9
3. 시사점	13
제3장 인구변동 현황	14
1. 인구변동	14
2. 인구변동요인	20
3. 인구변동의 시사점	33
제4장 인구고령화 전개	35
1. 인구추계 방법 및 가정	36
2. 인구고령화 전개	44
3. 인구고령화 진단	58
4. 인구변동요인별 인구고령화 기여도	63
5. 인구고령화 전개의 시사점	69

제5장 출산력 변동요인	71
1. 개요	71
2. 출산력 변동의 인구구조적 요인	74
3. 출산력관련 가치관 변화	85
4. 출산력 변동의 사회경제적 요인	93
5. 출산력 변동요인의 시사점	97
제6장 외국의 인구고령화와 대응사례	99
1. OECD국가의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황	99
2. OECD국가의 출산력 변동 특징	103
3. 주요 국가 사례	112
4. 외국사례의 시사점	132
제7장 인구고령화 대응전략	138
1. 대응전략 기본틀	138
2. 인구고령화 대응전략	142
제8장 결 론	163
참고문헌	168

표 목 차

<표 3- 1> 인구규모 변동 추이, 1960-2000	16
<표 3- 2> 인구구조 변동 추이, 1960-2003	18
<표 3- 3>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60-2003	21
<표 3- 4>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출산율 변동 속도, 1970-2003	24
<표 3- 5> 합계출산율 변화에 대한 연령별출산율 기여도, 1970-2003	25
<표 3- 6> 합계출산율에 대한 연령별출산율 구성비, 1970-2003	26
<표 3- 7> 평균수명 변동 추이, 1973-2001	28
<표 3- 8> 국외입양아 변동 추이, 1958-2002	31
<표 3- 9> 미혼모 아동 등의 국외입양 변동 추이, 1958-2002	32
<표 4- 1> 시나리오: 합계출산율 변동 가정, 2003-2070	40
<표 4- 2> 평균수명 변동 가정, 2000-2070	41
<표 4- 3> 국제이동(순이동률) 가정, 1995-2000년 평균	43
<표 4- 4> 총인구 변동 전망, 2003-2070	45
<표 4- 5> 유소년인구(0-14세) 변동 전망, 2003-2070	46
<표 4- 6> 생산가능인구(15-64세) 변동 전망, 2003-2070	47
<표 4- 7> 노인인구(65세 이상) 변동 전망, 2003-2070	49
<표 4- 8> 총인구 중 노인인구비율 변동 전망, 2003-2070	51
<표 4- 9> 총인구의 평균연령 변동 전망, 2003-2070	52
<표 4-10>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 변동 전망, 2003-2070	53
<표 4-11> 노인인구의 연령구조 변동 전망, 2003-2070	54
<표 4-12> 노년부양비 및 총부양비 변동 전망, 2003-2070	56
<표 4-13> 잠재적부양비 변동 전망, 2003-2070	57
<표 4-14> 시나리오별 특정 인구규모 도달 시기	58
<표 4-15> 특정 인구규모 도달시기별 인구구조 차이	59
<표 4-16> 특정 인구규모 도달시기별 부양비 차이	61
<표 4-17>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율 전망, 2003-2070	62

<표 4-18> 생산가능인구 비중에 따른 시기별 인구고령화 비교	63
<표 4-19> 출산력 시나리오별 인구변동요인의 인구고령화 기여도	66
<표 5- 1> 출산력 및 혼인력 지표, 1972-2002	76
<표 5- 2> 가임기(15-49세) 여성의 미혼율 변동 추이, 1970-2000	80
<표 5- 3> 가임여성인구 변동 추이, 1970-2003	81
<표 5- 4>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 추이, 1980-2000	83
<표 5- 5> 미혼남녀의 결혼계획 유무, 2003	85
<표 5- 6> 미혼남녀의 결혼계획이 없는 이유, 2003	86
<표 5- 7> 유배우부인(15~44세)의 자녀관, 1991-2003	87
<표 5- 8> 미혼남녀가 제시하는 자녀가 있어야 하는 이유, 2003	87
<표 5- 9> 미혼남녀가 제시하는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 2003	88
<표 5-10> 미혼남녀가 제시하는 이상자녀수, 2003	88
<표 5-11> 기혼·미혼 남녀의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지는데 대한 태도	90
<표 5-12>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1998	91
<표 5-13> 맞벌이 부부의 가사 공평분담에 관한 태도, 2003	91
<표 5-14> 여성취업 장애요인에 관한 의식, 2003	92
<표 5-15> 자녀 1인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	92
<표 5-16>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93
<표 5-17> 출생아수 변동 요인	95
<표 6- 1> 일부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70-2003	100
<표 6- 2> 일부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동 속도, 1970-2003	102
<표 6- 3> 한국과 일부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비교, 1970-2003	103
<표 6- 4> 일부 OECD 국가의 노인인구비율, 1970-2050	104
<표 6- 5> 일부 OECD 국가의 혼외출산율, 1995-1997	108
<표 6- 6> 사례분석대상 국가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	113
<표 6- 7> 프랑스 가족정책의 변천, 1967-2004	117
<표 6- 8> 프랑스 가족정책	119
<표 6- 9> 스웨덴 가족정책	124
<표 7- 1> 출산수준 회복 및 안정화: 가족가치증대 전략	144
<표 7- 2> 출산수준 회복 및 안정화: 가족형성 전략	146

<표 7- 3> 출산수준 회복 및 안정화: 가족확대 전략	148
<표 7- 4> 출산수준 회복 및 안정화: 가족보호 전략	151
<표 7- 5> 출산수준 회복 및 안정화: 가족 재생산 기능 강화 전략	152
<표 7- 6> UN의 국제이민 추계 가정 및 결과, 1999	160

그 림 목 차

[그림 3- 1] 인구규모 변동 추이, 1960-2000	16
[그림 3- 2] 연령 집단별 인구 구성비 변동추이, 1960-2003	19
[그림 3- 3] 부양비 변동 추이, 1960-2003	19
[그림 3- 4]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70-2003	22
[그림 3- 5] 연령별출산율 변동 추이, 1970-2003	23
[그림 3- 6] 연령별출산율 변동 속도, 1970=100	24
[그림 3- 7] 합계출산율에 대한 연령별출산율 구성비, 1970-2003	27
[그림 3- 8] 평균수명 변동추이, 1973-2001	29
[그림 3- 9] 성별 연령별 순이동률, 1995-2000년 평균	33
[그림 4- 1] 시나리오별 합계출산율(TFR) 변동, 1970-2070	39
[그림 4- 2] 평균수명 변동 가정, 2000-2070	41
[그림 4- 3] 시나리오별 총인구 변동 전망, 1960-2070	45
[그림 4- 4] 생산가능인구(15-64세) 변동 전망, 1960-2070	48
[그림 4- 5] 노인인구(65세 이상) 변동 전망, 1960-2070	50
[그림 4- 6] 노인인구비율 변동 전망, 1960-2070	51
[그림 4- 7] 노년부양비 변동 전망, 1960-2070	56
[그림 4- 8] 인구고령화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 시나리오 II (TFR=1.19) ..	68
[그림 4- 9] 인구고령화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 시나리오 V (TFR=2.10) ..	68
[그림 5- 1] 출산력 결정요인에 관한 기본모형	73
[그림 5- 2] 출산력 변동요인에 관한 기본모형	74
[그림 5- 3] 조혼인율 및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83-2003	77
[그림 5- 4] 혼인건수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83-2003	77
[그림 5- 5] 여성 초혼연령과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88-2003	78
[그림 5- 6] 가임여성인구(15-49세)와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70-2003 ..	82
[그림 5- 7] 가임여성인구(15-49세)와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70-2003 ..	82
[그림 5- 8] 기혼부인의 평균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80-2000	84

[그림 6- 1] 일부 OECD국가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70-2003	101
[그림 6- 2] 일부 OECD국가의 노인인구비율과 합계출산율, 1970	105
[그림 6- 3] 일부 OECD국가의 노인인구비율과 합계출산율, 2000년대 초	105
[그림 6- 4] 일부 OECD국가의 노인인구비율과 합계출산율	106
[그림 6- 5] 프랑스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60-2002	114
[그림 6- 6] 스웨덴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60-2002	121
[그림 6- 7] 스페인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60-2002	125
[그림 6- 8] 일본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60-2002	128
[그림 7- 1] 인구고령화 대응전략 기본틀	141
[그림 7- 2] 출산회복 및 안정화 정책 추진 방안	154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한 국가의 인구는 출생과 사망 및 국제이동의 세 가지 모멘트에 의해 변동된다. 인구전환이론에 의하면, 고출산-고사망 시기에 인구 규모와 구조의 균형은 어느 정도 가능하였다. 이어서 출현된 고출산-저사망의 구도에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생산력 저하와 노인문제는 심각하지 않았다. 20세기 하반기만해도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고출산-저사망에 기인한 인구증가문제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였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저출산-저사망의 현상이 지속되면서 20세기 말에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여, 국가의 중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출산력 저하는 단순히 인구학적 현상으로만 간주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가 지대하기 때문이다. 출산력 저하는 사망력 저하와 상호작용을 하여 인구규모와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구고령화(population ageing)이다. 인구고령화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노인인구의 절대적 규모가 증가하는 현상,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현상까지도 포함한다.

인구고령화는 궁극적으로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복합사회시스템에서 인구의 불균형은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특

히, 저출산국가에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여 발생되는 불균형은 개인의 복지를 손상시키지 않고서 쉽게 치유될 수 없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노인은 그 특성상 의료보호, 생활보호,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을뿐더러 그 비용도 고가이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보다 사회보장지출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사망률 저하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을 부양할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현상의 장기간 지속으로 인하여 감소할 것이라는 데에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는데 반해 개인 및 국가의 노인부양부담은 증가하여 대내적으로 사회경제 전반적으로 활기가 사라지며 대외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가 초래될 것이다. 생산연령층 개인당 사회보장부담의 증가는 세대간 통합(intergenerational solidarity)을 위협할 것이다. 노인의 증가속도가 국가의 경제성장 속도보다 빠른 경우 사회보장재정은 더 큰 위협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저출산현상은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뒤늦게 나타났으나, 출산율 저하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고 그 수준도 세계적으로 낮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저출산현상은 1백년의 긴 시간에 걸쳐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인구대치수준에 도달한 이래 약 20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3년 현재 1.19로 어느 유럽국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고령화 정도가 높은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현상이 오래 동안 지속되어 왔던 선진국에서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의 중대한 과제로 다루어왔다. 1970년 이래 출산력이 인구대치수준이하로 계속되고 있는 서유럽국가들은 출산력의 저하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오랫동안 고심하여 왔다.¹⁾ 많은 유럽 국가들은 출산율을 일정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들

1) 이미 1970년대에 서구사회 정치가들 사이에는 출산율이 인구대치수준보다 훨씬 낮아져 사망자수가 출생인수를 초과하여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사회경제가 전반적으로 활기가 없어져 결국에는 서구문명이 몰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이삼식 외, 1999).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일본의 경우에도 1980년대에 이미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를 경험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합계출산율이 1989년에 1.57로 더욱 낮아짐에 따라 이를바 '1.57 쇼크'가 발생하여, 관계부처로 구성된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각종 대책들이 마련,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한번 낮아진 출산율을 회복시키는 데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그 효과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출산율 수준이 인구대치수준에 도달한 이래 20년이 지났으나, 그 수준이 회복되기보다 아주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 수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 정도는 서구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최근의 저출산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인구고령화는 가속화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심대해질 것이다. 우리도 서구사회나 일본에서 우려하여 온 저출산 현상의 부정적인 영향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의 영향은 인구 속성상 현재보다 중장기적으로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며, 그 효과도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출산율을 일정 수준으로 증가시켜 안정화하는 일과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긴요하다.

2. 연구목적

인구대치수준 미만의 저출산현상이 보다 장기화되고 있다. 여기에서 정책적 대응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하나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의 인구학적 현상을 변경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구학적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들 정책적 대응들은 배타적이기보다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하든 선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일은 인구고령화 전개의 특성들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다. 정확한 진단 결과에 기초하지 않은 즉, 추정 없는 정책은 의미가 없으며, 정책 없는 미래는 현재와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Lutz, 1998). 예를 들

어, 인구고령화 진단 결과는 비용함수와 결합하여 사회보장 개혁 및 많은 다른 중요한 정책이슈에 관한 비용-수익분석에 근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인구관련 정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속성을 감안할 때, 그리고 저출산현상의 지속이 향후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임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하다. 인구고령화를 진단하는 작업은 최근 저출산 현황과 그 원인들을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는 향후 인구변동 방향을 가늠케 할 것이며,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단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는 다음 세 가지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첫째, 저출산 수준과 속도 및 제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규명한다. 저출산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은 인구학적 측면과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한다. 최근 출산율 저하와 관련하여 혼인 및 출산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도 살펴본다.

둘째, 향후 출산력 변동에 따른 인구고령화 전개방향을 진단한다. 이를 위해 출산력 변동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인구추계를 실시한다. 인구추계 결과를 이용하여 향후 인구고령화에 대한 출산력, 사망률 및 인구구조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셋째, 인구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오래전부터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들을 고찰한다.

3.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 8개장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한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와 관련하여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다. 이론적 고찰은 출산력 감소의 한계성과 저출산의 원인 및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제 이론에 관해 실시되며,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의 시사점이 도출된다.

제3장에서는 인구억제정책이 처음 시작되었던 1960년대 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출산력 변동추이를 분석한다. 다른 인구변동요인들로

사망률과 국제이동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이를 요인의 변화 결과로서 우리나라 인구 변동의 특징을 분석한다. 인구변동추이에 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변동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향후 인구고령화를 전망하기 위한 것으로 2070년까지 인구를 추계하여, 향후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의 변동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출산력 변동에 대한 5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인구추계를 실시한다. 향후 인구고령화에 대한 출산력, 사망률 및 인구구조의 영향력을 진단한다.

제5장은 저출산 원인을 규명하는데 할애된다. 저출산의 원인들은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된다. 인구학적 요인으로 가임여성규모, 혼인력 및 유배우부인 출산력의 변동과 전체 출산수준의 변동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사회구조적 요인들로는 도시화, 여성의 교육정도, 경제활동참가 및 직업, 가족구조 등이 포함되며, 이를 요인이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OECD 국가들의 출산력과 인구고령화 수준을 분석하며, 과거 대응사례들을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외국사례는 OECD 국가 대부분을 포함하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대상 국가들로는 출산력 수준이 최근 회복하고 있는 프랑스와 스웨덴 그리고 최근에도 출산율 수준이 낮은 일본과 스페인이 포함된다. 분석내용은 비단 정책사례뿐만 아니라 저출산을 야기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사례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정책방향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7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향후 우리나라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한다. 제8장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향후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한다.

4.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태통계 결과이다. 이들 자료는 출산력 수준과 변동

을 분석하는데 이용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는 최근 출산력 변동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회귀분석에 사용된다. 여성부에서 최근에 실시한 「2003년 가족조사」의 결과도 자녀와 혼인 및 가족에 대한 개인 특히, 미혼남녀의 가치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이 연구에서 적용하는 주요 방법으로는 문헌고찰, 인구추계, 회귀분석 등이다. 문헌고찰방법은 제2장에서는 출산력 감소의 한계성과 출산력 변동의 원인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는데, 그리고 제6장에서는 OECD 국가들의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관한 사례들을 분석하는데 각각 이용된다. 인구추계방법은 출산력 변동 가정에 따른 향후 인구고령화 수준과 속도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된다. 인구추계는 향후 인구고령화에 대한 출산력, 사망력 및 인구구조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데에도 이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사망력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인구를 추계한다. 회귀분석방법은 최근 출산력 변동에 양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적용된다. 구체적인 변수와 모델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제시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출산력 변동

우리나라 출산율(합계출산율)은 2002년 1.17까지 낮아진 바 있다. 저출산국가들이 집중되어 있는 OECD 국가들의 출산율 수준은 과거 이태리에서 1.18(1995), 체코 1.13(1999; 1.14, 2000-2001), 스페인 1.15(1999)까지 낮아졌으며, 많은 국가들의 경우 다소 불규칙성을 보이나 대체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에 따라 많은 학자들은 출산율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낮아질 것인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여기에서는 출산율 변동에 관한 주요 이론들을 간략히 정리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출산력 변동에 관한 제 이론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출산율이 제로(0)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이론들, 출산율은 일정 수준에서 다시 증가하여 과거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이론들, 그리고 출산율 변동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이론들이다.

우선 출산율 변동에 관한 비관적인 이론들을 살펴보면, 베커 출산력 모형(Becker-Type Model of Fertility)을 들 수 있다. 이 모형은 신가정경제 출산력모형(New Home Economics Model of Fertility)으로 불려지는 것으로, 자녀를 가짐으로써 추구되는 만족은 자녀수가 아닌 자녀 전체적인 질의 함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가족이 생산하는 기본적

인 상품은 자녀의 질이라는 것이다. 이 모형에 의하면, 인간의 질적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로 개인의 시간가치가 증가한다. 만약 자녀가 시간 집약적인 상품으로 간주된다면 즉, 인간자본의 증가가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한계생산력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개인당 시간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자녀양육 보다 시간이 덜 소요되는 상품을 선호하게 된다. 소득효과는 자녀수보다는 자녀의 질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유도될 것이다. 결국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 모두가 출산을 기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Namboodiri and Luying, 1997).

Davis의 인구변동과 대응이론(Theory of Demographic Change and Response)에 의하면,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인간은 자신의 생활을 재조정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법으로 장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거나 가족규모 축소 또는 결혼 연기 등을 통해 의무 등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David, 1963). 데이비스는 후자의 경우 출산력이 이론적으로 0까지 도달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유동출산력이론(Wealth-Flows Theory of Fertility)에 의하면, 출산력 저하는 가족 내부의 경제적 구조와 관계가 있다(Cardwell, 1976). 즉, 세대간 부의 이동으로 인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장점이 되는 사회가 있는 한편, 그렇지 못한 사회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후자의 경우 출산력은 0까지 감소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제기하고 있다.

상대적 소득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에 의하면, 부부가 기대한 이상으로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유롭게 자녀들을 들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자녀 갖기를 주저할 것이다(Easterlin, 1978). 즉, 출산율은 기대되는 상대적인 소득과 자원에 따라 감소되는 만큼 0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적출산력이론(Socio-economic Theory of Fertility)에서 출산율이 자녀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Easterlin, 1983). 수요는 시간과 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식된다. 즉, 교육, 도시화, 신상품, 신기술 등이 소득과 시간과 관련하여 자녀보다 이득이 될 경우, 자녀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이론은 그 경우 출산율이 0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출산력 변화에 대한 이상론적 이론(Ideational Theories of Fertility Change)에서도 개인주의 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0까지 감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Preston, 1987). 인구전환이론(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에 의하면, 사망률은 감소하나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감소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출산력은 사망률과 달리 선천적인 것보다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므로 출산율이 0에 이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Namboodiri and Luying, 1997). Lee의 항상성 가설(Hypothesis of Homeostasis)에서는 맨서스(Malthus) 이론을 도입하여 인구증가율은 좋은 시절에 높아지나 나쁜 시기에는 낮아짐을 전제한다(Lee, 1994). 따라서 인구증가율이 낮아지면 여러 저지요인들이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인구증가율은 균형상태를 이루는데, 저지요인으로 기술진보 등은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위 이론들과 달리, Blake는 어느 사회든지 가족규모의 최저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거의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0에 도달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Blake, 1968). Easterlin은 과거 출산력의 변화주기를 미루어 보아 1990년대에 베이비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그러한 현상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Easterlin, 1980). 사실상 출산력 감소 요인에 대한 설명은 쉬우나, 출산력이 과연 어디까지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측이 쉽지 않다고 한다(Namboodiri and Luying, 1997).

2. 출산력 저하 원인

많은 연구들은 출산력 저하의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 교육적 이유, 사회·문화적 이유, 개인적인 이유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요인들은 독립적이기 보다 상호작용을 통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Roussel(1994)는 출산에 미치는 요인(효과)들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 경제적 효과(economic effects)로는 자녀 출산이 주거, 식량, 교육 등의 직접적 비용뿐만 아니라 모의 소득활동기회를 상실시키는 등의 간접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어, 결과적으로 부모의 출

산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문화적 효과(cultural effects)로는 사회계층간 규범의 차이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두 번째로 발생한 출산율 저하는 가치관의 변화, 학생 및 여성의 이동 증가 등이 결혼뿐만 아니라 이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동태 및 생활주기 효과(historical dynamics, life style factors)로는 출산행태가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해 경험된 전기적 모델(biographical model)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Atoh는 현대에 가장 주된 저출산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를 들고 있다. 그에 의하면, 대부분 여성들은 풀타임 직업 및 승진을 추구하는 동시에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적어도 과거에, 취업여성이 결혼하거나, 임신 또는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취업을 중단하게 된다. 일단 취업을 중단한 여성들은 자녀 성장 후 재취업(full time)을 원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 아주 어렵다. 이는 결국 가구 소득의 감소를 의미하며 기회비용으로 인식되어 혼인 및 출산기피로 이어진다. 고학력 여성일수록 행정, 경영, 전문가 등 상위직종에 종사하며, 남성 임금과 차이가 줄어들어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더 커질 것이다(Atoh, 1998).²⁾

Beets도 저출산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를 들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남성의 가사에 대한 역할이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여성의 가사와 경제활동참가간의 양립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옴에 따라, 결국 여성은 아이를 늦게 그리고 적게 갖으려 하며 심지어는 자녀를 갖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Beets, 1997).

이러한 저출산 원인은 결국 가사와 육아에 있어서 남녀간의 평등에 연계된다. 즉, 남녀간의 불평등의 지속은 출산율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남녀간의 평등이 오히려 출

2) 일본경제기획청의 추정에 의하면, 여성이 계속하여 취업하는 경우(A), 자녀출산 및 양육 후 5년 후에 풀타임 직업에 복귀하여 60세까지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B), 자녀 출산 및 양육 후 5년 후에 파트타임 일에 복귀하여 60세까지 종사하는 경우(C) 등 세 경우에 있어서 생애소득을 비교하면, B는 A의 26.8%, C는 A의 78.4%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Atoh, 1998).

산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Palomba와 그의 동료들은 남녀평등이 출산율에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즉, 남성의 가사의무를 강조하는 경우 여성의 자녀양육과 취업간의 양립이 용이하게 되어 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남녀평등 고취의 영향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여 과거에 비해 출산을 적게 하려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다.³⁾ 이외 소득을 중요시하는 물질주의 만연과 개인주의 사상은 자녀 출산에 대한 이익을 찾지 못하는 여성들의 출산 감소 또는 무자녀 경향을 증대시킨다(Palomba et. al., 1997).

거시적인 차원에서 고용상태의 불안정 및 불경기도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Hoem과 Hoem(1996)은 그 실례로 영국에서 1970년대 초이래 직업의 불안정으로 인해 출산율이 저하되었으며, 스웨덴에서는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로 인해 1980년 동안 출산이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에 불경기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사회복지비용이 삭감되어 그 영향으로 출산율이 감소되었다고 한다. Witt와 Wagner(1995)도 동독의 출산율이 통일 전(1990년) 1.6에서 통일 후(1993년)에 0.7로 낮아진 이유를 고실업, 시장에서 노동가격 저하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교육을 들 수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과 출산력과의 관계는 지역이나 개발수준 및 문화적 조건 및 시기에 따라 변화한다(UN, 1995). 그러나 대부분 연구들은 고학력 여성의 저학력 여성보다 출산력이 낮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Beets, 1997).

교육 참가는 그 자체로 혼인연령을 상승시켜 첫아이 출산시기를 늦추어 궁극적으로 전체 자녀수를 줄이게 된다. 교육은 다른 부문에의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Beets(1997)에 의하면 교육은 지식과 정보 및 새로운 사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3) 예를 들어, 남녀평등이 강한 북유럽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가부장적인 사회풍속이 강한 남부유럽(이태리, 스페인 등) 및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민족적으로도 가사와 고용 및 사회전반에서 남녀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앵글로색슨과 노르딕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의 6장을 참조한다.

이는 노동시장과 사회적 지위에서의 여성의 능력과 기회를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여, 태도와 행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그에 의하면, 교육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결혼선호도를 낮추어 궁극적으로 자녀수에 영향을 미친다.⁴⁾ 모의 교육수준 향상은 자녀의 사망률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다소 다른 차원일지라도 교육은 혼인연령과의 관계를 통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친다. 고학력 여성들이 증가하고 부부간 연령차이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고학력 고연령 여성들은 점차 결혼시장에서 배우자를 찾기가 어려워져 결국 혼인을 비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Palomba et. al., 1997). 보편혼이 사회규범인 한국에서 고학력 여성들은 미혼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혼인연령을 늦추나, 만혼으로 적절한 배우자를 찾을 수 없어 결혼을 포기하는 경향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Kim and Li, 1997).

교육비의 증가도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취학 전 교육부터 대학 까지의 교육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므로 부부는 양보다 질을 우선시 여겨 저출산 심지어 무자녀를 선호한다. 이는 자식이 더 이상 노후보장을 위한 투자로 인식되지 않고, 단지 부부(특히, 여성)의 시간과 소득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이기도 하다(Atoh, 1998).

Freedman(1995)은 저출산이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개인주의적 발상으로서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연기 등 사회·문화적인 이유에 의해 발생된다고 보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인해 생활이 풍족해지면, 안정주의와 개인주의가 가치관을 지배하게 되는데, 젊은 미혼층의 소비활동이 급격히 증가하여 결국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여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Lesthaeghe et al, 1988). 저연령층은 부모의 집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에 다니고 일상생활을 어머니에 의존하며 소비생활을 즐기려는 경향이 높아 가족부양 의무를 지지 않는 일종의 귀족적 미혼(aristocratic singles) 또는 기생층적 미혼(parasite singles)이 증가하여 결국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Atoh, 1998).

4) 유럽 국가들의 출산율 감소는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첫아이 출생연령 증가 및 무자녀 비율 증가에 기인하며, 특히 교육수준의 향상은 독일의 제2차 인구전환(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의 모토로 간주되고 있다(Beets, 1997).

3. 시사점

지금까지 제시된 이론들에 의하면, 출산력은 사망률과 달리 사회경제적 현상 및 가치관 등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인위적으로 조정이 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많은 이론들은 출산 조정은 한계가 없어 총합적인 개념으로도 출산율은 제로(0)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일부 이론들만이 사회적 규범의 작용으로 인해 출산율은 균형상태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출산율 제로의 이론들이 총합적으로 실현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출산율이 아주 낮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저출산 경향을 저지시키기 위해 국민의 의식 전환과 함께 자녀 출산 및 양육을 개인적인 의무로서만 여기지 말고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하기도 한다. 자녀 출산 및 양육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 연구 전체를 통해 강조되고, 그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기초적인 단초를 제공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녀 출산 및 양육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저출산의 결과로서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한 각도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저출산의 심각성을 진단할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에 기인한 인구고령화의 심각성은 인구학적으로 분석되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영향의 심각성은 이 연구와 합동으로 실시된 다른 연구들에 의해 심층 분석될 것이다.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원인들이 진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저출산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향후 분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고찰한 많은 연구들은 경제적 이유와 사회문화적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이유로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고실업과 고물가 및 높은 교육비가 제시되고 있다. 사회문화적 이유로는 가사와 자녀양육에 있어서 남녀간의 평등 가치관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들은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경향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그 연계성을 규명하는 한편, 효과적인 대책들을 강구하는 일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 3 장

인구변동 현황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인구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인구 변동은 규모와 구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인구 변화는 인구변동요인 즉, 출생, 사망 및 이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인구 변동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구변동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인구의 변화를 살펴본 후, 그 변화를 초래한 인구학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변동요인들 중 출산력은 인구 규모와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인구이동은 사망률에 비해 인구구조보다 인구규모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Lutz, 1998). 그 이유로는 사망력이 전쟁, 기근, 전염병 등 특정한 사건이 없는 한 일정한 양상으로 서서히 변화하기 때문이다(이삼식 외, 2001).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까지의 경향을 살펴보면 인구이동(국제이동)이 전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이다(통계청, 2001). 이러한 이유로 분석은 출산력에 초점을 두었다. 물론, 출산은 다른 인구학적 요인들과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1. 인구변동

가. 인구 규모

우리나라 총인구는 1960년 약 2,500만명에서 1980년 약 3,800만명,

2000년에 약 4,700만명으로 증가하여, 지난 40년 동안 약 2,200만명이 증가하였다(<표 3-1>). 2000년 총인구 규모는 1960년 수준에 비해 약 1.88 배가 커졌다. 지난 40년 동안 총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1.58%로 나타났다. 기간별로는 1960-65년 기간 연평균 2.75%로 높았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둔화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1970-75년 기간 처음으로 2%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1985-90년 기간에는 약 1%로 낮아졌다. 가장 최근인 1995-2000년 기간 증가율은 0.83%로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연령 집단별로는 유소년인구(0-14세)의 경우 1972년 1,386만명으로 정점을 이룬 후 급격히 감소하여, 2000년에 991만명으로 나타났다.⁵⁾ 지난 40년 동안 유소년인구는 오히려 68만명(연평균 1.22%)이 감소하였다. 유소년인구는 1960-65년만 해도 연평균 3.44%가 증가하여,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970-75년 기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으며, 1985-90년 기간에는 무려 -2.29%로 낮아졌다. 1995-2000년 기간에도 유소년인구는 연평균 1.22%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960년 1,370만명에서 2000년 3,370만명으로 2천만명(또는 연평균 2.25%)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 생산가능인구의 규모는 1960년 규모의 2.46배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1970-75년 3.07%로 정점에 이른 후, 1985-90 2.09%, 1995-2000년 1.10%로 지속적으로 둔화되었다.

노인인구(65세 이상)는 1960년 70여만명에 불과하였으나 1975년경 1백만명, 1990년경 2백만명, 2000년경에 3백만명을 상회하였다. 지난 40년 동안 노인인구는 4.7배(약 270만명)가 증가하여, 연평균 3.86%의 증가율을 보였다. 노인인구의 연평균증가율은 1965-70년 2.35%, 1975-80년 3.59%, 1985-90년 4.62%, 1995-2000년 4.90%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5) 우리나라 유소년인구가 정점에 이른 시기는 선진국(1965년, 27.5%)에 비해 약 5년이 늦으나, 2030년에 거의 선진국 수준(16.0%)에 이를 전망이다(이삼식 외,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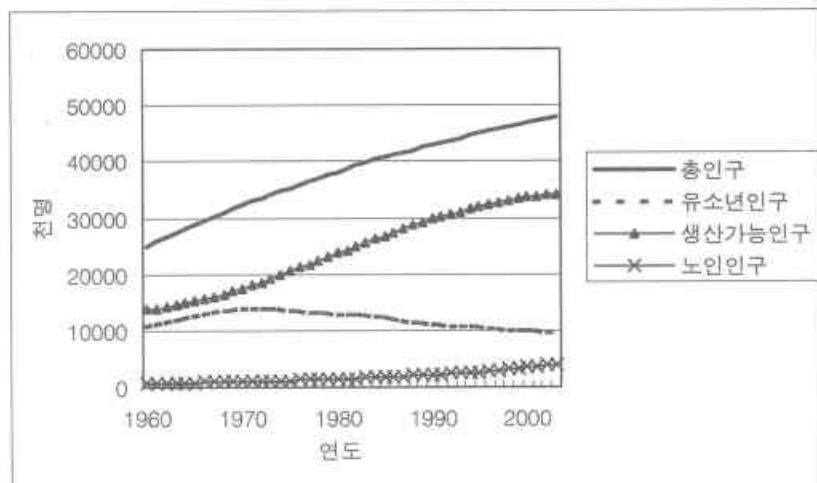
〈표 3-1〉 인구규모 변동 추이, 1960-2000

(단위: 천명, %)

구 분	인구규모(천명)				연평균증가율(%)			
	총인구	유소년 인구 (0-14세)	생산 가능 인구 (15-64세)	노인 인구 (65세+)	총인구	유소년 인구 (0-14세)	생산 가능 인구 (15-64세)	노인 인구 (65세+)
1960	25,012	10,588	13,698	726	-	-	-	-
1965	28,705	12,578	15,246	881	2.75	3.44	2.14	3.87
1970	32,241	13,709	17,540	991	2.32	1.72	2.80	2.35
1975	35,281	13,614	20,449	1,217	1.80	-0.14	3.07	4.11
1980	38,124	12,951	23,717	1,456	1.55	-1.00	2.97	3.59
1985	40,806	12,305	26,759	1,742	1.36	-1.02	2.41	3.59
1990	42,869	10,974	29,701	2,195	0.99	-2.29	2.09	4.62
1995	45,093	10,537	31,900	2,657	1.01	-0.81	1.43	3.82
2000	47,008	9,911	33,702	3,395	0.83	-1.22	1.10	4.90
1960-2000	21,996	-677	20,004	2,669	1.58	-0.17	2.25	3.86

주: 연평균증가율은 Exponential curve에 의한 인구증가률을 가정하며, 5년 전부터 변동임.
 자료: 통계청, 2001.

[그림 3-1] 인구규모 변동 추이, 1960-2000



자료: 통계청, 2001.

나. 인구구조

지난 약 40년 동안 인구구조의 변화는 <표 3-2>와 [그림 3-2] 및 [그림 3-3]에 각각 제시하였다. 앞서 인구규모 측면에서 유소년인구는 1972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총인구 중 유소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66년 43.9%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00년 21.1%, 2003년에 20.0%로 낮아졌다. 반면,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1960년 54.8%에서 2000년 71.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노인인구 비중은 2002년 2.9%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7.2%, 2003년 8.3%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노인인구비중이 2000년에 처음으로 7%대로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게 되었다.

총합적인 의미에서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여야 할 유소년인구 규모(유소년부양비)는 1966년 82.8%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1980년 54.6%, 1990년 36.9%, 2000년 29.4%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또 다른 종합적인 의미를 가진 부양부담지표로서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여야 할 노인 규모)는 1960년 5.3%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부터 10%대에 진입하였다. 즉, 노년부양비는 유소년부양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노인인구 증가에 힘입어 꾸준히 상승하여 왔다.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를 합한 총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가 유소년인구와 노년인구를 부양하여야 할 부담 전체를 의미한다. 총부양비는 유소년부양비가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인 1966년에 88.7%로 정점에 도달하였다. 그 후 노년부양비 증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유소년부양비가 감소함에 따라 총부양비도 감소하였다.⁶⁾ 2000년 총부양비는 약 40% 수준으로 1970년대 수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다. 총부양비 중 더 큰 비용이 요구되는 노년부양비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6) 일반적으로 노인의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의 수요가 높은데다가 그 비용도 고가로 단순 인구구조지표인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모순이다. 노년부양비는 유소년부양비보다 훨씬 큰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적이든 공적이든 노인 1명을 부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자녀 1명을 부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비율은 5:3으로 노인부양부담이 더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yder, 1997).

〈표 3-2〉 인구구조 변동 추이, 1960~2003

(단위: %, 명)

구 분	인구구조			부양비			잠재적 부양비	노령화 지수
	유소년 인구	생산가능 인구	노인 인구	유소년 부양비	노인 부양비	총 부양비		
1960	42.3	54.8	2.9	77.3	5.3	82.6	18.9	6.9
1965	43.8	53.1	3.1	82.5	5.8	88.3	17.2	7.1
1970	42.5	54.4	3.1	78.2	5.6	83.8	17.9	7.3
1975	38.6	58.0	3.4	66.6	6.0	72.6	16.7	8.8
1980	34.0	62.2	3.8	54.6	6.1	60.7	16.4	11.2
1985	30.2	65.6	4.3	46.0	6.5	52.5	15.4	14.2
1990	25.6	69.3	5.1	36.9	7.4	44.3	13.5	19.9
1995	23.4	70.7	5.9	33.0	8.3	41.3	12.0	25.2
2000	21.1	71.7	7.2	29.4	10.1	39.5	9.9	34.1
2003	20.0	71.7	8.3	28.0	11.6	39.6	8.6	41.5

주: 유소년부양비= 0~14세 인구/15~64세 인구×100(%).

노년부양비= 65세 이상 인구/ 15~64세 인구×100(%).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

잠재적 부양비=노년인구/생산가능인구.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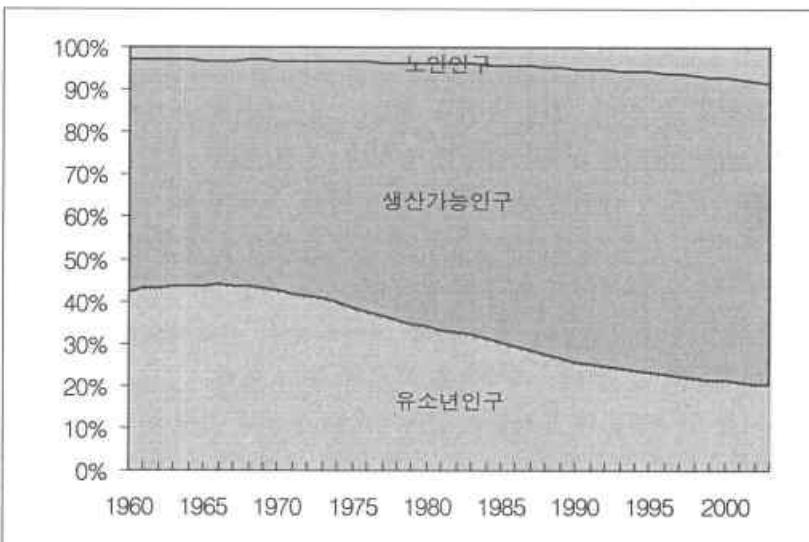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 2001.

2) 2003년 인구는 본 연구에서 최근 출산율 변동을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임.

생산가능인구가 노인을 부양하여야 하는 부담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시해주는 지표로 잠재적부양비(potential supportive ratio)가 있다. 잠재적부양비는 1960년 18.9명에서 2000년 9.9명, 2003년 8.6명으로 감소하였다. 인구 구조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부담은 지난 40년 동안 2배 증가하였으며, 최근에 들어 가속화되고 있다.

노령화지수는 유소년인구 100명당 노인인구로 산출된다. 유소년인구가 노인인구를 대체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노령화지수가 높을수록 세대간 대체 정도는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노령화지수는 1960년 6.9%로 그만큼 인구구조가 아주 젊었다. 그러나 노령화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0년에는 34.1%, 2003년에 41.5%로 각각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는 여전히 젊은 편에 속하나, 노령화지수의 상승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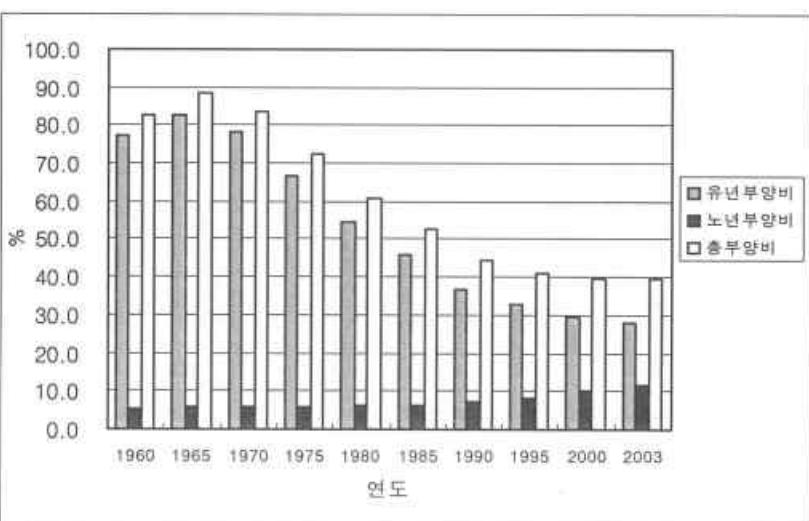
[그림 3-2] 연령 집단별 인구 구성비 변동추이, 1960~2003



자료: 1) 통계청, 2001.

2) 2003년 인구는 본 연구에서 최근 출산율 변동을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임.

[그림 3-3] 부양비 변동 추이, 1960~2003



자료: 1) 통계청, 2001.

2) 2003년 인구는 본 연구에서 최근 출산율 변동을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임.

2. 인구변동요인

앞서 우리나라 인구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총인구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율은 현저히 둔화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인구 구조적으로 유소년인구의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생산가능인구는 여전히 증가세에 있으나, 그 증가율은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인구변동추이는 규모측면에서 인구성장률이 제로(0)에 가까워지며, 구조적으로 인구고령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동의 특징들은 근본적으로 출산과 사망 및 국제이동의 인구변동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국제이동의 영향이 미세하다고 가정할 경우, 출산을 저하로 출생아수 및 유소년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사망률 저하(또는 평균수명 상승)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두 모멘트의 상호작용으로 총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구고령화를 총 인구 중 노인인구비율로 측정할 경우, 저출산 지속으로 인한 유소년인구의 감소는 분모가 되는 총인구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평균수명 상승으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는 분자에 정적 영향을 미쳐, 두 방향에서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최근까지 인구 규모 및 구조, 특히 인구고령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출산력과 사망력 및 국제이동의 인구변동요인들의 변화를 진단하고자 한다. 한편, 출산력과 사망력의 인구변동요인들이 인구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화는 제5장에서 향후 인구고령화 전개 속도 등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실시될 것이다.

가. 출산력

1) 출산력 수준

연간 출생아수는 1960년 1,041천명으로 1백만명을 상회하였으며,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자녀수 즉,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은 6.0명으로 아주 높았다. 그러나 인구의 양적 증가 억제정책이 가족계획사업과 함께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가 급속히 감소하였다(<표 3-3>, [그림 3-4]).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으로 낮아졌으며, 1983년에 인구대치수준 (population replacement level)인 2.08명에 이르렀다. 합계출산율은 1998년부터 1.5미만으로 낮아졌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2001년 1.30, 2002년 1.17, 2003년 1.19로 더욱 낮아졌다. 최근 출산율은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며, 인구대치수준 이하의 저출산현상이 20년 동안 지속되었다. 연간 출생아수도 1960년 1,041천명에서 1983년에 663천명, 2001년 557천명 그리고 2003년에 494천명으로 계속 감소하였다. 2003년 한해 출생아수는 1960년 수준의 47.5%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변동 추이는 [그림 3-4]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 3-3>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60~2003

(단위: 여성 1명이 가임기간동안 낳을 자녀수,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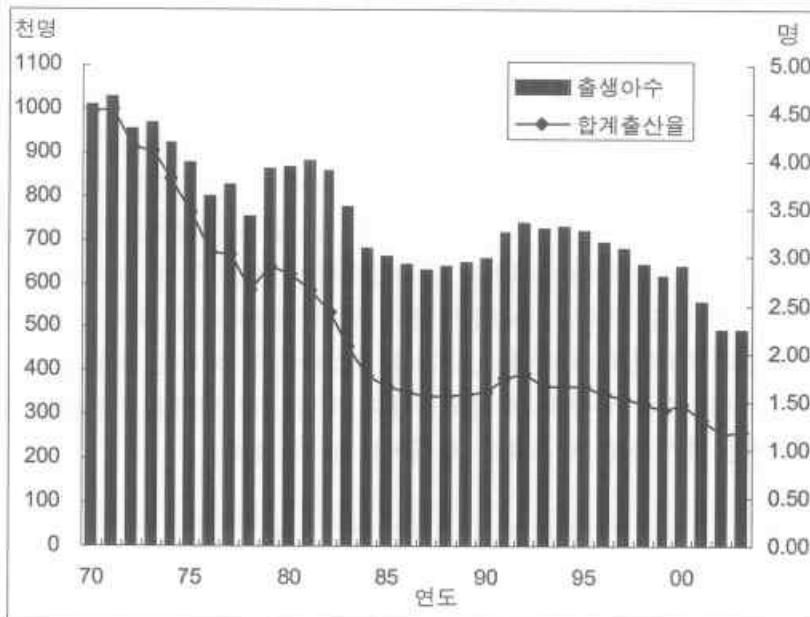
구 분	연령별출산율(ASFR)							합계 출산율	출생아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60	35.0	249.0	323.0	273.0	204.0	96.0	16.0	6.00	1,041
1970	21.2	195.0	321.4	205.0	104.6	44.9	13.0	4.53	1,007
1975	15.3	186.5	262.4	147.6	57.9	20.4	4.9	3.47	875
1980	12.1	139.3	239.5	113.1	40.7	15.0	5.5	2.83	865
1983	13.0	146.7	183.6	54.3	14.2	4.0	0.8	2.08	663
1985	10.4	117.5	156.7	38.6	8.7	2.2	0.5	1.67	656
1990	4.0	84.9	169.9	49.2	9.1	1.5	0.3	1.59	656
1995	3.7	61.5	176.6	70.8	14.6	2.2	0.2	1.65	721
2000	2.3	39.3	149.7	82.8	17.7	2.4	0.2	1.47	637
2001	2.0	32.2	128.9	77.5	17.3	2.4	0.2	1.30	557
2002	2.5	27.4	110.2	75.1	16.7	2.3	0.2	1.17	495
2003	2.4	23.9	111.0	80.3	17.1	2.5	0.2	1.19	494

자료: 1) 통계청, 2001.

2) 2003년 인구는 본 연구에서 최근 출산율 변동을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임.

3) 1960년 자료: 공세권 외, 1992.

[그림 3-4]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70-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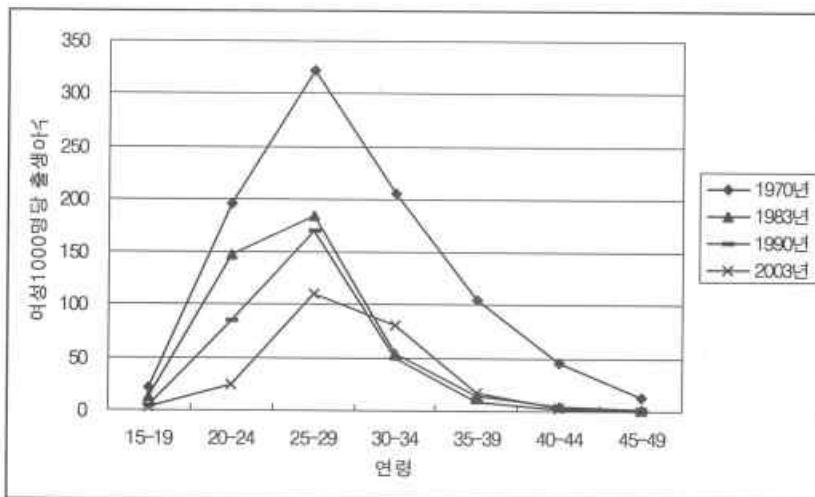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 2001.

2) 2003년 인구는 본 연구에서 최근 출산율 변동을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임.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의 변동 추이는 <표 3-3> 및 [그림 3-5]에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연도간 비교를 위해 1970년, 1983년, 1990년 및 2003년의 4개 연도의 연령별출산율만 제시하였다. 연령별출산율 변동의 가장 주된 특징으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30-34세 연령층 출산율은 2003년 수준이 1983년이나 1990년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연령 상승으로 인하여 출산연령이 상승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후술하도록 한다.

이하에서는 전체 출산율(합계출산율)과 연령별출산율 변화의 특징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령별 출산율의 변동속도, 전체 출산율에 대한 연령별출산율의 기여도 및 출산의 연령 집중도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림 3-5] 연령별출산율 변동 추이, 1970-2003



자료: 1) 통계청, 2001.

2) 2003년 인구는 본 연구에서 최근 출산율 변동을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임.

2) 출산율 변동속도

합계출산율 및 이를 구성하고 있는 연령별출산율의 변동속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1970년 수준을 기준(1970년=100)으로 각 연도 수준의 상대적인 비중을 산출하였다(<표 3-4>, [그림 3-6] 참조). 우선 합계출산율의 변동 정도를 살펴보면, 2003년 수준은 1970년 수준의 26.3%에 불과하였다. 출생아수를 기준으로 2003년 수준이 1970년 수준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그 이유로는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의 변동속도가 다소 다르기 때문이며, 이는 다시 가임기 여성의 규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연령별로는 45-49세에서 출산율의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층의 2003년 출산율은 1970년 수준의 약 2%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큰 폭으로 출산율이 감소한 연령층들은 40-44세(2003년 출산율이 1970년 수준의 5%대), 15-19세(11.3%), 20-24세(12.3%), 35-39세(16.3%)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감소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층들은 30-34세와 25-29세로, 2003년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은 1970년 수준의 39.2% 그리고 25-29세의 경우에는 34.5%로 각각 낮아졌다.

〈표 3-4〉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출산율 변동 속도, 1970-2003

(단위: 1970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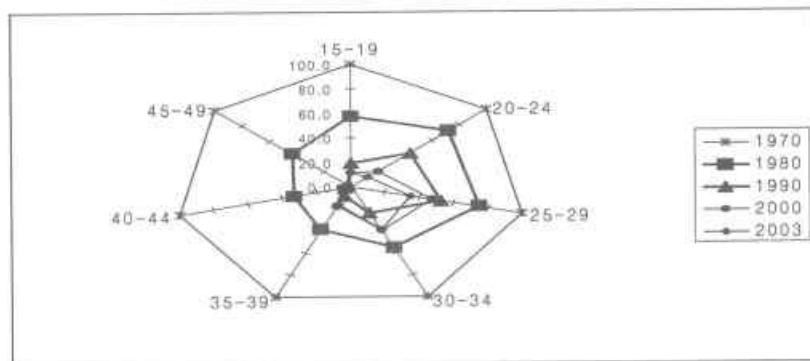
구 분	연령별출산율(ASFR)							합계 출산율	출생아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7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75	71.8	95.7	81.6	72.0	55.3	45.4	37.7	76.6	86.9
1980	57.2	71.4	74.5	55.2	38.9	33.4	42.4	62.5	85.9
1983	61.4	75.3	57.1	26.5	13.6	8.9	6.3	45.9	65.8
1985	49.1	60.3	48.8	18.9	8.3	5.0	4.0	36.9	65.1
1990	19.1	43.5	52.9	24.0	8.7	3.4	1.9	35.1	65.1
1995	17.3	31.6	55.0	34.6	14.0	4.8	1.7	36.4	71.6
2000	10.9	20.2	46.6	40.4	17.0	5.4	1.5	32.5	63.2
2001	9.5	16.5	40.1	37.8	16.6	5.2	1.7	28.7	55.3
2002	11.6	14.0	34.3	36.6	16.0	5.2	1.7	25.8	49.1
2003	11.3	12.3	34.5	39.2	16.3	5.5	1.9	26.3	49.0

자료: 1) 통계청, 2001.

2) 2003년 인구는 본 연구에서 최근 출산율 변동을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임.

이들 연령층에서 출산율 감소가 다소 더딘 이유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 연령층에서 출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특히, 30-34세 연령층에서의 더딘 출산율 감소는 1983년 이래 이 연령층에서의 출산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만혼 및 만산 경향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6] 연령별출산율 변동 속도, 1970=100



자료: 1) 통계청, 2001.

2) 2003년 인구는 본 연구에서 최근 출산율 변동을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임.

3) 연령별출산율의 기여도

전체 출산율(합계출산율)에 대한 각 연령층의 출산율이 기여하는 정도를 <표 3-5>에 제시하였다. 대부분 연령층에서 부적인 기여를 하는 경우, 합계출산율의 감소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970-75년간 모든 연령층에서 부적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합계출산율은 동 기간에 비교적 큰 수준인 1.1명이 감소하였다. 연령별 기여도는 25-29세(28.1%), 30-34세(27.3%)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1980-85년 기간(합계출산율 1.2명 감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연령별 기여도는 25-29세의 경우 3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34세 32.3%, 35-39세 13.9%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연령층 특히 25-29세와 30-34세에서 정적으로 기여하는 경우, 합계출산율의 감소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거나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기간들로는 1985-90년(합계출산율 0.1명 감소), 1995-2000년(합계출산율 0.1명 감소)이며, 1990-95년 기간에는 오히려 합계출산율이 0.1명이 증가하였다. 가장 최근인 2000-2003년 기간에 15-19세, 40-44세 및 45-49세에서 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나, 출산이 집중된 연령층(25-34세)에서의 부적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전체적으로 출산율은 감소하였다.

<표 3-5> 합계출산율 변화에 대한 연령별출산율 기여도, 1970-2003

(단위: %, 명)

구 분	연 령							전 체	TFR 증감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70-75	-2.8	-4.0	-28.1	-27.3	-22.2	-11.7	-3.8	100.0	-1.1
1975-80	-2.4	-36.4	-17.6	-26.6	-13.3	-4.2	+0.5	100.0	-0.6
1980-85	-0.7	-9.4	-35.9	-32.3	-13.9	-5.5	-2.2	100.0	-1.2
1985-90	-40.3	-206.2	+83.4	+66.8	+2.5	-4.6	-1.7	100.0	-0.1
1990-95	-3.5	-216.9	+62.1	+200.8	+51.8	+6.0	-0.3	100.0	+0.1
1995-00	-3.8	-63.1	-76.4	+33.8	+8.8	+0.8	-0.1	100.0	-0.1
2000-03	+0.1	-26.9	-67.9	-4.3	-1.2	+0.1	+0.1	100.0	-0.3
1970-03	-2.8	-25.6	-31.5	-18.7	-13.1	-6.4	-1.9	100.0	-3.3

주: 연령별출산율의 기여부호는 합계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하는 경우 +, 감소 방향으로 기여하는 경우 -임. 전체는 연령별기여도를 합한 후 절대치를 취함.

4) 연령별 출산집중도

합계출산율 중 연령별출산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표 3-6>과 [그림 3-7}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비중은 출산이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출산 집중도는 1970년부터 2003년에 이르는 전 기간에 25-29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층에서의 출산 집중도는 1970년 35.5%에서 1991년 53.8%로 상승하여 정점을 이룬 후, 점진적으로 낮아져 2003년에 46.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출산 집중도가 높은 연령층은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20-24세 연령층의 출산집중도는 1970년 21.5%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3년에 10.1%에 불과하였다. 반면, 30-34세 연령층의 출산집중도는 1985년 11.5%를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3년에 33.8%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30-34세 여성의 출산집중도가 20-24세 여성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은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 즉, 1994년 이전에는 20-24세 여성의 출산집중도가 30-34세보다 높았던 반면, 그 후에는 반대로 나타났다.

<표 3-6> 합계출산율에 대한 연령별출산율 구성비, 1970-2003

(단위: %)

구 분	연령별 구성비							전 체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70	2.4	21.5	35.5	22.7	11.6	5.0	1.4	100.0
1975	2.2	26.8	37.8	21.3	8.3	2.9	0.7	100.0
1980	2.2	24.6	42.4	20.0	7.2	2.7	1.0	100.0
1983	3.1	35.2	44.1	13.0	3.4	1.0	0.2	100.0
1985	3.1	35.1	46.8	11.5	2.6	0.7	0.2	100.0
1990	1.3	26.6	53.3	15.4	2.8	0.5	0.1	100.0
1995	1.1	18.7	53.6	21.5	4.4	0.7	0.1	100.0
2000	0.8	13.4	50.8	28.1	6.0	0.8	0.1	100.0
2001	0.8	12.4	49.5	29.7	6.7	0.9	0.1	100.0
2002	1.1	11.7	47.0	32.0	7.1	1.0	0.1	100.0
2003	1.0	10.1	46.8	33.8	7.2	1.1	0.1	100.0

자료: 1) 통계청,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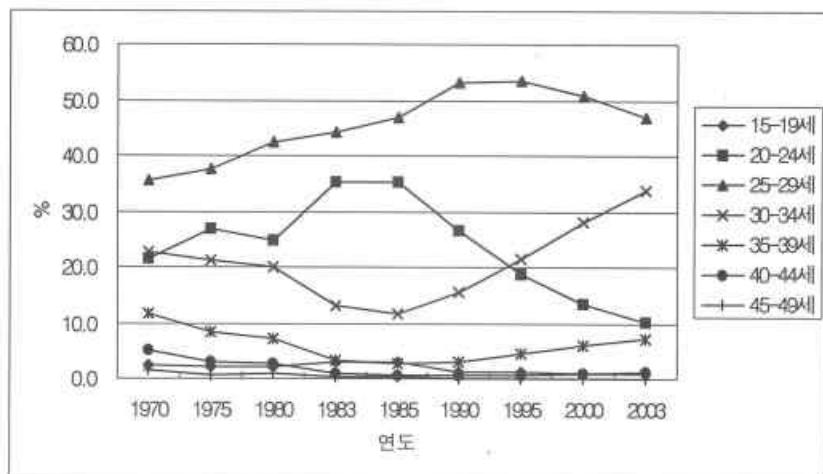
2) 2003년 인구는 본 연구에서 최근 출산율 변동을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임.

최근 30-34세 여성의 출산집중도는 25-29세 여성의 수준에도 근접하고 있다. 1999년만 해도 30-34세 여성의 출산집중도는 25-29세 여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에는 70%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러한 추이가 계속될 경우 30-34세에서의 출산수준은 25-29세 연령층에서의 출산수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체 출산수준에 대한 35-39세 연령층에서의 출산집중도는 1970년만 해도 10% 수준을 상회하였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1990년 전후에는 2%대로 낮아졌다. 1987년 2.5%를 저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2003년에 7.2%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나머지 극단적인 저연령층(15-19세)과 극단적인 고연령층(40-44세, 45-49세)에서의 출산집중도는 과거에도 낮았으며, 최근에는 더 낮게 나타났다.

요컨대, 우리나라 출산은 주로 25-34세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경향은 더욱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령층에서 출산은 1970년의 절반이 58%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연령층에서 출산집중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3년에는 80% 수준으로 나타났다. 환언하면, 우리나라 출산의 80%가 25-34세 연령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3-7] 합계출산율에 대한 연령별출산율 구성비, 1970-2003



자료: 1) 통계청, 2001.

2) 2003년 인구는 본 연구에서 최근 출산율 변동을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임.

나. 사망력

사망력(mortality)은 전쟁이나 기근, 전염병 등의 특정한 사건이 없는 한 과거 경향의 연장선에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력은 경제발전과 함께 보건·위생 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 영양수준 향상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사망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평균수명이 이용된다. 평균수명은 성별 연령별 사망률을 수학적 함수의 일종인 생명표(life table) 기법에 적용하여 산출된다.⁷⁾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의 변동 추이는 <표 3-7>과 [그림 3-8]에 제시되었다. 전체 인구의 평균수명은 1973년 63.1세에서 1989년 70.8세, 2001년 76.5세로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1973년 59.6세에서 1987년 65.8세, 2001년 72.8세로 그리고 여자의 경우 1973년 67.0세에서 1987년 74.0세, 2001년 80.0세로 각각 증가하였다. 지난 약 30년 동안 남자의 평균수명은 13.2세 그리고 여자의 평균수명은 13.0세가 각각 증가하였다. 남녀간 평균수명의 차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약 7~8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평균수명 변동 추이, 1973~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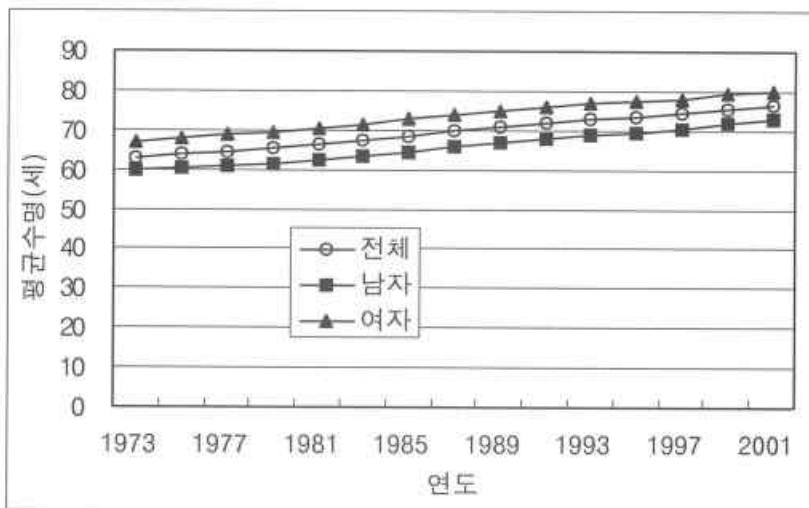
(단위: 세)

연도	전체	남자	여자	차이	연도	전체	남자	여자	차이
1973	63.1	59.6	67.0	7.4	1989	70.8	66.8	75.1	8.2
1975	63.8	60.2	67.9	7.7	1991	71.7	67.7	75.9	8.2
1977	64.5	60.8	68.7	8.0	1993	72.8	68.8	76.8	8.0
1979	65.2	61.3	69.5	8.2	1995	73.5	69.6	77.4	7.8
1981	66.2	62.3	70.5	8.3	1997	74.4	70.6	78.1	7.6
1983	67.1	63.2	71.5	8.3	1999	75.6	71.7	79.2	7.5
1985	68.4	64.5	72.8	8.4	2001	76.5	72.8	80.0	7.2
1987	69.8	65.8	74.0	8.3					

주: 차이는 여자 평균수명-남자 평균수명임.
자료: 통계청, 2002.

7) 생명표 기법을 이용한 평균수명 산출방법은 전문서적(예: 이삼식 외, 2001)을 참조하도록 한다.

[그림 3-8] 평균수명 변동추이, 1973-2001



자료: 통계청, 2002.

사망력 저하 즉, 평균수명 상승은 출산력이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우에도 사망자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인구고령화를 심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 이유로는 사망률은 고연령층에서 아주 높아, 사망력 저하는 결국 노인인구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출산력과 사망력 변화가 인구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5장에서 상술하였다.

다. 국제인구이동

국제이동은 인구규모뿐만 아니라 구조까지 변경시키는 역할을 한다. 후자는 국제이동이 가족단위가 아닌 근로자 등 개인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성 및 연령 선택성(sex and age selectivity)이 강하기 때문이다.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장기적으로 외국 또는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국제이동으로 간주할 경우, 1995-2000년간 내국인의 순이동은 부(-)로 그리고 외국인의 순이동은 정(+)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1). 동 기간에 내국인은 276천명이 외국으로 더 나간 반면, 외국인은 1,691천명이 국내로 더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기간에 국제이동은 순이동 기준으로 115

천명이 외국으로 더 유출되어, 부적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국제이동에는 해외 입양아, 외국으로 이민 나간 후 영구히 귀국한 자, 이민포기자, 합법 또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입양아 변동 추이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입양은 1954년 전쟁고아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실시된 국외입양사업이 효시가 되고 있다.⁸⁾ 당시 친족상속법은 호주 또는 부모의 계통을 계승할 지위에 있는 자는 본가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가에 입양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게다가 외국인이 우리 국민을 양자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쟁고아와 혼혈아들의 국외입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61년에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하였다.

국외입양의 증가에 따라 국내·외에서 국외입양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자, 정부는 국외입양에서 국내입양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기존 고아입양특례법을 폐지하고 1976년에 입양특례법을 제정하였다. 입양특례법은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부랑어린이의 입양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양된 어린이는 반드시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민법의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고 있다. 또한 고아입양특례법 상에 나타나는 국외입양 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내입양 및 국외입양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러나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정부는 1982년부터 국외입양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던 계획을 그 이후로 변경하여, 결과적으로 입양정책은 국외입양개방으로 전환되었다.

국외입양 개방정책의 결과 국외입양이 증가하자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개최를 전후로 외국 언론의 비판 대상이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사회적 관심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입양정책의 방향을 국외입양에서 국내입양 활성화로 다시 전환하였다. 1995년에 정부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한편, 입양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그 명칭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칭하였다.

8) 이 당시 이민국간의 원조기관인 한국아동양호회가 설립되고, 이어서 키틀리구제회(1955년), 안식교성육양자회(1955년), 흘트양자회(1956년), 국제사회봉사회(1957년) 등이 설립되었다(변용찬 외, 1999).

〈표 3-8〉 국외입양아 변동 추이, 1958-2002

(단위: 명, %)

연 도	전체 입양아	국내입양아	국외입양아	국내입양비율
1958-1960	2,700	168	2,532	6.2
1961-1970	11,481	4,206	7,275	36.6
1971-1980	63,551	15,304	48,247	24.1
1981-1985	50,502	15,424	35,078	30.5
1986-1990	41,322	11,079	30,243	26.8
1991-1995	16,791	5,817	10,974	34.6
1996	3,309	1,229	2,080	37.1
1997	3,469	1,412	2,057	40.7
1998	3,869	1,426	2,443	36.9
1999	4,135	1,726	2,409	41.7
2000	4,046	1,686	2,360	41.7
2001	4,206	1,770	2,436	42.1
2002	4,059	1,694	2,365	41.7
1958-2002	213,440	62,941	150,499	29.5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각 연도(1998년 이전 자료는 변용찬 외, 1999에서 재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혈통에 의한 가계계승의식이 강하여 국내입양 실적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여전히 국외입양이 전체 입양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변용찬 외, 1999). <표 3-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입양아수는 최근 다시 증가세에 있으며, 그 수준은 연간 약 4천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제이동에 해당되는 국외입양아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 연간 약 2,400명内外로 나타났다. 전체 입양아 중 국외입양아 비율은 약 6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지난 45년 동안 국외로 입양된 아동들의 수는 약 21만명으로 나타났다.⁹⁾

전체 입양아 중 미혼모 아동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2000년대에는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9>). 입양아를 국내외 국외로 구분하여 보면, 국내입양의 경우 미혼모 아동 등의 비율은 최근 8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국외입양의 경우에는 100%에 이르고 있다. 국외 입양아 중 미숙아를 포함한 장애아동의 비율은 대체

9) 이들 국외 입양아 중에는 적응 실패 등으로 귀국한 아동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수치는 다소 적을 수 있다.

〈표 3-9〉 미혼모 아동 등의 국외입양 변동 추이, 1958-2002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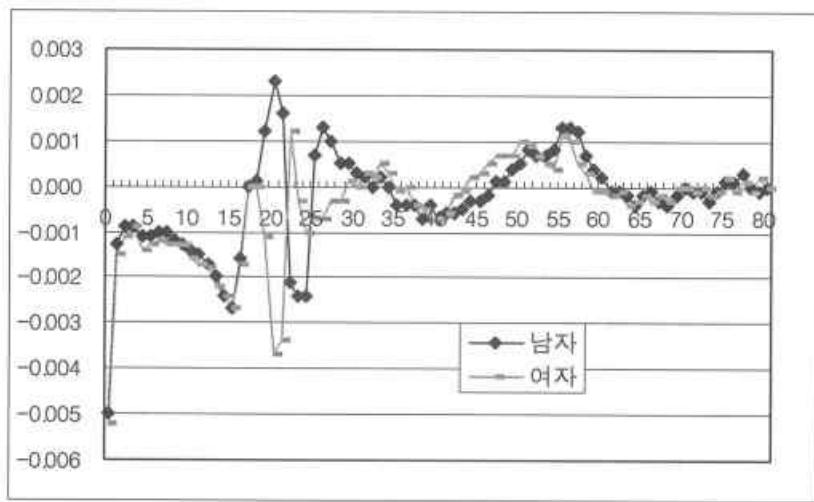
구 분	미혼모 아동 등의 수(명)			전체 입양아 중 미혼모아동 등의 비율(%)		
	전 체	국내입양	국외입양	전 체	국내입양	국외입양
1958-1960	290	63	227	10.7	37.5	9.0
1961-1970	2,467	1,163	1304	21.5	27.7	17.9
1971-1980	26,702	9,075	17627	42.0	59.3	36.5
1981-1985	33,051	10,750	22301	65.4	69.7	63.6
1986-1990	33,798	8,946	24852	81.8	80.7	82.2
1991-1995	14,068	4,227	9841	83.8	72.7	89.7
1996	2,822	906	1916	85.3	73.7	92.1
1997	3,082	1,064	2018	88.8	75.4	98.1
1998	3,338	1,067	2271	86.3	74.8	93.0
1999	3,622	1,369	2253	87.6	79.3	93.5
2000	3,706	1,350	2356	91.6	80.1	99.8
2001	3,862	1,428	2434	91.8	80.7	99.9
2002	3,708	1,344	2364	91.4	79.3	100.0
1958-2002	134,516	42,752	91764	63.0	67.9	61.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각 연도(1998년 이전 자료는 변용찬 외, 1999에서 재인용).

적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995년 47.9%, 2000년 26.9%, 2002년 35.0%).

최근 국외입양을 포함한 국제이동의 성별 연령별 수준은 순이동률로 측정될 수 있다. [그림 3-9]에서 남녀 공히 16세 이하의 순이동률이 부(-)적으로 나타났다. 이후 연령층에서는 남자의 경우 22-24세, 35-46세, 61-75세에서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20-28세(22세 제외) 34-43세, 59-68세에서 부적 순이동률을 나타내고 있다. 저연령층에서의 유출이동이 유입이동보다 큰 이유는 조기 유학의 증가와 이들 연령층의 부모의 유출이민에 동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녀 30대에서 순이동률이 부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해외 유학의 영향에 기인하며, 일부 연령에서 정적인 순이동률은 부분적으로 해외 근로자가 이 연령층에서 많기 때문으로 풀이 될 수 있다.

[그림 3-9] 성별 연령별 순이동률, 1995-2000년 평균



자료: 통계청, 2001.

30대와 40대 전반의 부적인 순이동률은 경기 등의 영향으로 유출이 유입보다 많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남녀 60세 정도에서 다시 순이동률이 부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은퇴 후 가족 등과 합류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인구변동의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인구변동과 그 요인의 변화 추이에서 제시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인구변동요인 중 출산력이 지난 40년 동안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출산력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인구대치수준 이하로 출산력이 낮아진 이래 20년이 지나고 있다. 출산력이 인구대치수준 미만에서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출생아 감소, 학령인구 감소, 노동력 둔화 및 감소 등을 야기할 것이다. 인구고령화를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설정할 경우, 저출산 현상의 장기적인 유지는 총인구 규모 특히, 노인을 부양하여야 할 생산가능 인구를 감소시켜 인구고령화를 가속화시

킬 것이다.

둘째, 사망력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사망력 저하는 평균수명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망력 감소는 특히, 사망률이 높은 노인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쳐, 노인수가 증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사망의 감소는 자연령증보다 노인층에서 크게 나타나 노인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즉, 출산 감소는 분모를 축소시킴으로서 인구고령화에 기여한다면, 사망 감소는 분자를 증가시켜 인구고령화 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국제인구이동은 아직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이동이 국가들의 법령이나 정책에 의해 좌우되는 특징이 강하다. 최근에 들어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책적으로는 이들이 쉽게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이동은 능동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규모나 구조를 변동시키기보다 향후 인구고령화가 심화되어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할 경우 수동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인구변동요인의 역학적 관계에 의해 우리나라 인구는 최근에 노인인구 비율이 7%를 상회하여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선진국에 비해 인구고령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으나, 저출산 및 저사망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인구 현상이 누적되는 경우 인구고령화 수준은 급속하게 높아질 것으로 추측 할 수 있겠다.

제4장 인구고령화 전개

통계청에서는 200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그 동안의 인구동태통계를 이용하여 2050년까지의 장래 인구를 추계한 바 있다(통계청, 2001). 그러나 2000년 이래 우리나라 출산력이 급격히 변화하여, 통계청에서 가정하였던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통계청에서는 향후 합계출산율이 1.40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실측치는 2001년에 1.30, 2002년에 1.17 그리고 2003년에 1.19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최근의 극저출산력 경향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좀더 긴 기간의 실측치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즉, 최근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경제상황 등의 영향에 기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구대치수준 미만의 저출산 현상이 2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고, 최근의 출산력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낮아 향후 인구고령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구고령화 수준은 과연 인구구조가 어느 정도까지 고령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귀착되며, 고령화 속도는 어느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미래 인구고령화의 수준 및 속도는 인구 추계를 통해 전단할 수 있다. 인구추계는 여러 조건들을 가정하여 인구의 장래변동을 예측하는 일로서 그 수준이 절대적으로 정확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 방향이나 속도는 정책적 노력에 기본적인 지침을 제시해 줄 것이다. 즉, 인구고령화 수준과 속도 모두는 이에 대비하거나 이를 방지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인구변동요인의 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수준과 속도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인구변동요인 중 출산력은 사망력과 달리 개인의 선택에 크게 좌우되며, 개인의 선택에는 심리적인 요인들뿐만 아니라 복잡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위하여 개인적인 출산 선택의 총합으로써 출산력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측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정책적인 목적 등에 보다 많은 유통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출산력 변동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인구추계를 실시하였다.

이 장의 구성은 우선적으로 인구추계의 방법과 가정을 제시하고, 이어서 추계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인구고령화 전개 방향과 속도를 진단하였다. 그리고 출산력, 사망력, 인구구조 등의 인구변동요인들이 인구고령화에 미치는 영향 즉,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시나리오에 입각하여 2004년부터 출생하는 인구들은 향후 65년이 지나서야 노인층에 진입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인구고령화를 진단하기 위한 인구추계기간은 2070년까지로 설정하였다.

1. 인구추계 방법 및 가정

가. 인구추계 방법

인구추계 방법으로는 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및 국제기구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조성법이 개발되기 전에는 수학적 방법(mathematical method)이나 경제적 방법(economical method) 등이 적용되었다.¹⁰⁾ 그러나 이들 방법은 총인구 등 집합적 인구의 변동을 단기적으로 예측하는데 주로 이용된다. 인구고령화는 인구구조에 관한 것으로 인구가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추계될 필요가 있다. 조성법은 성별 연령별로 세분화된 인

10) 인구추계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다 전문적인 서적을 참조하기 바란다(예, 이삼식 외, 2001).

구추계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가장 적합한 인구추계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조성법은 기본적으로 인구균형방정식(population balancing equation)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인구균형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된다.

$$P_{t+n} = P_t + (B - D) + (IM - EM)$$

(여기에서 P 는 인구, t 는 연도, n 은 경과연수, B 는 출생, D 는 사망, IM 은 유입이민인구, EM 은 유출이민인구)

요컨대 조성법은 인구균형방정식에 의거하여 인구를 5세 또는 1세별로 조합하여 장래 인구를 성별 연령별로 추계하는 방법이다. 우선 0세 인구는 연령별출산율을 가임기(15-49세) 여성에 연령별로 적용하여 출생아수를 구하고, 여기에 출생성비와 사망률 및 이동률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1세 이상 인구는 전년 인구에 성별 연령별 사망률과 이동률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장기간 인구를 추계한다.

조성법은 인구변동요인간의 함수관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간단하나, 각 요인의 향후 변동을 가정하는 것이 어렵다. 추계시작연도의 인구 즉, 기준인구(base population)로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한 추정인구에 2001-2003년 동안 인구동태율(출산율 등)을 적용하여 추정한 2003년 인구를 적용하였다.

나. 인구추계 가정

1) 출산력 가정

인구추계에 적용되는 출산력은 연령별 출산율이다. 그러나 출산력 수준은 연령별출산율의 총합적인 개념인 합계출산율을 이용하여 가정한다.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7에서 2001년 1.30, 2002년 1.17, 2003년 1.19로 변동하였다. 이후 합계출산율 변동에는 다음 5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¹¹⁾

11) UN(1956)은 어느 한 가지 가정에 의하기보다 세 가지 가정에 근거하여 인구를 추계하여 정책수립 등에 융통성을 제고시킬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UN은

◎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은 합계출산율이 2003년 1.19에서 더욱 낮아질 것으로 가정한다. 그 근거로 최근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과 부산의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수준 보다 낮은 1.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출산력 수준이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나리오 I은 합계출산율이 2003년 1.19에서 점진적으로 낮아져 2035년에 1.10에 도달하며, 그 후에는 이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시나리오는 향후 출산력 변동에 대한 가장 비관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는 시점으로 2035년을 설정한 이유는 코호트 출산력 분석 결과, 현재 출산율 변동은 이 시점에 이른 후에야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I는 2003년 합계출산율 수준이 향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최근 사회경제적 상황과 가치관 등이 지속됨에 따라 출산율도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I에 비해 출산력이 다소 높으나, 여전히 비관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시나리오 III

시나리오 III은 2000년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이는 극히 일시적인 현상으로 조만간 2000년 당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합계출산율이 2003년 1.19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35년에 1.40 수준에 도달한 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시나리오는 2000년 통계청에서 설정한 중위가정과 유사하다.

◎ 시나리오 IV

시나리오 IV는 출산율 수준이 2002년 합계출산율 1.17을 최저점으로 서서히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 시나리오는 향후 출산관련 정책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가정을 중위가정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적은 가정을 고위가정 또는 저위가정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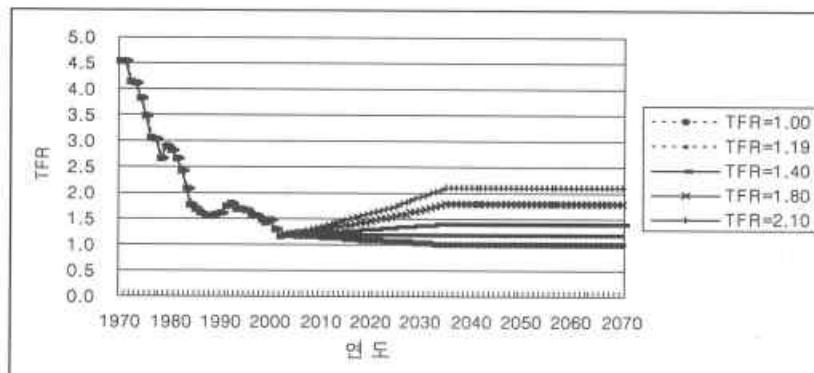
들이 주효하고 개인의 가치관 및 사회경제적 변화가 출산율 증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 하에서 가능할 것이다. 그 근거로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이 관련정책의 효과 등으로 인하여 합계출산율이 1.8 수준 이상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나리오 IV는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35년에 1.8에 도달한 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 시나리오 V

인구학적으로 합계출산율이 2.1인 경우 인구대치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으로 불린다. 합계출산율이 이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인구는 안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3년에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치수준에 도달하였다. 이 당시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이 강력하게 실시되었다. 시나리오 V는 합계출산율이 장기적으로 2.1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합계출산율은 2002년 1.17을 최저점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35년에는 2.1에 도달 하며, 그 후에는 이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한다. 이 시나리오는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개인의 가치관이 출산증가 방향으로 변화하는 등 관련 정책의 효과가 클 경우에 성립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구대치수준의 합계출산율 유지는 인구정책이 추구하여야 할 궁극적인 목표로서도 의미가 있다.

출산력 변동에 관한 시나리오는 [그림 4-1]과 <표 4-1>에 제시하였다.

[그림 4-1] 시나리오별 합계출산율(TFR) 변동, 1970~2070



주: 1970-2003년 합계출산율은 실측치이며, 각 시나리오는 2004년부터 적용된다.

〈표 4-1〉 시나리오: 합계출산율 변동 가정, 2003-2070

구 분	출산율 가정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II	시나리오 IV	시나리오 V
2003	1.19	1.19	1.19	1.19	1.19
2005	1.10	1.19	1.19	1.21	1.24
2010	1.08	1.19	1.22	1.28	1.35
2015	1.07	1.19	1.26	1.36	1.48
2020	1.05	1.19	1.29	1.45	1.62
2025	1.03	1.19	1.33	1.56	1.78
2030	1.02	1.19	1.37	1.68	1.95
2035	1.00	1.19	1.40	1.80	2.10
2040	1.00	1.19	1.40	1.80	2.10
2045	1.00	1.19	1.40	1.80	2.10
2050	1.00	1.19	1.40	1.80	2.10
2055	1.00	1.19	1.40	1.80	2.10
2060	1.00	1.19	1.40	1.80	2.10
2065	1.00	1.19	1.40	1.80	2.10
2070	1.00	1.19	1.40	1.80	2.10

주: 실제 시나리오별 합계출산율 가정은 각 연도별 연령별(1세) 출산율로 구성된다.

2) 사망력 가정

인구추계에 적용되는 사망력은 성별 연령별 사망률(또는 사망화률, 생잔율)이다. 그러나 사망력 변동은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연령별사망률의 함수관계로 도출되는 평균수명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인위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출산과 달리 사망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전쟁, 기근, 전염병 등 사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한, 연령별사망률은 의료보건 발달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그 결과 평균수명이 증가하게 된다. 즉, 사망력 수준은 과거 추이의 연장선에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균수명은 낮은 수준에 있는 경우 연간 증가 폭은 아주 크나,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이르면 증가 폭이 점차 줄어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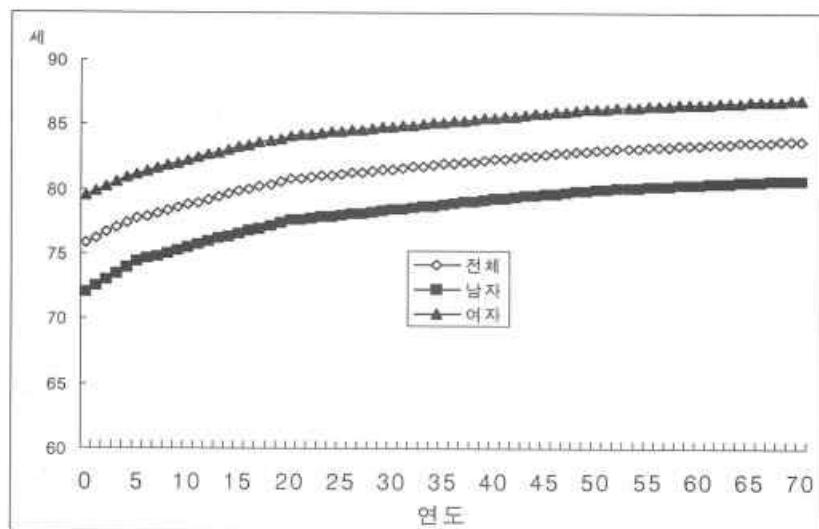
〈표 4-2〉 평균수명 변동 가정, 2000-2070

(단위: 세)

구 분	전 체	남 자	여 자
2000	75.87	72.06	79.50
2005	77.70	74.36	81.20
2010	78.78	75.50	82.22
2015	79.81	76.54	83.24
2020	80.73	77.54	84.08
2025	81.15	77.96	84.49
2030	81.53	78.38	84.83
2035	81.91	78.80	85.17
2040	82.30	79.21	85.54
2045	82.67	79.58	85.90
2050	83.02	79.95	86.24
2055	83.24	80.17	86.43
2060	83.43	80.37	86.60
2065	83.61	80.55	86.76
2070	83.78	80.72	86.91

자료: 2000-2050년은 통계청, 2001(이후 연도는 본 연구에서 추정).

[그림 4-2] 평균수명 변동 가정, 2000-2070



따라서 향후 사망력 변동을 전망하는 일은 출산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인구추계에 적용되는 사망력 변동 가정은 2001년 통계청 추계시 적용되었던 가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통계청에서는 과거 추이를 토대로 여러 검증절차들을 통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향후 사망력 변동을 추정한 바 있다. 물론 통계청에서는 성별 연령별 사망률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통계청, 2001). 한편, 통계청 추계는 2050년까지로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시한 사망력 변동을 2070년까지 연장 추정하여 추계에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적용한 사망력 가정 즉, 평균수명 변화는 <표 4-2>와 [그림 4-2]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2000년 75.87세에서 2020년 80.73세, 2050년 83.02세, 2070년 83.78세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추계기간 동안 남자의 평균수명은 여자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즉, 남자의 평균수명은 2000년 72.06세에서 2070년 80.72세로 증가하는 반면, 여자의 평균수명은 동 기간에 79.5세에서 86.91세로 증가할 것으로 각각 전망되었다.

3) 국제이동 가정

출산력이나 사망력에 비해 국제이동의 향후 변동을 예측하는 것이 더 어렵다. 국제이동은 입국국가뿐만 아니라 출국국가들의 경제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관련 법령과 정책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의 국제이동 수준이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고, 관련 통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정확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인구추계와 별도로 국제이동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가정들을 설정하여 인구추계에 반영하기도 한다. 국제적으로 인구 추계에서 국제이동은 최근 변화를 추정하여, 그 수준이나 패턴이 장기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삼식 외, 2001: 59).

〈표 4-3〉 국제이동(순이동률) 가정, 1995-2000년 평균

연 령	남자	여자									
0	-0.0050	-0.0052	21	0.0016	-0.0034	42	-0.0006	-0.0002	63	-0.0002	-0.0004
1	-0.0013	-0.0015	22	-0.0021	0.0012	43	-0.0005	-0.0001	64	-0.0004	-0.0003
2	-0.0009	-0.0011	23	-0.0024	-0.0003	44	-0.0003	0.0002	65	-0.0002	-0.0002
3	-0.0009	-0.0009	24	-0.0024	-0.0010	45	-0.0003	0.0003	66	-0.0001	-0.0003
4	-0.0011	-0.0014	25	0.0007	-0.0007	46	-0.0002	0.0005	67	-0.0003	-0.0002
5	-0.0011	-0.0013	26	0.0013	-0.0007	47	0.0001	0.0007	68	-0.0004	-0.0003
6	-0.0010	-0.0012	27	0.0010	-0.0003	48	0.0001	0.0007	69	-0.0002	0.0000
7	-0.0010	-0.0013	28	0.0005	-0.0003	49	0.0004	0.0007	70	0.0000	0.0000
8	-0.0012	-0.0013	29	0.0005	0.0001	50	0.0005	0.0010	71	-0.0001	-0.0001
9	-0.0013	-0.0013	30	0.0003	0.0000	51	0.0008	0.0009	72	-0.0001	0.0000
10	-0.0014	-0.0016	31	0.0002	0.0003	52	0.0007	0.0007	73	-0.0003	-0.0002
11	-0.0015	-0.0017	32	0.0000	0.0002	53	0.0007	0.0005	74	-0.0001	-0.0001
12	-0.0017	-0.0018	33	0.0002	0.0005	54	0.0008	0.0004	75	0.0001	0.0002
13	-0.0020	-0.0022	34	0.0000	0.0003	55	0.0013	0.0011	76	0.0001	-0.0001
14	-0.0024	-0.0024	35	-0.0004	-0.0001	56	0.0013	0.0010	77	0.0003	0.0001
15	-0.0027	-0.0027	36	-0.0004	0.0000	57	0.0012	0.0005	78	0.0000	-0.0001
16	-0.0016	-0.0017	37	-0.0004	-0.0004	58	0.0007	0.0003	79	-0.0001	0.0002
17	0.0000	0.0000	38	-0.0007	-0.0005	59	0.0004	-0.0001	80	0.0000	0.0000
18	0.0001	0.0000	39	-0.0004	-0.0007	60	0.0002	-0.0001			
19	0.0012	-0.0011	40	-0.0007	-0.0007	61	-0.0001	-0.0002			
20	0.0023	-0.0037	41	-0.0006	-0.0006	62	-0.0001	-0.0001			

자료: 통계청, 2001.

최근의 성별 연령별 국제이동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출국 또는 입국 시기별로 성별 연령별 이동에 관한 통계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2001)에서 인구추계를 위해 출입국관리국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1995-2000년간 평균 순이동률을 그대로 적용하였다(<표 4-3>). 구체적으로 인구추계에서 1995-2000년 기간동안 성별 연령별 순이동률이 2070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물론 이러한 가정은 비현실적일 수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으로 외국 근로자들을 대거 유입하는 경우에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기초하여 국제이동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인구추계 반영하는 것은 오히려 더 비현실적일 수 있다. 특히 국제이동이 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2. 인구고령화 전개

여기에서는 인구추계 결과를 이용하여, 향후 인구고령화 정도와 속도를 분석하였다. 인구고령화 현상은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전통적 의미의 인구고령화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노동력의 고령화로 생산계층인구 중 고연령 인구의 비중이 높아져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이 상승하는 것이다. 마지막 인구고령화는 고령자의 노령화이다. 이는 노인인구 중 고연령층 노인층(old old) 비중이 젊은 노인층(young old)보다 높아지는 것이다(Kuroda, 1998). 따라서 이 연구에서 인구고령화 분석은 이들 세 가지 차원에 중점을 두었다.

가. 인구규모 변동 전망

대표적인 인구고령화 지표로서 노인인구비율의 경우 분모는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인구 및 노인인구의 합이며, 분자는 노인인구로 구성된다. 따라서 노인인구뿐만 아니라 총인구를 구성하는 연령계층별 인구의 변동에 따라 인구고령화 수준이 달라진다. 환연하면, 한편으로 인구고령화는 이미 태어난 인구의 연령계층간 규모 차이(궁극적으로 코호트간 출산력 차이)와 사망력 저하에 기인한 노인인구의 절대규모 증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다른 한편으로 인구고령화는 저출산현상으로 인하여 새로이 태어난 인구의 감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¹²⁾ 이러한 관점에서 총인구와 연령계층별 인구규모의 변동 추이는 인구고령화 진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장기적으로 총인구 규모는 시나리오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4>, [그림 4-3]). 총인구가 최대가 되는 시기와 규모는 시나리오 I의 경우 2016년 4,929만명, 시나리오 II의 경우 2017년 4,946만명, 시나리오 III의 경우 2020년 4,976만명, 시나리오 IV의 경우 2027년 5,034만명, 시나리오 V의 경우 2031년 5,131만명으로 각각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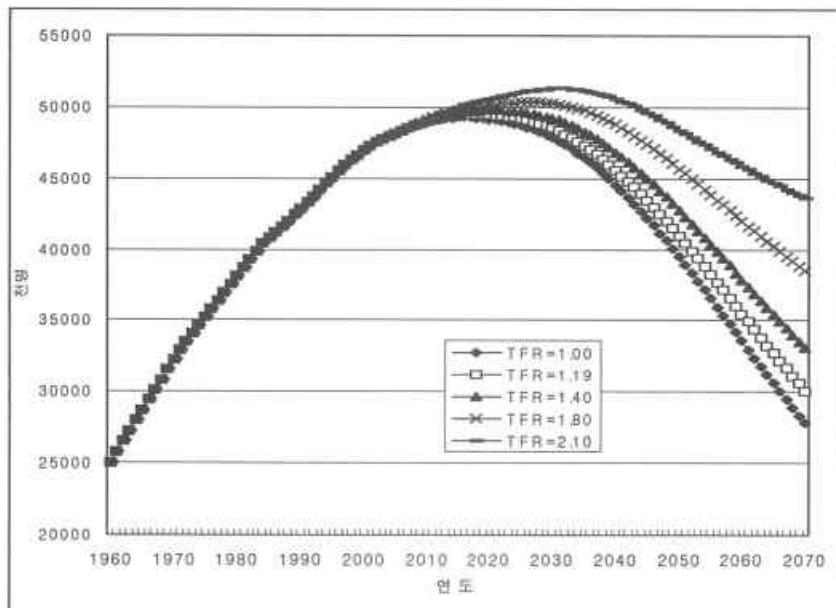
12) 즉, 인구고령화는 크게 출산력, 사망력, 인구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이를 요인별 기여도는 후술 내용을 참조한다.

〈표 4-4〉 총인구 변동 전망, 2003-2070

(단위: 천명, 2003년=100)

구분	총인구					2003년=100				
	I	II	III	IV	V	I	II	III	IV	V
2003	47,779	47,779	47,779	47,779	47,779	100	100	100	100	100
2005	48,168	48,180	48,178	48,183	48,190	101	101	101	101	101
2010	48,924	48,996	49,040	49,105	49,187	102	103	103	103	103
2015	49,278	49,458	49,599	49,792	50,022	103	104	104	104	105
2020	49,158	49,474	49,758	50,145	50,580	103	104	104	105	106
2025	48,693	49,186	49,658	50,328	51,035	102	103	104	105	107
2030	47,827	48,511	49,225	50,266	51,299	100	102	103	105	107
2035	46,432	47,299	48,287	49,763	51,150	97	99	101	104	107
2040	44,532	45,596	46,852	48,793	50,569	93	95	98	102	106
2045	42,193	43,460	44,985	47,408	49,619	88	91	94	99	104
2050	39,478	40,952	42,754	45,691	48,388	83	86	89	96	101
2055	36,546	38,239	40,331	43,836	47,081	76	80	84	92	99
2060	33,563	35,466	37,874	42,002	45,849	70	74	79	88	96
2065	30,615	32,709	35,439	40,216	44,690	64	68	74	84	94
2070	27,762	30,035	33,070	38,496	43,611	58	63	69	81	91

[그림 4-3] 시나리오별 총인구 변동 전망, 1960-2070



현 수준(2003년 인구 4,778만명) 대비 2050년 총인구 비율은 시나리오 I의 경우 83%(3,900만명), 시나리오 II의 경우 86%(4,100만명), 시나리오 III의 경우 89%(4,300만명), 시나리오 IV의 경우 96%(4,600만명)으로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시나리오 V의 경우에는 2050년 총인구가 현 수준과 유사할 것(101%, 4,839만명)으로 전망되었다. 총인구는 2070년 2,800(시나리오 I)~4,400만명(시나리오 V)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들 규모는 2003년 총인구의 58~91% 수준에 불과하다. 2070년 총인구는 시나리오간에 약 1,600만명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앞서 이미 분석되었듯이, 우리나라 유소년인구(0-14세)는 1972년 13,858천명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왔다. 장래 유소년인구는 시나리오에 따라 다소 속도는 다를지라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표 4-5>). 시나리오 II(TFR=1.19)의 경우, 유소년인구는 2035년에 2003년 규모의 절반수준인 4,899천명, 2070년에 1/4 수준인 2,418천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표 4-5> 유소년인구(0-14세) 변동 전망, 2003~2070

(단위: 천명, 2003년=100)

구분	유소년인구					2003년=100				
	I	II	III	IV	V	I	II	III	IV	V
2003	9,572	9,572	9,572	9,572	9,572	100	100	100	100	100
2005	9,225	9,237	9,235	9,240	9,247	96	97	96	97	97
2010	7,881	7,953	7,997	8,062	8,144	82	83	84	84	85
2015	6,608	6,788	6,929	7,122	7,352	69	71	72	74	77
2020	5,827	6,131	6,417	6,799	7,227	61	64	67	71	76
2025	5,267	5,690	6,119	6,726	7,352	55	59	64	70	77
2030	4,798	5,307	5,884	6,736	7,544	50	55	61	70	79
2035	4,340	4,899	5,610	6,707	7,669	45	51	59	70	80
2040	3,769	4,351	5,145	6,431	7,515	39	45	54	67	79
2045	3,208	3,804	4,629	6,033	7,231	34	40	48	63	76
2050	2,790	3,413	4,245	5,735	7,071	29	36	44	60	74
2055	2,502	3,148	4,007	5,606	7,106	26	33	42	59	74
2060	2,271	2,928	3,837	5,584	7,258	24	31	40	58	76
2065	2,051	2,695	3,653	5,543	7,366	21	28	38	58	77
2070	1,807	2,418	3,394	5,376	7,302	19	25	35	56	76

합계출산율이 장기적으로 1.8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시나리오 IV) 유소년인구는 2035년에 2003년 규모의 70% 수준 그리고 2070년에는 56%로 감소할 전망으로 감소속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시나리오 V의 경우 유소년인구는 2035년에 7,669천명(2003년 규모의 80%) 그리고 2070년에 7,302천명(2003년 규모의 76%)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960년 13,698천명에서 2003년 34,238천명으로 지난 40년 동안 약 2천만 명이 증가하였다. 향후 시나리오에 따라 출생한 인구가 생산가능시기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5년이 소요되므로, 시나리오별 생산가능인구의 차이는 그 이후부터 발생할 것이다. 즉, 시나리오와 상관없이 생산가능인구가 최대가 되는 시기는 2016년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그 규모는 36,366천명으로 2003년보다 약 6%가 증가한 수준으로 전망되었다(<표 4-6>, [그림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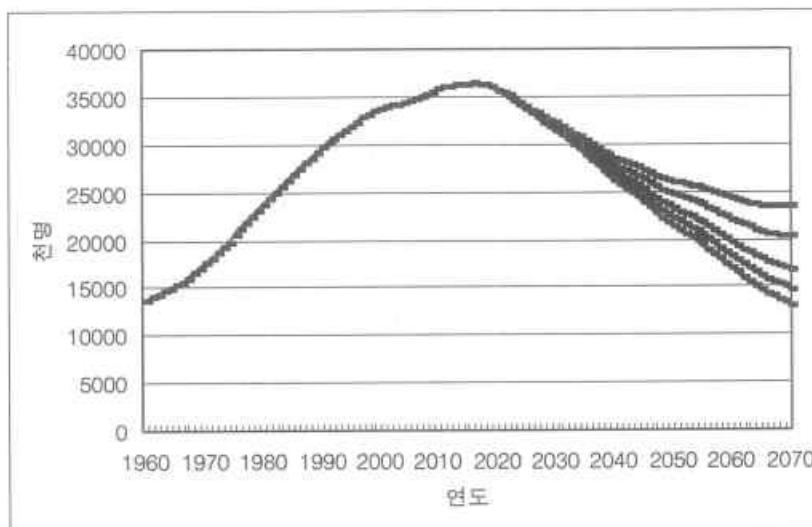
<표 4-6> 생산가능인구(15-64세) 변동 전망, 2003-2070

(단위: 천명, 2003년=100)

구 분	생산가능인구(15-64세)					2003년=100				
	I	II	III	IV	V	I	II	III	IV	V
2003	34,238	34,238	34,238	34,238	34,238	100	100	100	100	100
2005	34,577	34,577	34,577	34,577	34,577	101	101	101	101	101
2010	35,741	35,741	35,741	35,741	35,741	104	104	104	104	104
2015	36,324	36,324	36,324	36,324	36,324	106	106	106	106	106
2016	36,366	36,366	36,366	36,366	36,366	106	106	106	106	106
2020	35,664	35,675	35,673	35,678	35,685	104	104	104	104	104
2025	33,737	33,807	33,850	33,913	33,993	99	99	99	99	99
2030	31,425	31,601	31,738	31,927	32,152	92	92	93	93	94
2035	28,901	29,209	29,486	29,864	30,289	84	85	86	87	88
2040	26,230	26,712	27,174	27,829	28,521	77	78	79	81	83
2045	23,916	24,587	25,286	26,306	27,318	70	72	74	77	80
2050	21,417	22,269	23,238	24,685	26,046	63	65	68	72	76
2055	19,409	20,455	21,689	23,595	25,339	57	60	63	69	74
2060	16,963	18,209	19,708	22,089	24,262	50	53	58	65	71
2065	14,706	16,156	17,928	20,815	23,466	43	47	52	61	69
2070	13,086	14,738	16,798	20,238	23,421	38	43	49	59	68

주: 진한 글씨는 생산가능인구가 최대가 되는 시기임.

[그림 4-4] 생산가능인구(15~64세) 변동 전망, 1960~2070



주: 2003년 이후 곡선은 밑에서 위로 시나리오 I에서 시나리오 V인 경우임.
자료: 1960-2000년 자료는 통계청, 2001.

그 후 다소 속도에 차이가 있을 뿐 생산가능인구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다. 시나리오 V의 경우 생산가능인구는 2035년 30,289천명, 2070년 23,421천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시나리오 II ($TFR=1.19$)의 경우 생산가능인구는 2035년 29,209천명(2003년 규모의 85%), 2070년에 14,783천명(43%)으로 더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나리오 III($TFR=1.4$)과 시나리오 IV($TFR=1.8$)의 경우, 생산가능인구는 2070년에 현 수준의 49%(16,798천명), 59%(20,238천명) 수준으로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시나리오간 생산가능인구의 차이는 2035년 이전에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나, 그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50년 기준으로 시나리오 II($TFR=1.19$)와 시나리오 IV($TFR=1.80$)간의 생산가능인구 차이는 약 240만명, 그리고 시나리오 V($TFR=2.10$)와의 차이는 약 4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2070년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의 차이는 550만명과 870만명으로 더 커질 것으로 각각 추정되었다.

지금부터 태어나는 인구는 65년 후에 노년기에 진입하므로, 적어도 2068년 이전 노인인구 규모는 출산력 시나리오와 상관없이 동일하다(<표 4-7>, [그림 4-5]). 향후 노인인구는 2009년부터 5백만명, 2026년부터 1천만명, 그리고 2045년부터 1천5백만명을 각각 상회하여, 약 17년마다 5백만명이 증가할 전망이다. 2003년 노인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두 배가 되는 시기는 2021년, 세 배가 되는 시기는 2031년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저출산 시대에 출생한 인구가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노인인구는 2048년 15,361천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¹³⁾ 이 시기 노인인구 규모는 2003년의 거의 4배가 될 것이다. 시나리오간 노인규모 차이는 2069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며, 경과연수가 짧아 미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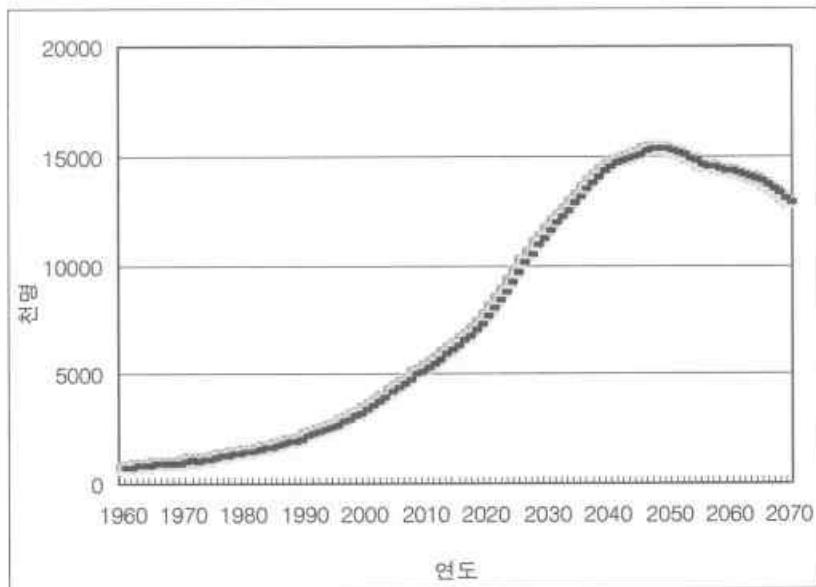
<표 4-7> 노인인구(65세 이상) 변동 전망, 2003~2070

(단위: 천명, 2003년=100)

구 분	노인인구(65세 이상)					2003년=100				
	I	II	III	IV	V	I	II	III	IV	V
2003	3,969	3,969	3,969	3,969	3,969	100	100	100	100	100
2005	4,366	4,366	4,366	4,366	4,366	110	110	110	110	110
2010	5,302	5,302	5,302	5,302	5,302	134	134	134	134	134
2015	6,345	6,345	6,345	6,345	6,345	160	160	160	160	160
2020	7,667	7,667	7,667	7,667	7,667	193	193	193	193	193
2025	9,689	9,689	9,689	9,689	9,689	244	244	244	244	244
2030	11,604	11,604	11,604	11,604	11,604	292	292	292	292	292
2035	13,191	13,191	13,191	13,191	13,191	332	332	332	332	332
2040	14,533	14,533	14,533	14,533	14,533	366	366	366	366	366
2045	15,069	15,069	15,069	15,069	15,069	380	380	380	380	380
2050	15,271	15,271	15,271	15,271	15,271	385	385	385	385	385
2055	14,636	14,636	14,636	14,636	14,636	369	369	369	369	369
2060	14,329	14,329	14,329	14,329	14,329	361	361	361	361	361
2065	13,858	13,858	13,858	13,858	13,858	349	349	349	349	349
2070	12,869	12,880	12,878	12,882	12,889	324	325	324	325	325

13) 노인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48년은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치수준(2.1)에 도달한 1983년에 출생한 인구가 노년기에 진입하는 시기이다.

[그림 4-5] 노인인구(65세 이상) 변동 전망, 1960-2070



나. 인구고령화

1) 총인구의 고령화

총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 7.2%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다. 노인인구비율은 2003년에 8.3%에서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노인인구비율은 노인규모와 달리 저출산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총인구(분모)에 저출산에 의해 결정되는 저연령인구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인구비율은 출산력 시나리오에 따라 변화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표 4-8>, [그림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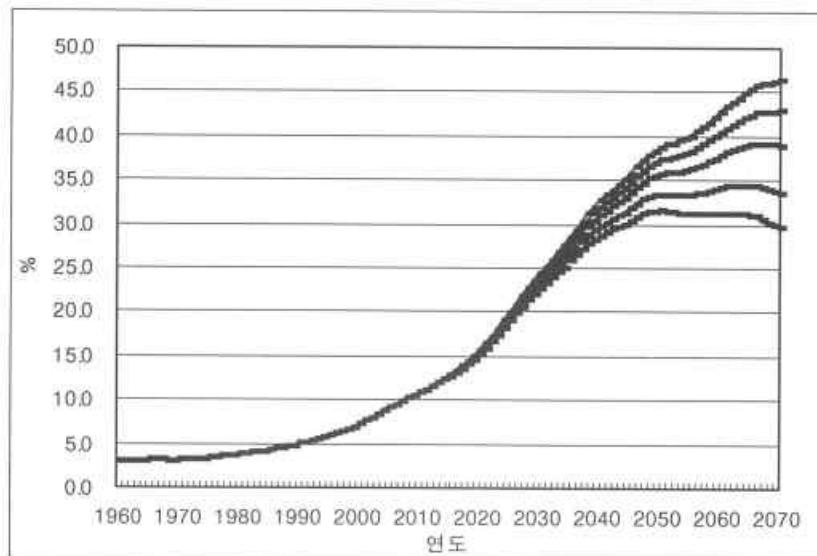
시나리오 II($TFR=1.19$)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은 2018년에 14.2%로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전망이다. 8년 후인 2026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20%대에 진입하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hyper aged society)가 될 전망이다. 이 시나리오 하에서 노인인구비율은 2055년에 40%, 2070년에 42.9%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8〉 총인구 중 노인인구비율 변동 전망, 2003-2070

(단위: %)

구 분	출산력 시나리오				
	I	II	III	IV	V
2003	8.3	8.3	8.3	8.3	8.3
2005	9.1	9.1	9.1	9.1	9.1
2010	10.8	10.8	10.8	10.8	10.8
2015	12.9	12.8	12.8	12.7	12.7
2020	15.6	15.5	15.4	15.3	15.2
2025	19.9	19.7	19.5	19.3	19.0
2030	24.3	23.9	23.6	23.1	22.6
2035	28.4	27.9	27.3	26.5	25.8
2040	32.6	31.9	31.0	29.8	28.7
2045	35.7	34.7	33.5	31.8	30.4
2050	38.7	37.3	35.7	33.4	31.6
2055	40.0	38.3	36.3	33.4	31.1
2060	42.7	40.4	37.8	34.1	31.3
2065	45.3	42.4	39.1	34.5	31.0
2070	46.4	42.9	38.9	33.5	29.6

[그림 4-6] 노인인구비율 변동 전망, 1960-2070



주: 그래프들은 밑에서 위로 시나리오 I에서 시나리오 V를 의미함.

자료: 1960-2000년은 통계청, 2001.

다른 시나리오의 경우에도 2018년과 2026년에 노인인구비율이 14%와 20%에 각각 이를 전망이다. 시나리오 V(TFR=2.10)의 경우에만 1년 늦은 2027년에 노인비율이 20%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후 시나리오간 노인비율 차이는 커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2050년 노인비율은 시나리오 II(TFR=1.19)의 경우 37.3% 그리고 시나리오 V(TFR=2.10)의 경우 31.6%로 차이는 5.7%p로 추정되었다. 2070년 노인비율은 시나리오 II의 경우 42.9% 그리고 시나리오 V의 경우 29.6%로 차이는 13.3%p로 나타났다. 출산율이 낮을수록 노인비율은 더욱 빨리 증가할 전망이다.

총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상승하면, 총인구의 평균연령도 상승하게 된다. 평균연령은 1960년 23.6세에 불과하였으나, 1970년 24.1세, 1980년 26.5세, 1990년 30.0세, 2000년 33.1세, 2003년 34.5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향후 평균연령은 출산율이 낮을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총인구의 평균연령은 시나리오 II(TFR 1.19)의 경우 2050년에 53.3세에 그리고 시나리오 V(TFR 2.10)의 경우 47.7세에 이를 전망이다.

〈표 4-9〉 총인구의 평균연령 변동 전망, 2003-2070

(단위: 세)

구 분	출산력 시나리오				
	I	II	III	IV	V
2003	34.5	34.5	34.5	34.5	34.5
2005	35.5	35.5	35.5	35.5	35.5
2010	37.9	37.9	37.9	37.8	37.8
2015	40.4	40.3	40.2	40.0	39.9
2020	42.8	42.6	42.4	42.1	41.8
2025	45.1	44.7	44.4	43.9	43.4
2030	47.3	46.7	46.2	45.4	44.7
2035	49.4	48.7	47.9	46.8	45.8
2040	51.4	50.5	49.5	48.2	46.8
2045	53.1	52.1	50.8	49.0	47.4
2050	54.6	53.3	51.8	49.5	47.7
2055	55.8	54.2	52.4	49.7	47.5
2060	56.7	54.9	52.8	49.5	47.1
2065	57.5	55.5	53.0	49.3	46.5
2070	58.2	55.9	53.2	49.0	46.0

2)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 양적 변화뿐만 아니라 구조적 변화도 향후 노동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구조적 변화로는 생산가능 인구의 고령화를 들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1960년 33.9세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에는 37.5세로 3.6세가 증가하였다.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2020년까지 시나리오와 상관없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4-10>). 모든 출산력 시나리오에서 생산가능 인구가 정점에 이르는 2016년에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40.6세로 증가할 전망이다.

출산력이 낮을수록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 정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시나리오 II(TFR=1.19)의 경우,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2055년에 44.2세로 정점을 이룰 전망이다. 이보다 출산율이 낮은 시나리오 I(TFR=1.00)의 경우 평균연령은 2055년에 45.0세로 높아질 것이다.

<표 4-10>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 변동 전망, 2003~2070

(단위: 세)

구 분	출산력 시나리오				
	I	II	III	IV	V
2003	37.5	37.5	37.5	37.5	37.5
2005	38.0	38.0	38.0	38.0	38.0
2010	39.2	39.2	39.2	39.2	39.2
2015	40.4	40.4	40.4	40.4	40.4
2016	40.6	40.6	40.6	40.6	40.6
2020	41.7	41.7	41.7	41.7	41.7
2025	42.5	42.5	42.5	42.4	42.3
2030	43.2	43.2	42.9	42.8	42.6
2035	43.7	43.5	43.3	43.0	42.7
2040	43.9	43.6	43.2	42.7	42.2
2045	44.2	43.7	43.2	42.4	41.7
2050	44.4	43.7	43.0	41.9	41.1
2055	45.0	44.2	43.3	42.0	41.0
2060	44.9	44.0	42.9	41.5	40.4
2065	44.6	43.6	42.5	40.9	39.9
2070	44.6	43.6	42.5	40.9	39.9

시나리오 IV(TFR=1.80)와 시나리오 V(TFR=2.10)의 경우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2035년경에 43.0세와 42.7세로 각각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이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는 이유는 생산가능인구에서 유출되는 인구규모가 동일하나, 출산력 수준에 따라 신규진입 인구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3) 노인인구의 고령화

인구고령화 현상으로 노인인구 자체의 고령화를 들 수 있다. 노인인구는 연령에 따라 전기고령층(65-74세), 중기고령층(75-84세), 후기고령층(85세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구가 고령화되지 않은 시기에 노인인구는 전기고령층, 중기고령층, 후기고령층 순으로 많다. 그러나 인구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중기고령층과 후기고령층 노인비중이 높아진다.

〈표 4-11〉 노인인구의 연령구조 변동 전망, 2003-2070

(단위: %)

연도	구분	출산력 시나리오				
		I	II	III	IV	V
2003	전기	67.5	67.5	67.5	67.5	67.5
	중기	26.5	26.5	26.5	26.5	26.5
	후기	6.0	6.0	6.0	6.0	6.0
2010	전기	62.4	62.0	62.0	62.0	62.0
	중기	30.3	30.6	30.6	30.6	30.6
	후기	7.3	7.4	7.4	7.4	7.4
2020	전기	58.3	58.4	58.4	58.4	58.2
	중기	31.4	31.2	31.2	31.2	31.4
	후기	10.3	10.4	10.4	10.4	10.5
2030	전기	59.9	59.8	60.0	60.1	59.7
	중기	29.3	29.3	29.4	29.2	29.4
	후기	10.7	10.9	10.6	10.7	10.8
2050	전기	42.7	42.7	42.9	42.8	42.7
	중기	37.0	37.1	37.0	37.0	37.0
	후기	20.2	20.2	20.2	20.2	20.3
2070	전기	37.6	37.6	37.7	37.7	37.6
	중기	35.2	35.3	35.1	35.2	35.2
	후기	27.2	27.1	27.2	27.1	27.2

예를 들어, 시나리오 II($TFR=1.19$)의 경우 노인인구 중 전기고령층 비율은 2003년 67.5%에서 2070년 37.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중기고령층 비율은 2003년 26.5%에서 2050년 37.1%로 증가한 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표 4-11>). 후기고령층 비율은 2003년 6.0%에서 2070년 27.1%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전기, 중기 및 후기 고령층 비율은 2000년대에 큰 차이가 존재하나, 인구고령화 정도가 심화될수록 그 차이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출산력 시나리오간 전기, 중기 및 후기 고령층 비율의 차이는 아주 미세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확인하면, 인구대치수준 미만의 출산력 수준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어떠한 시나리오에서도 노인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4) 부양비

지금까지 향후 인구고령화의 전개 정도와 속도를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및 노인인구로 구분하여 측정, 분석하였다. 그러나 인구고령화는 기본적으로 노인인구는 증가한데 반해 이들 노인을 부양하여야 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시 된다. 따라서 향후 인구변동에서 종합적인 개념이나마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부양 정도를 측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전통적인 부양비(dependency ratio)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로 유소년 인구와 노인인구를 나누는 유소년부양비 및 노년부양비로 측정한다. 이 중 노년부양비는 노인인구를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의 부담을 그리고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를 합한 총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의 피부양자 부담 정도를 의미한다. 노년부양비의 역수인 잠재적부양비(potential supportive ratio)는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하여야 할 생산가능인구 규모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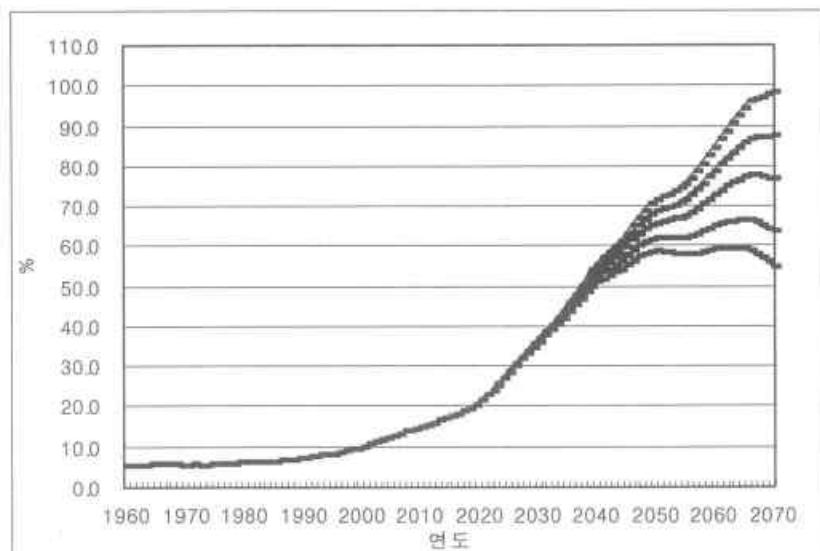
2003년에 노년부양비는 11.6%에서 계속 증가할 것이며, 증가속도는 출산율이 낮을수록 더 클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4-12>, [그림 4-7]). 시나리오 II($TFR=1.19$)에서 노년부양비는 2017년(18.7)부터 유소년부양비를 상회하며, 이후 2035년 45.2%, 2070년에 87.4%로 높아질 전망이다.

〈표 4-12〉 노년부양비 및 총부양비 변동 전망, 2003-2070

(단위: %)

구분	노년부양비					총부양비				
	I	II	III	IV	V	I	II	III	IV	V
2003	11.6	11.6	11.6	11.6	11.6	39.6	39.6	39.6	39.6	39.6
2005	12.6	12.6	12.6	12.6	12.6	39.3	39.3	39.3	39.3	39.3
2010	14.8	14.8	14.8	14.8	14.8	36.9	37.1	37.2	37.4	37.6
2015	17.5	17.5	17.5	17.5	17.5	35.7	36.2	36.6	37.1	37.7
2020	21.5	21.5	21.5	21.5	21.5	37.8	38.7	39.5	40.6	41.8
2025	28.7	28.7	28.6	28.6	28.5	44.3	45.5	46.7	48.4	50.1
2030	36.9	36.7	36.6	36.3	36.1	52.2	53.5	55.1	57.4	59.6
2035	45.6	45.2	44.7	44.2	43.6	60.6	62.0	63.7	66.7	68.9
2040	55.4	54.4	53.5	52.2	51.0	69.8	70.7	72.4	75.3	77.3
2045	63.0	61.3	59.6	57.3	55.2	76.4	76.8	77.9	80.2	81.7
2050	71.3	68.6	65.7	61.9	58.6	84.3	83.9	84.0	85.1	85.7
2055	75.4	71.6	67.5	62.0	57.8	88.3	87.0	86.0	85.8	85.8
2060	84.5	78.7	72.7	64.9	59.1	97.9	94.8	92.2	90.2	89.0
2065	94.2	85.8	77.3	66.6	59.1	108.1	102.5	97.7	93.2	90.5
2070	98.3	87.4	76.7	63.7	55.0	112.1	103.8	96.9	90.3	86.2

[그림 4-7] 노년부양비 변동 전망, 1960-2070



주: 그래프들은 밑에서 위로 시나리오 I에서 시나리오 V를 의미함.

자료: 1960-2000년은 통계청, 2001.

시나리오 V($TFR=2.10$)의 경우, 노년부양비는 2019년 20%로 증가하여 유소년부양비를 상회하며, 2035년 43.6%, 2070년 55.0%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총부양비는 유소년부양비 감소폭이 커 2003년 39.6%에서 계속 감소할 것이나, 2020년경부터는 노년부양비 상승폭이 유소년부양비 감소폭보다 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잠재적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인구로 산출되므로 향후 15년 동안 시나리오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표 4-13>). 잠재적부양비는 2003년 8.6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잠재적부양비 감소는 노인인구의 급증에 기인한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공히 잠재적부양비는 2025년 3.5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이후에는 시나리오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시나리오 II($TFR=1.19$)에서 잠재적부양비는 2050년 1.5명, 2070년 1.1명으로 그리고 시나리오 I($TFR=1.00$)의 경우 2070년에 1.0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시나리오 V($TFR=2.10$)의 경우에도 잠재적부양비는 2040년 이후 2.0명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4-13> 잠재적부양비 변동 전망, 2003~2070

(단위: 명)

구 분	출산력 시나리오				
	I	II	III	IV	V
2003	8.6	8.6	8.6	8.6	8.6
2005	7.9	7.9	7.9	7.9	7.9
2010	6.7	6.7	6.7	6.7	6.7
2015	5.7	5.7	5.7	5.7	5.7
2020	4.7	4.7	4.7	4.7	4.7
2025	3.5	3.5	3.5	3.5	3.5
2030	2.7	2.7	2.7	2.8	2.8
2035	2.2	2.2	2.2	2.3	2.3
2040	1.8	1.8	1.9	1.9	2.0
2045	1.6	1.6	1.7	1.7	1.8
2050	1.4	1.5	1.5	1.6	1.7
2055	1.3	1.4	1.5	1.6	1.7
2060	1.2	1.3	1.4	1.5	1.7
2065	1.1	1.2	1.3	1.5	1.7
2070	1.0	1.1	1.3	1.6	1.8

3. 인구고령화 진단

가. 총인구 규모와 인구고령화

출산력 등 인구변동요인의 변화로 인하여 총인구 규모는 유사할지라도 인구고령화 정도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림 4-3]에서 1960년부터 2070년까지 110년 동안 우리나라 총인구 변동 추이를 살펴볼 때, 총인구 규모는 시나리오별로 서로 다른 정점을 통과할지라도 일정한 시기에 과거 특정연도의 인구규모에 도달할 것이다. 시나리오별 장래 총인구 규모가 과거 특정연도의 총인구 규모와 일치하는 시기는 <표 4-14>에 제시하였다.

총인구 규모 3천만명은 과거 1967년에 도달하였으며, 시나리오 I에 의하면 2066년, 그리고 시나리오 II에 의하면 2070년에 도달할 것이다. 나머지 시나리오들에서는 2070년까지 총인구는 3천만명으로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총인구 규모가 4천만명에 이르렀던 시기는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한 1983년이다. 향후 총인구가 이 규모에 도달하는 시기는 시나리오 I의 경우 2049년, 시나리오 II의 경우 2052년, 시나리오 III의 경우 2056년, 시나리오 IV의 경우 2066년으로 각각 전망되었다. 총인구 규모가 4,500만명에 도달하였던 시기는 1995년이며, 장래 이 규모에 도달하는 시기는 시나리오 I의 경우 2039년, 시나리오 II의 경우 2041년, 시나리오 III의 경우 2045년, 시나리오 IV의 경우 2052년 그리고 시나리오 V의 경우 2064년으로 각각 전망되었다.

<표 4-14> 시나리오별 특정 인구 규모 도달 시기

(단위: 만명, 연도)

인구규모	과거 도달연도	출산력 시나리오별 장래 도달 연도				
		I	II	III	IV	V
3,000만명	1967	2066	2070	×	×	×
3,500만명	1975	2058	2061	2066	×	×
4,000만명	1983	2049	2052	2056	2066	×
4,500만명	1995	2039	2041	2045	2052	2064

주: *는 적어도 2070년 이내에 해당 인구규모에 도달하지 않음을 의미함.

이와 같이 총인구 규모는 저출산 지속의 영향으로 과거 규모로 회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과거에 인구규모 증가가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규모로의 회귀는 바람직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인구규모가 같을지라도 인구구조에서 차이가 날 것이며, 그러한 차이는 소규모의 장점을 상쇄하고 오히려 큰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표 4-15>에는 총인구 규모가 유사하나 출산력 수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 나타날 인구구조를 제시하였다.

〈표 4-15〉 특정 인구규모 도달시기별 인구구조 차이

(단위: 천명, %)

TFR	도달 연도	총인구	인구규모(천명)			인구구조(%)		
			유소년 인구	생산가 능인구	노인 인구	유소년 인구	생산가 능인구	노인 인구
인구 3,000만명								
약5.0	1967	30,131	13,199	16,004	928	43.8	53.1	3.1
1.00	2066	30,034	2,004	14,311	13,719	6.7	47.6	45.7
1.19	2070	30,036	2,418	14,738	12,880	8.1	49.1	42.9
인구 3,500만명								
3.47	1975	35,281	13,614	20,449	1,217	38.6	58.0	3.4
1.00	2058	34,755	2,359	17,962	14,434	6.8	51.7	41.5
1.19	2061	34,912	2,885	17,763	14,264	8.3	50.9	40.9
1.40	2066	34,958	3,608	17,631	13,719	10.3	50.4	39.2
인구 4,000만명								
2.08	1983	39,910	12,801	25,495	1,615	32.1	63.9	4.0
1.00	2049	40,046	2,861	21,839	15,346	7.1	54.5	38.3
1.19	2052	39,880	3,297	21,555	15,028	8.3	54.0	37.7
1.40	2056	39,840	3,970	21,323	14,547	10.0	53.5	36.5
1.80	2066	39,865	5,521	20,625	13,719	13.8	51.7	34.4
인구 4,500만명								
1.65	1995	45,093	10,537	31,900	2,657	23.4	70.7	5.9
1.00	2039	44,947	3,888	26,715	14,344	8.7	59.4	31.9
1.19	2041	45,203	4,235	26,305	14,663	9.4	58.2	32.4
1.40	2045	44,984	4,629	25,286	15,069	10.3	56.2	33.5
1.80	2052	44,952	5,662	24,262	15,028	12.6	54.0	33.4
2.10	2064	44,916	7,356	23,590	13,970	16.4	52.5	31.1

총인구 규모가 4,500만명에 도달한 1995년($TFR=1.65$) 당시 노인인구 비중은 5.9%에 불과하였으나, 시나리오 I ($TFR=1.00$)의 경우로서 2066년에는 31.9% 그리고 시나리오 II의 경우로서 2041년에는 32.4%로 추정되었다. 시나리오 V ($TFR=2.10$)의 경우로서 2064년에 노인인구 비중은 31.1%로 추정되었다.

총인구 규모가 3,000만명에 이르렀던 1967년 당시 합계출산율은 약 5.0명 수준이었으며, 노인인구 비중은 3.1%로 아주 낮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53.1% 그리고 유소년인구 비중은 43.8%로 높았다. 시나리오 II ($TFR=1.19$)의 경우로서 2070년에 노인인구 비중은 무려 42.9%로 높은 반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49.1% 그리고 유소년인구 비중은 8.1%로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결과적으로 인구규모가 유사할지라도 출산력 수준에 따라 부양비도 큰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표 4-16>). 총인구가 4,500만명에 도달한 1995년($TFR=1.65$) 당시 노년부양비는 8.1% 그리고 잠재적부양비는 12.0명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II ($TFR=1.19$)의 경우 2041년 노년부양비는 55.7% 그리고 잠재적부양비는 1.8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른 시나리오도 시나리오 II와 비교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노년부양비가 아주 높고 잠재적부양비는 아주 낮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총인구가 3천만명에 이르는 시기를 비교하여 보면, 1967년 노년부양비는 5.8%, 잠재적부양비는 17.2명인 반면, 시나리오 II의 경우로서 2070년에는 노년부양비 87.4%, 잠재적부양비 1.1명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특정 인구규모에 도달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과거와 향후 시나리오간의 인구구조 차이는 인구규모가 작을수록 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향후 보다 적은 인구규모에 도달하기 위하여 저출산현상이 더 오래 동안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망률의 지속적인 저하도 출산력과 상호작용을 할 것이다.

〈표 4-16〉 특정 인구규모 도달 시기별 부양비 차이

(단위: 천명, %, 명)

TFR (가정)	도달 연도	총인구	부양비			잠재적 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총부양비	
인구 3,000만명						
약5.0	1967	30,131	82.5	5.8	88.3	17.2
1.00	2066	30,034	14.0	95.9	109.9	1.0
1.19	2070	30,036	16.4	87.4	103.8	1.1
인구 3,500만명						
3.47	1975	35,281	66.6	6.0	72.6	16.7
1.00	2058	34,755	13.1	80.4	93.5	1.2
1.19	2061	34,912	16.2	80.3	96.5	1.2
1.40	2066	34,958	20.5	77.8	98.3	1.3
인구 4,000만명						
2.08	1983	39,910	50.2	6.3	56.5	15.9
1.00	2049	40,046	13.1	70.3	83.4	1.4
1.19	2052	39,880	15.3	69.7	85.0	1.4
1.40	2056	39,840	18.6	68.2	86.8	1.5
1.80	2066	39,865	26.8	66.5	93.3	1.5
인구 4,500만명						
1.65	1995	45,093	33.0	8.3	41.3	12.0
1.00	2039	44,947	14.6	53.7	68.3	1.9
1.19	2041	45,203	16.1	55.7	71.8	1.8
1.40	2045	44,984	18.3	59.6	77.9	1.7
1.80	2052	44,952	23.3	61.9	85.2	1.6
2.10	2064	44,916	31.2	59.2	90.4	1.7

나. 생산가능인구 비율과 인구고령화

노년부양비 증가는 결국 생산가능인구의 인당 부담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노년부양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반해, 저출산 지속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생산가능인구가 과거의 특정 비율로 회귀할 경우, 인구구조는 해당 과거연도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환연하면, 동일한 생산가능인구 비율일지라도 노인비율이 달라 상대적인 노년부양부담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표 4-17〉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율 전망, 2003-2070

(단위: %)

구 분	출산력 시나리오				
	I	II	III	IV	V
2003	71.7	71.7	71.7	71.7	71.7
2005	71.8	71.8	71.8	71.8	71.8
2010	73.1	72.9	72.9	72.8	72.7
2015	73.7	73.4	73.2	73.0	72.6
2020	72.5	72.1	71.7	71.2	70.6
2025	69.3	68.7	68.2	67.4	66.6
2030	65.7	65.1	64.5	63.5	62.7
2035	62.2	61.8	61.1	60.0	59.2
2040	58.9	58.6	58.0	57.0	56.4
2045	56.7	56.6	56.2	55.5	55.1
2050	54.3	54.4	54.4	54.0	53.8
2055	53.1	53.5	53.8	53.8	53.8
2060	50.5	51.3	52.0	52.6	52.9
2065	48.0	49.4	50.6	51.8	52.5
2070	47.1	49.1	50.8	52.6	53.7

우선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시나리오 I($TFR=1.00$)의 경우 2003년 71.7%에서 2016년에 73.8%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35년에 62.2% 그리고 2070년에 47.1%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나리오 II($TFR=1.19$)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16년 73.5%에서 정점을 도달할 전망이다. 시나리오 III($TFR=1.40$)의 경우에는 2015년 73.2%, 시나리오 IV($TFR=1.80$)의 경우 2012년 73.2% 그리고 시나리오 V ($TFR=2.10$)의 경우 2012년에 72.8%에서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정점에 이른 후 감소하는 속도는 출산율이 낮을수록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2070년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시나리오 V의 경우 53.7%, 시나리오 IV의 경우 52.6%, 시나리오 III의 경우 50.8% 등으로 감소할 것이다.

출산력 시나리오별로 2025년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65-69%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과거 1985-90년 수준과 유사하다(〈표 4-18〉). 그리고 시나리오별로 2050년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54%로 1970년 수준과 유사하다. 이와 같이,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유사할지라도 과거에는 유소년

〈표 4-18〉 생산가능인구 비중에 따른 시기별 인구고령화 비교

생산가능인구 비중	도달시기	유소년비중	노년인구비중	생산가능인구 평균연령
65-69%	1985-90년	30.2-25.6	4.3-5.1	34.2-34.9
	2025년	10.8-14.4	19.0-19.9	42.5-42.3
54%	1970년	42.5	3.1	34.0
	2050년	7.0-14.7	31.6-38.7	44.4-41.1

주: 2025년과 2050년 추정치는 시나리오 I ~ 시나리오 V 결과의 범위임.

인구 비중이 높았던 반면, 장래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서로 다른 두 시기 사이에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유사할지라도 과거에 비해 미래에 노인인구 비중은 높고 유소년인구 비중은 낮을 것이다. 유소년인구에 비해 노인인구는 그 특성상 고비용의 사회보장지출을 요하는 집단으로서 결국 생산가능인구의 부담 정도는 더 커질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또한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유사할지라도 과거에 비해 미래에 생산가능인구 자체의 고령화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65-69%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1985-90년에 약 34세인 반면, 2025년에는 약 42세으로 높아질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54%에 도달하는 경우에 평균연령은 1970년에 34세인 반면, 2050년에는 40세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4. 인구변동요인별 인구고령화 기여도

지금까지 분석 결과, 장래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는 출산력 시나리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아주 높은 수준으로 전개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에서 우선적으로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인구고령화는 국제이동의 영향이 미약한 경우 출산력과 사망률이라는 두 인구변동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사망률 감소는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며, 그 영향은 고사망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고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

난다. 환언하면, 사망력 감소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정도가 유소년인구나 생산가능인구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커, 결과적으로 인구고령화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 출산력은 노인인구 규모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중단기적으로는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규모를 감소시켜, 인구고령화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어느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인구고령화 정도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인구구조 즉, 연령계층간 인구규모 차이도 인구고령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이러한 인구구조는 궁극적으로 출산력과 사망력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서는 2003년을 기준으로 비교연도 사이 노인비율의 증가에 대한 인구변동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인구변동요인으로는 출산력과 사망력 및 기존 인구구조(구조적 요인)로 구분하였다. 분석을 위해 3가지 인구세트를 작성하였다. 즉, 기준연도(2003년) 연령별 인구 $P(b)$, 사망률 감소추이를 가정한 비교연도 연령별 인구 $P(t)$, 2003년 사망률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가정한 비교연도 연령별 인구 $\bar{P}(t)$ 이다. 인구변동요인별 인구고령화에 대한 기여도는 기본적으로 $P(t)=P(b) + [\bar{P}(t) - P(b)] + [P(t) - \bar{P}(t)]$ 식에 의거한다. 여기에서 $[\bar{P}(t) - P(b)]$ 는 연도가 서로 다르나 사망률이 일정하므로 연령별 인구 신규진입 및 유출에 해당하는 구조적 영향으로 간주할 수 있다. $[P(t) - \bar{P}(t)]$ 는 연도가 비교연도로 동일하나 사망률 차이가 있으므로 사망력의 영향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위 식을 저연령인구(1), 중간인구(2), 노인인구(3)의 세 부문 각각에 적용한다. 기준연도(2003)에 태어난 인구가 비교연도(t)에 이르는 경우 연령을 x세로 가정하면, 저연령인구는 0~x세로 구성된다. 중간인구는 (x+1)세~64세로 구성된다. 물론, 노인인구는 65세 이상으로 구성된다. 비교연도(t) 인구는

$$\text{노인인구: } P(t, 3)=P(b, 3) + [\bar{P}(t, 3) - P(b, 3)] + [P(t, 3) - \bar{P}(t, 3)]$$

$$\text{중간인구: } P(t, 2)=P(b, 2) + [\bar{P}(t, 2) - P(b, 2)] + [P(t, 2) - \bar{P}(t, 2)]$$

$$\text{유소년인구: } P(t, 1)=P(b, 1) + [\bar{P}(t, 1) - P(b, 1)] + [P(t, 1) - \bar{P}(t, 1)]$$

여기에서 t년도 노인인구비율은 t년도 노인인구를 t년도 총인구로 구하며, 이를 분해(decomposition)하면,

$P(t, 3)/[P(t, 1)+P(t, 2)+P(t, 3)] \times 100\%$ 또는

$\{P(b, 3)+[\overline{P(t, 3)}-P(b, 3)]+[P(t, 3)-\overline{P(t, 3)}]\}/$

$\{P(b, 1)+[\overline{P(t, 1)}-P(b, 1)]+[P(t, 1)-\overline{P(t, 1)}]+$

$P(b, 2)+[\overline{P(t, 2)}-P(b, 2)]+[P(t, 2)-\overline{P(t, 2)}]+$

$P(b, 3)+[\overline{P(t, 3)}-P(b, 3)]+[P(t, 3)-\overline{P(t, 3)}]\} \times 100\%$ 또는

$P(b, 1)+P(b, 2)+p(b, 3)$ 는 $P(b)$ 이므로

$\{P(b, 3)+[\overline{P(t, 3)}-P(b, 3)]+[P(t, 3)-\overline{P(t, 3)}]\}/$

$\{P(b)+[\overline{P(t, 1)}-P(b, 1)]+[P(t, 1)-\overline{P(t, 1)}]+\overline{[P(t, 2)}-P(b, 2)]+[P(t, 2)-\overline{P(t, 2)}]$

$+\overline{[P(t, 3)}-P(b, 3)]+[P(t, 3)-\overline{P(t, 3)}]\} \times 100\%$ 로 표시될 수 있다.

i) 이 식에서 사망력 감소 영향을 제거하는 경우 $\{[P(t, 1)-P(t, 1)]-[P(t, 2)-P(t, 2)]-[P(t, 3)-P(t, 3)]\}=0$, 노인비율은

$$= \{P(b, 3)+[\overline{P(t, 3)}-P(b, 3)]\}/\{P(b)+[\overline{P(t, 1)}-P(b, 1)]+\overline{[P(t, 2)}-P(b, 2)]+\overline{[P(t, 3)}-P(b, 3)]\} \times 100\%$$

ii) 출산력 영향을 제거하는 경우 $\{[\overline{P(t, 1)}-P(b, 1)]\}=0$, 노인비율은

$$= \{P(b, 3)+[\overline{P(t, 3)}-P(b, 3)]+[P(t, 3)-\overline{P(t, 3)}]\}/$$

$$\{P(b)+[\overline{P(t, 1)}-\overline{P(t, 1)}]+\overline{[P(t, 2)}-P(b, 2)]+[P(t, 2)-\overline{P(t, 2)}]+\overline{[P(t, 3)}-P(b, 3)]+[P(t, 3)-\overline{P(t, 3)}]\} \times 100\%$$

iii) 인구구조의 영향을 제거하는 경우 $\{[P(t, 2)-P(b, 2)]-[P(t, 3)-P(b, 3)]\}=0$, 노인비율은

$$= \{P(b, 3)+[\overline{P(t, 3)}-P(t, 3)]\}/\{P(b)+[\overline{P(t, 1)}-P(b, 1)]+[P(t, 1)-\overline{P(t, 1)}]+[P(t, 2)-\overline{P(t, 2)}]+[P(t, 3)-\overline{P(t, 3)}]\} \times 100\%$$

이와 같은 산식들로 산출한 인구변동요인 제거시 t년도 노인인구비율과 기준연도 노인인구비율간의 차이를 구하였다. 이 차이는 인구변동요인의 영향에 기인한 노인인구비율의 증감분을 의미한다. 요인별 차이의 합은 기준연도와 비교연도간 전체 노인인구비율의 차이와 일치할 것이다.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요인들간 상호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인구고령화에 대한 요인의 기여도는 노인인구비율의 전체 차이에 대한 각 요인별 차이의 백분율로 계산된다.

이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70년까지 각 연도에 대해 인구변동요인별 기여도를 산출하였다. 여기에서는 2025년 및 2050년의 두 연도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표 4-19>에 제시하였다.

〈표 4-19〉 출산력 시나리오별 인구변동요인의 인구고령화 기여도
(단위: %)

구 분	2025년					2050년				
	I	II	III	IV	V	I	II	III	IV	V
노인인구비율	19.9	19.7	19.5	19.3	19.0	38.7	37.3	35.7	33.4	31.6
요인 영향 제거시 비율										
출산력 영향 제거시	17.6	17.6	17.6	17.6	17.6	24.8	24.8	24.8	24.8	24.8
사망력 영향 제거시	18.0	17.8	17.6	17.4	17.1	32.2	30.9	29.4	27.4	25.7
구조적 영향 제거시	12.2	12.0	11.9	11.7	11.5	26.5	25.2	23.9	22.0	20.5
'03년 대비 노인비율차이										
출산력 영향	2.3	2.1	2.0	1.7	1.4	13.9	12.5	10.9	8.6	6.8
사망력 영향	1.9	1.9	1.9	1.9	1.9	6.5	6.4	6.3	6.1	5.9
구조적 영향	7.7	7.7	7.6	7.5	7.4	12.2	12.1	11.8	11.5	11.1
상호작용 영향	0.4	0.4	0.3	0.2	0.1	2.2	2.0	1.6	1.0	0.5
전체	11.6	11.4	11.2	10.9	10.7	30.4	29.0	27.4	25.1	23.3
인구고령화 기여도										
출산력 기여도	20.3	18.9	17.5	15.6	13.5	45.7	43.1	39.8	34.4	29.1
사망력 기여도	16.8	17.0	17.1	17.4	17.6	21.4	22.1	22.9	24.2	25.3
구조적 기여도	66.7	67.4	68.0	68.8	69.8	40.3	41.6	43.2	45.6	47.7
상호작용 기여도	3.8	3.2	2.6	1.8	0.9	7.3	6.7	5.9	4.1	2.2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25년 시나리오별 노인인구비율은 19~20%의 범위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이에 따라 2003년 수준과의 차이도 11% 내외에서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의 차이는 시나리오간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인구구조의 기여도는 66.7%(시나리오 I)~69.8%(시나리오 V)로 모든 시나리오에서 압도적으로 추정되었다. 요컨대, 과거 고출산시대에 태어난 연령층들이 노년기에 진입하여 인구고령화를 심화시킬 것임을 의미한다. 출산력의 기여도는 시나리오 IV ($TFR=1.80$)와 시나리오 V ($TFR=2.10$)의 경우 15% 이하로 사망력의 기여도(17.4%와 17.6%)보다 낮을 전망이다. 그러나 시나리오 I ($TFR=1.00$), 시나리오 II ($TFR=1.19$) 및 시나리오 III ($TFR=1.40$)의 경우에 출산력의 기여도는 사망력의 기여도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출산력 수

준이 낮을수록 인구구조, 출산력, 사망력 순으로 기여도가 높은 반면, 출산력 수준이 높을수록 인구구조, 사망력, 출산력 순으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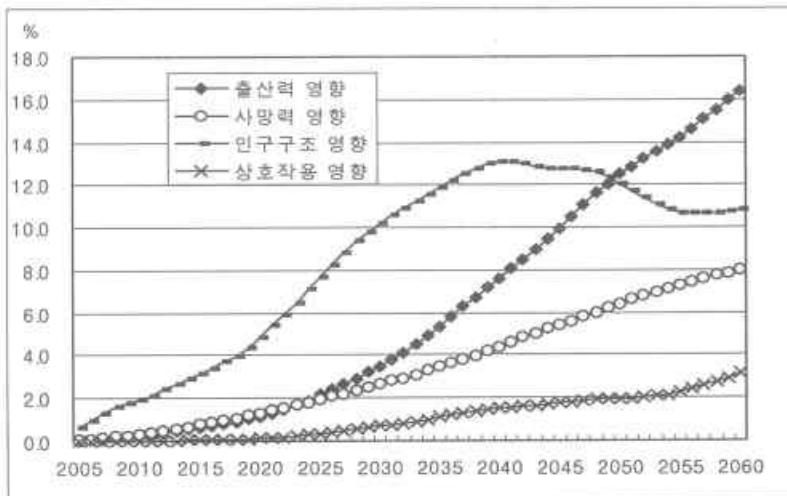
2025년의 경우와 달리 2050년에 노인인구비율은 시나리오간 큰 차이가 있다. 시나리오 I에서 노인인구비율은 38.7%인 반면, 시나리오 V에서는 31.6%로 7%p 차이가 있다. 출산력에 기인한 노인인구비율은 시나리오 I의 경우 13.9%로 가장 높고, 시나리오 V의 경우 6.8%로 가장 낮다. 즉, 출산력 수준이 낮을수록 출산력의 영향은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망력에 기인한 노인인구비율 차이는 약 6% 그리고 인구구조에 기인한 차이는 약 12%로 시나리오간 큰 차이가 없으나, 출산력 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변동요인별 기여도는 출산력 수준이 낮을수록 커지는 반면, 인구구조와 사망력의 기여도는 출산력 수준이 높을수록 커지고 있다. 요인별 기여도 수준은 시나리오 I과 시나리오 II의 경우 출산력(45.7%, 43.1%), 인구구조(40.3%, 41.6%), 사망력(21.4%, 22.1%) 순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시나리오 III부터 시나리오 V까지는 인구구조, 출산력, 사망력 순으로 기여도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출산력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력과 사망력간의 기여도 차이가 작아지고 있다.

이상 결과를 요약하면, 출산력 수준이 낮을수록 인구고령화에 대한 출산력의 기여도는 커지는 반면, 사망력의 기여도는 낮아질 것이다. 인구고령화에 대한 인구구조적인 영향은 단기간의 경우 압도적으로 나타나나, 저출산 기간이 길어질수록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시나리오 II와 시나리오 V간의 비교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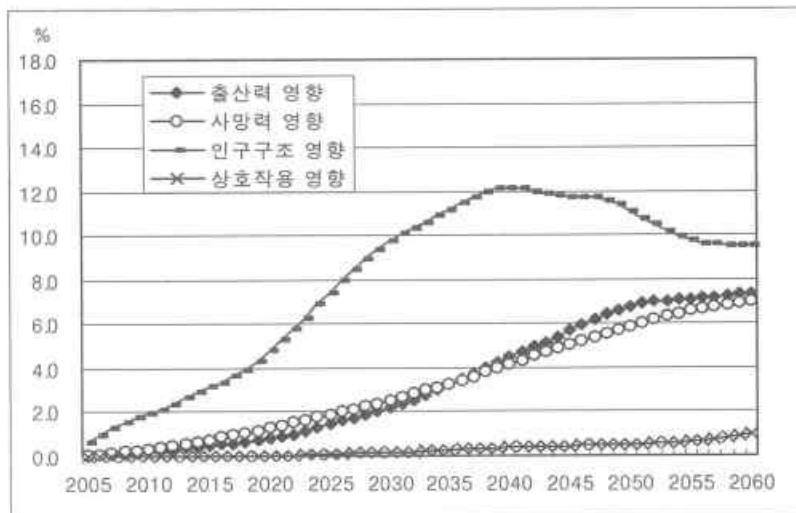
[그림 4-8]과 [그림 4-9]는 시나리오 II와 시나리오 V의 경우 인구변동요인별 기여도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시나리오 II($TFR=1.19$)의 경우 초기에는 인구구조와 사망력의 기여도가 출산력의 기여도보다 높으나, 연도가 경과될수록 출산력의 기여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출산력의 기여도는 계속 증가하여 2024년부터는 사망력의 기여도 그리고 2050년경에는 인구구조의 기여도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¹⁴⁾ 시나리오 V

14) 출산력과 사망력의 기여도가 유사한 시기는 시나리오 I의 경우 2022년, 시나리오 II의 경우 2024년, 시나리오 III의 경우 2025년, 시나리오 IV의 경우 2029년, 시나리오 V의 경우 2036년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4-8] 인구고령화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시나리오II (TFR=1.19)



[그림 4-9] 인구고령화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시나리오V (TFR=2.10)



(TFR=2.10)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인구구조의 기여도가 가장 크나,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출산력과 사망력의 기여도는 거의 유사하며, 점진적으로 높아져 인구구조의 기여도에 접근하고 있다.

5. 인구고령화 전개의 시사점

이 장에서는 출산력 변동에 대한 5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향후 인구고령화 수준과 속도를 진단하였다. 인구고령화는 총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 노인인구의 고령화 및 부양비로 구분하여 분석되었다. 출산력 수준은 다르나 총인구 규모 및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유사한 시기간 인구고령화 수준이 비교, 분석되었다. 그리고 인구변동요인들이 인구고령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추정되었다. 이를 분석 결과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서구사회나 일본 등에 비해 아직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인구대치수준 미만의 저출산현상이 이미 20년간 지속되어 옴에 따라 인구대치수준 이하의 어떠한 출산력 가정 하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인구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구고령화 현상으로 단순히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이 상승하여 노동력의 고령화가 동반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노인인구 중에서는 의료 및 생활 보장이 더 요구되는 중기 및 후기 고령층 노인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질 것이다. 결국 인구고령화의 가속화는 노동과 사회보장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향후 인구고령화는 기존 인구의 구조, 출산력 및 사망력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 속도와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현 출산력 수준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인구변동요인 중 출산력이 인구고령화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될 것이다. 출산율 수준이 낮고 기간이 장기적으로 갈수록 인구고령화에 대한 사망력의 기여도는 점차 낮아질 것이다.

셋째, 인구구조도 인구고령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나, 이미 출생한 인구에 대한 조정은 불가능하다. 사망력의 기여도는 출산력이나 인구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나, 인구고령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의료보건의 발달 등으로 인해 사망수준을 낮추는 일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인구고령화를 막기 위해 역행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고령화 수준을 낮추고 그 진행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출산율 증가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출산율 수준을 회복시키는 일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아주 높은 수준으로 출산율이 증가할 경우에 과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과 분석결과들을 감안하면, 합계출산율은 우선 단기적으로 적어도 1.5 이상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구대치수준 미만의 어떠한 시나리오에서도 다소 속도 차이가 있을 뿐 인구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될 것임을 감안하면, 출산율은 궁극적으로 인구대치수준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대치수준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시나리오 V)에도 노인비율은 2050년에 30%를 상회할 것이므로, 인구대치수준에 도달하는 시기를 가급적 앞당길 필요가 있다(이 연구에서는 2035년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한 바 있음).

마지막으로, 일정 수준으로의 출산율 회복에도 불구하고 저사망의 지속, 인구구조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장래에 인구고령화 현상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출산력 회복 정도는 인구고령화 수준과 속도에 다소 영향을 줄 뿐이다. 따라서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비한 각종 사회경제적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 5 장

출산력 변동요인

1. 개요

앞서 분석된 바와 같이, 향후 인구고령화는 단기적으로 기존 인구의 구조에 의해 압도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출산력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출산력은 사망력보다 인구고령화에 더 기여할 것이며, 기존 인구의 구조보다도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한편, 출산력이 인구대치수준에 접근할수록 인구고령화에 대한 출산력과 사망력의 영향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기존 인구의 구조가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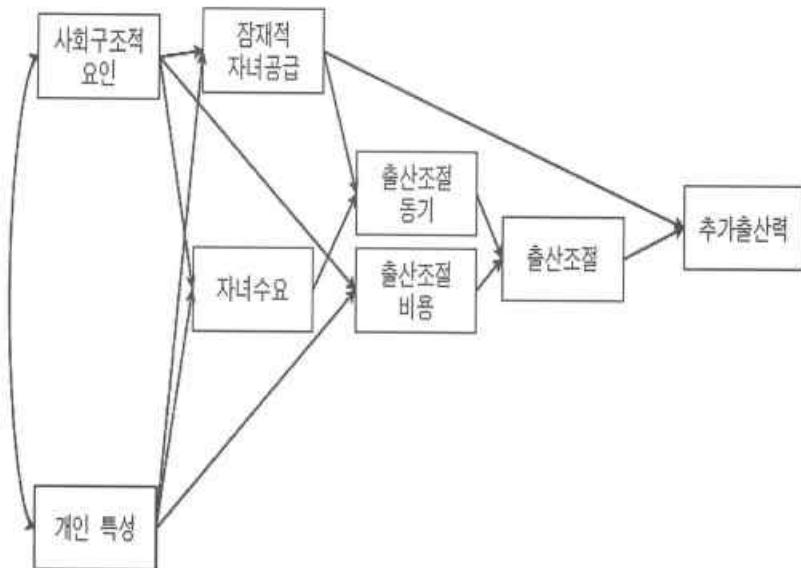
인구고령화의 수준을 낮추고 진행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구변동 요인들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은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성이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장수를 추구할 것이며, 인류는 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이동의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국제이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보내는 국가들의 정책과 법령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나 인력시장 구조 등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요인들도 국제이동의 수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의 경향을 감안하면 국제이동이 향후 우리나라 인구규모나 구조에 미칠 영향은 미세할 것을 추측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제이동은 인구 규모나 구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사후적인 인구정책수단으로서 간주 될 수 있다.

결국, 인구고령화 수준 및 속도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인구정책은 출산력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 고출산시대에 출산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및 사회적 노력들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서구사회의 예로 보아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다시 증가시키는 데에는 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며, 그 성과도 낙관적으로 기대될 수 없다. 그 이유로는 자녀수 감소가 개인에게 여러 장점을 제공하는 반면, 자녀 수 증가는 개인에게 추가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출산율을 일정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출산을 야기하는 요인 내지 원인들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최근의 출산력 변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심층 분석하고자 하였다.

출산력 결정요인에 관한 Hermalin(1983)의 이론에 의하면, 자녀출산은 자녀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서 공급은 현존하는 자녀수이며, 수요는 희망자녀수이다. 자녀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 여성(또는 부부)은 추가출산의 동기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동기가 실천되는 여부는 소요비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한 비용은 금전적인 비용 이외 시간, 사회규범, 건강, 심리적 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사회구조적 특성들과 개인적 특성들의 가능으로서 경제적 위치나 사회적 지위까지 포함한다. 즉, 출산행위는 개인적인 특성들과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자녀의 수요와 공급은 개인적인 변화보다 사회구조적인 변화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사회구조적인 변화는 사회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환경 등 제 영역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도시화, 산업구조, 문맹률 등 사회적 요인들이 출산 감소 및 희망자녀수 감소를 유인하다.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은 관습이나 규범을 통해 혼인연령, 재혼 등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Hermalin의 출산력 결정요인에 관한 모형은 [그림 5-1]에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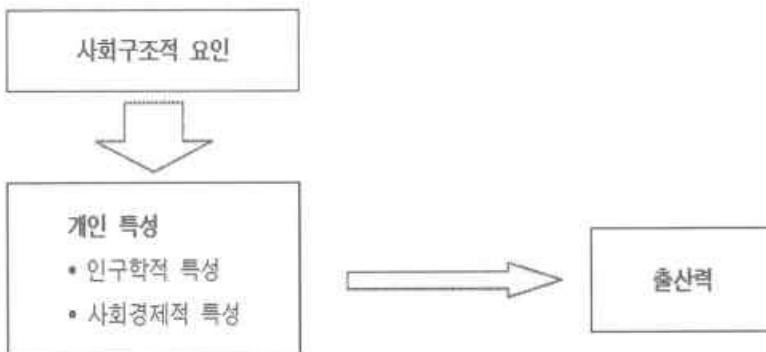
[그림 5-1] 출산력 결정요인에 관한 기본모형



자료: Hermalin, 1983. p3.

이 연구에서는 Hermalin의 기본모형에 기초하여 최근 우리나라 출산력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분석을 위해 개념적 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5-2]). 분석모형은 개인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들이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략화 하였다. 즉, 분석모형에서는 개인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전제한다. 여기에서 인구학적 요인은 혼인연령(초혼연령)으로 사회구조적 요인들인 사회규범, 교육수준, 산업구조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연령도 세대차이로서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이나 가치관 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속성들로 교육수준, 경제활동참가, 직업, 주거지(도시화), 혼인상태, 소득수준 등은 자체적으로 사회구조의 변화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림 5-2] 출산력 변동요인에 관한 기본모형



이러한 모형에 의거하여 기혼여성의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독립변수로 포함되는 요인들은 사회구조적 변화를 나타내는 개인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들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였다.

한편, 이러한 모형은 미시적인 분석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종합적인 의미에서 출산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혼인 등 인구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모형에는 기혼여성만 포함한다는 점에서 미래 가임세대의 혼인력 및 출산력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미시적인 분석에 앞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인구구조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미혼인구의 가치관도 함께 살펴보았다.

2. 출산력 변동의 인구구조적 요인

한국사회는 법률혼이 강한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어 전통적으로 혼외출산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출산 대부분은 법률혼으로부터 발생하며, 혼전에 출산하는 경우도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혼인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출산은 혼인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출산력은 일차적으로 혼인력(nuptiality) 또는 미혼율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혼인을 하는 경우에도 그 시기가 늦추어지는 경우 출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된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하나는 혼인시기가 늦추어지는 경우 직접적으로 가임기간이 단축되어 출생아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늦게 혼인하는 경우 가임능력이 낮아지거나 건강문제로 임신 및 출산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개인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출생아수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혼인을 늦게 하여 자녀를 늦게 두는 경우 심리적 및 경제적으로 양육이 어려워질 것이며, 이에 따라 만혼부부는 자녀수를 줄이려는 경향이 강할 것이라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적 차원이든 가족적 차원이든 혼인연령은 출산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가 가능하다.

혼인을 하고 가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적은 자녀수를 두는 경향이 강한 경우에는 전체적인 출산력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즉, 유배우출산력은 전체 출산력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혼인력, 혼인시기(혼인연령), 유배우출산력 등 세 가지 인구학적 요인들의 변동에 따라 전체적인 출산력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출산율에 관한 구조적 방정식에 기초한다(박순일 외, 2004).

$$\frac{B}{P} = a\left(\frac{B}{M} \times \frac{M}{P}\right) + (1-a)\left(\frac{B}{S} \times \frac{S}{P}\right) \quad \dots \quad (\text{식 1})$$

(여기에서 B 는 출생아수, P 는 가임여성수, M 은 유배우부인수, S 는 미혼여성수, a 는 총출생아수 중 유배우부인이 낳은 출생아 비율)

가. 출산력 변동에 대한 혼인력 영향

혼인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총인구 천명당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이 있다. 조혼인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약 9.0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3년 6.3으로 급속히 낮아졌다(<표 5-1>). 조혼인율 감소의 구조적인 이유는 한편으로 분모로서 총인구가 증가하고, 다른 한편으로 분자로서 혼인건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혼인건수의 경우 1997년 이전에는 연간 40만건 이상이 발생하였으나, 그 후 급격히 감소하여 2003년에는 30만건으로 줄어들었다.

〈표 5-1〉 출산력 및 혼인력 지표, 1972-2002

(단위: 명, 건, %,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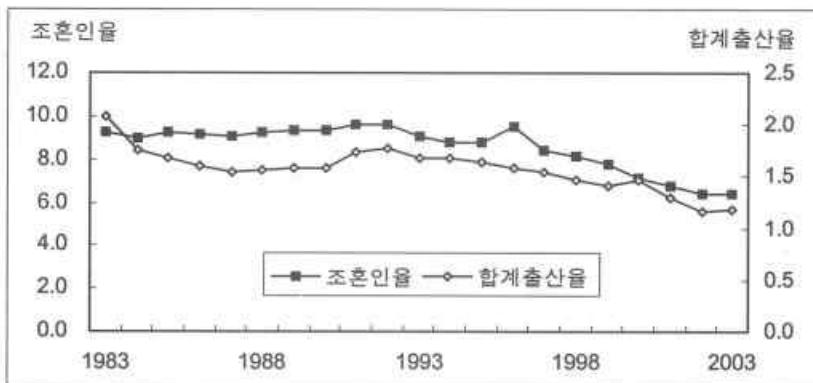
구 분	출생아수 (명)	합계 출산율(명)	혼인 (건수)	조혼인율 (%)	초혼연령(세)	
					여성	남성
1972	955,438	4.14	244,780	7.3	22.6	26.7
1975	874,869	3.47	283,226	8.0	22.8	26.8
1981	880,310	2.66	364,889	9.4	23.2	26.4
1985	662,510	1.67	376,847	9.2	24.1	27.0
1988	637,462	1.56	388,704	9.2	24.7	27.6
1989	646,197	1.58	398,037	9.4	24.8	27.8
1990	658,552	1.59	399,312	9.3	24.8	27.8
1991	718,279	1.74	416,872	9.6	24.9	28.0
1992	739,291	1.78	419,774	9.6	25.0	28.1
1993	723,934	1.67	402,593	9.0	25.1	28.1
1994	728,515	1.67	393,121	8.7	25.2	28.3
1995	721,074	1.65	398,484	8.7	25.4	28.4
1996	695,825	1.58	434,911	9.4	25.5	28.4
1997	678,402	1.54	388,591	8.4	25.7	28.6
1998	642,972	1.47	375,616	8.0	26.1	28.9
1999	616,322	1.42	362,673	7.7	26.3	29.1
2000	636,780	1.47	334,030	7.0	26.5	29.3
2001	557,228	1.30	320,063	6.7	26.8	29.6
2002	494,625	1.17	306,573	6.4	27.0	29.8
2003	493,471	1.19	304,932	6.3	27.3	30.1

주: 조혼인율은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임.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통계청,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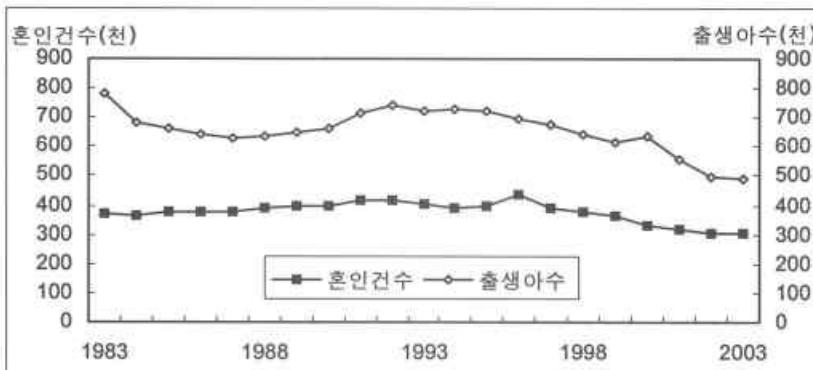
조혼인율과 출산율간의 관계는 [그림 5-3]에 제시하였다.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치수준에 도달한 1983년 이래 조혼인율과 합계출산율은 거의 유사한 궤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혼인건수는 고출산시대에 출생아수와 다소 상반된 변동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저출산시대에 들어서는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다([그림 5-4]). 혼인건수의 감소는 연령구조 즉, 결혼적령기 인구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조혼인율 감소추이를 감안하면, 혼인건수 감소는 만혼 및 독신 경향에도 기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림 5-3] 조혼인율 및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83-2003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통계청,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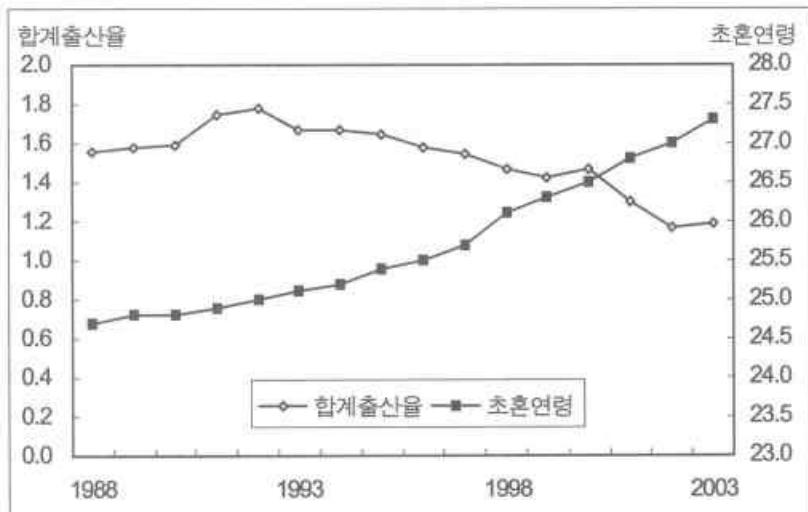
[그림 5-4] 혼인건수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83-2003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통계청, 2001.

법률혼이 보편적인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초혼연령은 곧 임신 및 출산이 시작될 수 있는 시기를 의미한다. 여성의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표 5-1>). 여성의 초혼연령은 1972년 22.6세에 불과하였으며, 출산율이 인구대치수준에 이르렀던 1980년대 초반에도 24세 정도였다. 즉, 합계출산율이 2명 정도 감소한 동안(약 10년) 여성의 초혼연령은 약 1.5세가 증가하였다. 이후 여성의 초혼연령은 1992년 25.0세, 1998년 26.1세, 2002년 27.0세, 2003년 27.3세로 증가하였다. 이와 반대로 합

[그림 5-5] 여성 초혼연령과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88~2003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통계청, 2001.

계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2000년대에 들어 초혼연령의 상승폭과 합계출산율의 감소폭이 동시에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3]).

초혼연령의 상승 추이는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남녀간 초혼연령 차이는 약 3세 정도이나, 변동추이는 거의 유사하다. 특히, 남성의 초혼연령은 2003년 처음으로 30세를 상회하였다.

여성의 초혼연령 상승은 가임기간(childbearing period)을 직접적으로 단축시켜 생리적(biological) 출산기회를 줄임으로써 출산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혼인연령의 상승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으로도 이어져 출산기회가 상실되는 경향을 증대시킨다. 즉, 만혼은 저출산을 야기하는 주요 인구구조적인 요인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¹⁵⁾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있다. 그러한

15) 외국과 달리 합법적 결혼에 의한 출산만이 사회적으로 인정됨으로써, 혼인연령 증가는 생리적 가임가능연령과 사회적 가임가능연령간의 차이(socio-bio gap)를 증가시켜 출산가능기간을 축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출생아수를 줄이는 원인이 된다(이삼식 외, 1999). 실제 혼전임신(미혼모) 대부분은 인공임신중절로 소모되는 경향이 있다.

논의들은 대체적으로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 취업활동 증가, 자아실현 욕구 증대, 가족관 및 결혼관 변화, 경제적 곤란 등을 주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¹⁶⁾ 초혼연령 상승의 사회경제적 원인들은 후술하는 미혼 및 기혼 남녀의 가치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혼인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조혼인율과 초혼연령은 통계청의 인구동태통계에 기초하는 것으로, 해당연도의 혼인력 수준을 제시해 줄 뿐이다. 즉, 전체 인구의 혼인상태나 수준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가임기(15-49세) 여성인구의 혼인력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 혼인 중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이혼 또는 사별 여성을 제외한 미혼여성(never married)의 비율은 <표 5-2>에 제시하였다.

전체 가임여성의 미혼율은 1970년 31.5%에서 2000년 34.9%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연령별로 15-19세 여성의 미혼율은 1970-2000년 기간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출산이 집중된 연령층 중 하나인 20-24세 여성의 미혼율은 1970년 57.2%에서 2000년 89.1%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1970년 당시 이 연령층 여성의 절반정도가 미혼이었던 반면, 2000년에는 거의 90%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25-29세 여성의 미혼율도 1970년 9.7%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40.1%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30-34세 여성의 미혼율은 1970년 겨우 1.4%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10.7%로 상승하였다. 35세 이상 고연령층 여성의 미혼율도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그 수준은 낮았다.¹⁷⁾

16) 예를 들어, Kim과 Li(1997)는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보편화의 사회규범을 따르되 미혼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연령을 늦춘다고 한다. 그들에 의하면, 만혼은 여성의 적절한 배우자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남자가 배우자로 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을 원하는 관습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학력 여성 중 결혼을 하지 않을 여성의 증가하여, 결국 만혼과 독신비율의 증가는 출산율 저하에 기여한다.

17) 일본의 합계출산율을 감소는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즉, 기혼부인의 출산율이 일정한 데 반하여, 유배우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합계출산율을 감소시키고 있다(Kojima, 1998).

〈표 5-2〉 가임기(15~49세) 여성의 미혼율 변동 추이, 1970~2000

(단위: %)

구 분	연 령								50
	전체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70	31.5	97.1	57.2	9.7	1.4	0.4	0.1	0.1	0.1
1975	36.0	97.4	62.5	11.8	2.1	0.7	0.3	0.2	0.2
1980	36.5	98.2	66.1	14.1	2.7	1.0	0.5	0.3	0.2
1985	36.3	99.1	72.1	18.4	4.2	1.6	0.7	0.4	0.3
1990	36.4	99.5	80.5	22.1	5.3	2.4	1.1	0.4	0.5
1995	34.6	99.2	83.3	29.6	6.7	3.3	1.9	1.0	0.7
2000	34.9	99.3	89.1	40.1	10.7	4.3	2.6	1.7	1.2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평생 결혼하지 않은 이른바 독신은 인구학적으로 50세 연령에 이르러서도 미혼으로 남아있는 경우에 해당된다(Shryock et al., 1976: 341). 즉, 이 연령층에서의 미혼율은 독신율로 간주될 수 있다. 여성의 독신율은 1970년 0.1%에서 2000년에 1.2%로 12배 상승하였다. 최근의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임기 동안 혼인하지 않을 비율을 보다 최근에 결혼적령기에 진입한 연령층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1950-54년생(1970년 15-19세)의 미혼율은 20-24세 62.5%에서 25-29세 14.1%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45-49세에 이르러서는 1.7%만이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70-74년생(1990년에 15-19세)의 미혼율은 20-24세에 83.3%, 25-29세에 40.1% 그리고 1975-79년생(1995년에 15-19세)의 미혼율은 20-24세에 89.1%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즉, 최근 세대일수록 가임기가 완료된 시점에서도 미혼으로 남아있을 비율은 급격히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겠다.

가임기 여성의 미혼율 상승은 앞서 분석한 초혼연령의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초혼연령이 상승하면, 각 연령층(특히, 저연령층)에서 미혼율이 높아지게 된다. 미혼율 상승은 실질적인 가임여성인구(유배우여성)의 감소를 의미한다. 유배우여성의 감소는 인당 출산율이 동일한 경우 출생아수 감소로 이어져, 이들 출생아수를 전체 여성수로 나누어 구하는 연령별출산율 및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¹⁸⁾

나. 가임여성인구 규모

가임여성(15-49세)의 규모는 출생아수에 영향을 미치며, 혼인율이 변동하는 경우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합계출산율을 구성하고 있는 연령별출산율을 산정하는 식에서 분모는 혼인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여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가임여성 규모는 1970년 7,437천명에서 2002년 13,469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표 5-3>). 가임여성인구는 2003년 13,464천명으로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출산이 집중된 연령층인 20-24세 여성은 1993년 2,200천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5-29세 여성은 1998년 2,180천명 그리고 30-34세 여성은 2,173천명을 정점으로 각각 감소하고 있다.

<표 5-3> 가임여성인구 변동 추이, 1970-2003

(단위: 천명)

구 분	가 임 여 성					출 산 지 표		
	전체 (15-49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49세	출생아수	합계 출산율
1970	7,437	1,581	1,254	1,129	1,108	2,366	1,007	4.53
1975	8,719	2,094	1,504	1,245	1,109	2,767	875	3.47
1980	9,959	2,176	2,015	1,488	1,205	3,075	865	2.83
1985	11,072	2,135	2,089	2,005	1,463	3,380	663	1.67
1990	12,128	2,153	2,105	2,104	2,011	3,755	659	1.59
1995	12,858	1,887	2,132	2,091	2,092	4,657	721	1.65
2000	13,418	1,855	1,865	2,121	2,071	5,506	637	1.47
2001	13,469	1,742	1,907	2,042	2,113	5,665	557	1.30
2002	13,469	1,631	1,945	1,957	2,156	5,779	495	1.17
2003	13,464	1,544	1,956	1,892	2,173	5,900	493	1.19

자료: 통계청, 2001; 통계청, 2004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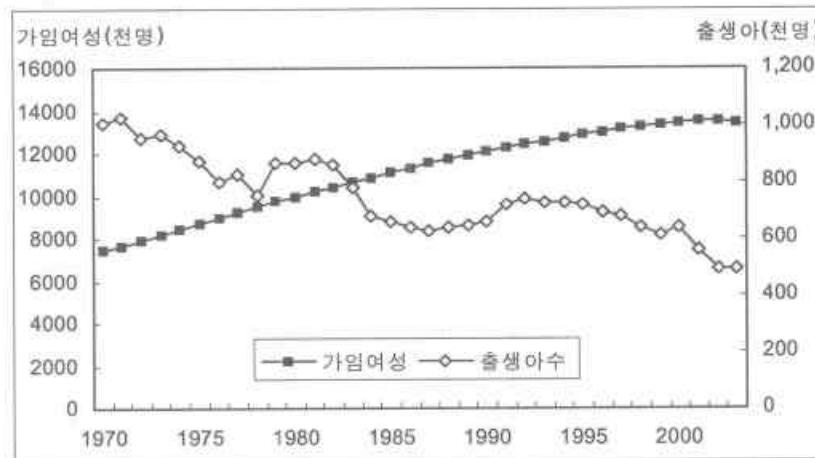
18) 가임여성 규모의 감소는 출생아수 감소를 가져오나, 가임기 여성의 감소 폭이 유배우 여성의 감소 폭보다 큰 경우(또는 미혼여성의 증가폭보다 큰 경우) 출산율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임여성수는 계속 증가하여 왔다. 결과적으로 최근 출산력의 급격한 저하는 가임여성수(분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초혼연령 상승 및 득신여성 증가로 실제 출산을 감당하는 유배우 여성의 수가 감소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박순일 외, 2004).

[그림 5-6] 가임여성인구(15~49세)와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70~2003



자료: 통계청, 2001; 통계청, 2004c.

[그림 5-7] 가임여성인구(15~49세)와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70~2003



자료: 통계청, 2001; 통계청, 2004c.

가임여성인구와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간의 관계는 [그림 5-6]과 [그림 5-7]에 도시되었다. 가임여성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임여성인구 중 미혼인구 비중이 높아져 실제 출산이 가능한 여성(유배우 여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유배우부인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 유배우부인의 출산력

기혼여성의 출산력은 평균 출생아수(CEB: children ever born)로 측정되며,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우선 전체 가임기(15-49세) 여성의 평균출생아수는 1980년 2.85명에서 1990년 2.13명, 2000년 1.81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표 5-4>). 2000년 기혼부인의 연령구조를 기준으로 표준화시킨 평균출생아수도 감소하고 있으며, 그 차이는 표준화 전보다 크게 나타났다. 즉, 기혼여성의 출산력은 연령구조의 변화와 상관없이 감소하였다.

연령별 출생아수는 15-1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19세 기혼여성의 출생아수는 1980년 0.46명에서 1990년 0.32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최근 2000년에는 0.52명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20-24세 기혼여성의 출생아수는 1980년 1.78명에서 1990년 0.7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에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25-29세 기혼여성의 출생아수는 1980년 1.78명에서 2000년 1.11명으로 약 0.7명 감소하였으며, 30-34세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동기간 2.69명에서 1.71명으로 약 1명 감소하였다. 1980년부터 2000년까지 35-39세 기혼여성의 출생아수는 약 1.5명, 그리고 40세 이상 기혼여성의 출생아수는 약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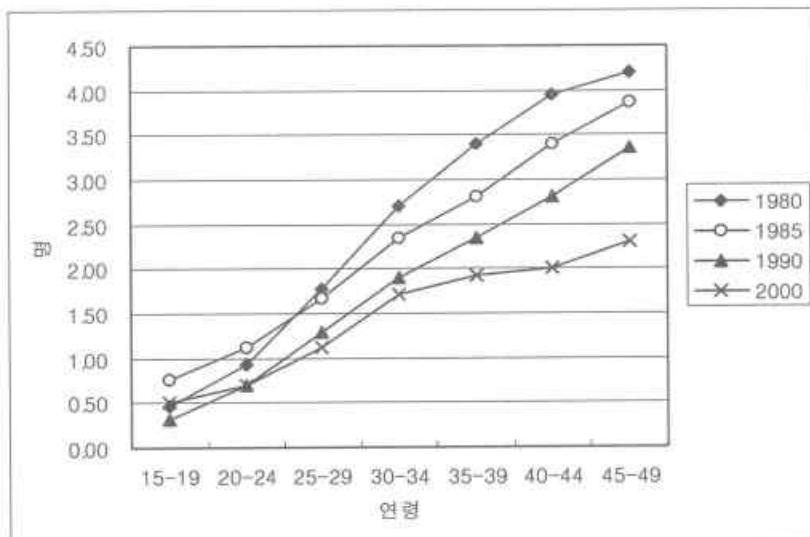
<표 5-4>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 추이, 1980-2000

(단위: 명)

구 분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총 합	표준화
1980	0.46	0.94	1.78	2.69	3.40	3.94	4.21	2.85	3.22
1985	0.75	1.12	1.66	2.34	2.82	3.40	3.87	2.59	2.82
1990	0.32	0.70	1.28	1.90	2.35	2.81	3.35	2.13	2.33
2000	0.52	0.70	1.11	1.71	1.92	2.00	2.31	1.81	1.81

자료원: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5-8] 기혼부인의 평균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80-2000



자료원: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감소하였다. 완결출산력(completed fertility)으로서 45-49세 여성의 출생아수는 1980년 4.21명에서 1990년 3.35명, 2000년 2.31명으로 거의 10년마다 1명씩 감소하였다.

비교연도간 출생아수 차이는 저연령층 여성의 경우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연령층에서는 최근에 올수록 일정한 패리티에서 단산하는 경향이 커, 연도간 출생아수 차이도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1980년 및 1990년 연령별 평균출생아수는 연령 증가와 함께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완결출산력에 모든 연령층이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에 평균출생아수는 25-29세까지 아주 낮다가 30-34세에 급격히 증가하며, 이후에는 아주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즉, 최근에 35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단산이 이루어지며, 그 영향으로 30-34세 연령층에서의 출생아수가 완결출산력에 근접하고 있다. 요컨대, 유배우여성의 출산수준은 모든 연령층에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그 폭은 3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보다 크게 나타났다.

3. 출산력관련 가치관 변화

가. 미혼인구의 결혼관

여성부에서 2003년 전국 3,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1차 「전국 가족조사」 결과로서 미혼인구의 결혼관은 앞서 분석한 출산과 혼인간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사된 미혼남녀 중 결혼을 계획하고 있지 않는 비율은 남성의 경우 28.0%, 여성의 경우 29.6%로 여성이 다소 높았다(<표 5-5>). “잘 모르겠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도 남성 16.5%, 여성 21.4%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¹⁹⁾

결혼계획이 없는 경우, 주된 이유로는 남성의 경우 경제적 기반부족, 자신의 일에 열중, 결혼의 불필요성, 결혼으로 인한 책임/부담 우려 순으로 나타났다(<표 5-6>). 여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일에 열중, 결혼 불필요, 경제적 기반부족, 상대방에 의한 구속, 결혼으로 인한 책임/부담 우려 순으로 나타났다.²⁰⁾

<표 5-5> 미혼남녀의 결혼계획 유무, 2003

(단위: %, 명)

구 분	결혼계획 없음	결혼계획 있음	잘 모르겠음	전 체
남 성	28.0	55.5	16.5	51.5(714)
여 성	29.6	49.0	21.4	48.5(673)

자료: 은기수, 2004. p.30.

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최근에 실시한 다른 한 조사에서 미혼자의 결혼관을 질문한 결과, 하지 않은 편이 좋음 3.4%(남성 3.1%, 여성 3.6%),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음 25.7%(16.3%, 37.9%), 하는 편이 좋음 47.8%(49.4%, 45.8%), 반드시 해야 함 21.0%(28.7%, 11.1%), 생각해보지 않음 또는 모르겠음 2.1%(2.5%, 1.6%)로 각각 나타났다(김승권 외, 2003).

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는 학업 때문에 14.9%(남성 16.0%, 여성 13.4%), 나이가 어려 25.6%(18.4%, 35.0%), 마땅한 배우자가 없어서 27.7%(25.8%, 30.2%), 계속 취업 원함 1.1%(0.3%, 2.2%), 경제적 기반 없어 24.0%(34.0%, 10.8%), 독신 선호 4.2%(2.9%, 6.0%), 기타 2.5%(2.6%, 2.4%)로 나타났다(김승권 외, 2003).

〈표 5-6〉 미혼남녀의 결혼계획이 없는 이유, 2003

(단위: %, 명)

구 분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	상대방에 구속되어 기 싫어	나의 일에 더 열중하기 위해	결혼으로 인한 책임/의무 부담	결혼제도는 여성에 불리	결혼생활 위한 경제적 기반 부족	기 타	전 체
남 성	14.8	6.5	21.4	8.6	1.6	35.7	11.4	100.0(384)
여 성	24.4	9.8	26.2	9.3	4.4	20.1	5.9	100.0(389)

주: 다중응답 값임.

자료: 은기수, 2004. p.30.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남녀 공히 경제적 기반 부족과 자신의 일에 대한 열중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최근 경제적 불황 및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도 상당한 것으로 이러한 가치관은 교육정도 상승과 함께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의 경우 상대방 구속, 결혼에 대한 책임/의무, 결혼제도의 불합리성 등 결혼자체에 대한 이유(총 23.5%)가 남성의 경우(16.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나. 자녀관

1) 기혼여성의 자녀관

기혼여성(유배우부인)의 자녀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표 5-7〉). 우선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태도는 1991년 90.3%로 압도적이었으나 이후 1997년 73.7%, 2003년 54.5%로 급격히 낮아졌다. 최근에도 기혼여성의 자녀 선호도(반드시 필요+있는 편이 좋음)는 90% 수준으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태도가 비록 낮은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무자녀(childless) 부부가 증가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겠다.

〈표 5-7〉 유배우부인(15~44세)의 자녀관, 1991~2003

(단위: %, 명)

년도	반드시 가져야함	반드시	가질 필요	없음	모르 겠음	전체
		소계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		
1991	90.3	8.5	-	-	1.2	100.0(7,448)
1997	73.7	26.0	16.6	9.4	0.3	100.0(5,409)
2000	58.1	41.5	31.5	10.0	0.4	100.0(6,408)
2003	54.5	44.9	32.3	12.6	0.7	100.0(6,614)

주: 1991년은 15~49세 기혼부인 대상임.

자료: 공세권 외, 1992; 조남훈 외, 1997; 김승권 외, 2000; 김승권, 2004.

2) 미혼남녀의 자녀관

전국가족조사결과에 의하면, 미혼남성의 24.9%, 미혼여성의 35.1%가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온기수, 2004). 이는 앞서 살펴본 기혼여성에 비해 자녀의 불필요성 태도가 더 강한 것이다. 미혼남녀가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견지한 이유는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다(〈표 5-8〉).

부모로서 가치가 있다는 보다 적극적인 이유는 남녀 공히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36.6%, 여성 40.1%). 또한 자녀가 주는 기쁨과 보람을 이유로 제시하는 비율도 남성 19.4%, 여성 27.0%로 높게 나타났다. 비전통적인 이유의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표 5-8〉 미혼남녀가 제시하는 자녀가 있어야 하는 이유, 2003

(단위: %, 명)

구분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 가치 있는 일	결혼하면 자녀 두는 것 당연	자녀가 주는 기쁨/보람 커서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노후 부양을 위해서	기타	무응답	전체
남자	36.6	33.8	19.4	7.2	2.2	0.2	0.2	100.0 (536)
여자	40.1	29.1	27.0	2.5	0.9	0.2	0.2	100.0 (437)

자료: 온기수, 2004, p.32.

나타났다. 전통적인 이유로 결혼하면 당연히 자녀를 두어야 한다는 태도는 남녀 공히 두 번째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33.8%, 여성 29.1%). 이외 가문계승(남성 7.2%, 여성 2.5%), 노후부양(남성 2.2%, 여성 0.9%)의 이유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미혼남녀가 결혼 후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태도를 보인 이유는 남녀 간 다소 차이가 있다. 남성의 경우 양육의 경제적 부담(45.5%), 부부의 애정으로 충분(41.6%)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부부의 애정으로 충분(43.6%), 양육의 경제적 부담(38.1%) 순으로 나타났다(<표 5-9>). 미혼남녀 공히 아이를 좋아하면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자녀를 원치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최근 경제적 불안정성, 직업 불안정성, 취업 곤란 등으로 볼 수 있다(은기수, 2004).

미혼남녀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자녀수로는 2명이 남성 응답자의 경우 66.3%, 여성응답자의 경우 59.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명(남성 응답자 26.7%, 여성 응답자 32.5%)이었다(<표 5-10>). 이상자녀수

<표 5-9> 미혼남녀가 제시하는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 2003
(단위: %, 명)

구 분	아이 좋지만 양육의 경제적 부담 큼	부부의 애정만으 로도 충분	내 일을 하는데 부담	아이를 별로 좋아 않음	불가피한 경우	전 체
남성	45.5	41.6	5.1	5.6	2.3	100.0(178)
여성	38.1	43.6	12.3	3.8	2.1	100.0(236)

자료: 은기수, 2004. p.32.

<표 5-10> 미혼남녀가 제시하는 이상자녀수, 2003
(단위: %, 명)

구 분	무자녀	1명	2명	3명	무응답	전 체
남 성	0.8	26.7	66.3	5.6	0.6	100.0(514)
여 성	1.7	32.5	59.5	5.5	0.8	100.0(474)

자료: 은기수, 2004. p.32.

로 3명을 제시한 미혼남녀는 5% 수준에 불과하였다. 무자녀를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아주 낮다. 이상자녀수 2명이 보편적인 가치관이나 1명 비중이 3명보다 월등히 많아, 실제 출생아수는 2명 이하로 1명에 보다 접근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다. 혼외 출산에 관한 태도

서유럽국가와 북유럽국가의 경우 최근 출산율이 상승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혼외 출산비율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이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의 제6장에서 다루었다). 현대에서 영양상태 개선 등 생리적 능력은 월등히 빠르게 발달하는 반면, 사회적으로 혼인 연령은 계속 늦추어지면서 이른바 출산의 사회-생리적 연령간격(scio-bio gap)은 점차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미혼여성의 임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유교주의적 사상에 의해 미혼모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²¹⁾

미혼여성의 인공임신증절 증가 경향은 단편적이나마 여러 사례조사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한 분석에서 혼전임신에 따른 인공임신증절 비율은 15~24세에서 22.8%, 25~29세에서 24.6%, 그리고 30세 이상에서 12.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한성현, 김민자, 1994). 공세권 외(1992)에 따르면, 혼전임신의 인공임신증절율이 1974년 19%에서 1990년 36%로 증가하였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혼전임신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가 우세하여, 미혼여성의 혼전임신 대부분은 인공임신증절로 종결된다고 할 수 있다(한성현 외, 2000; 서울여성복지연맹, 1996).

21) 미혼모는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으며 죄의식과 수치심을 가지게 되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교육이나 직업의 기회를 박탈당하여 사회적응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미혼모 가족은 사회적으로 수치심을 갖게 되고, 미혼모는 가족으로부터 이탈하므로 가족의 결속이 무너져 가정불화와 가정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미혼모의 아이는 대부분 입양되거나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들은 사생아가 되어 성장과정에서 애정결핍 등으로 성인이 된 후에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설사 미혼모가 아이를 스스로 양육하는 경우에도 아이의 법적 지위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발달이 어려워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이삼식, 1998).

〈표 5-11〉 기혼·미혼 남녀의 결혼않고도 자녀를 가지는데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 찬성	약간 찬성	찬성/반 대도아님	약간 반대	전적 반대	무응답 비해당	계(명)
남자	1.6	11.1	23.5	30.6	31.6	1.6	100.0(3,558)
20대	1.6	3.1	29.4	34.6	20.3	1.1	100.0(627)
30대	2.4	13.4	25.7	30.0	26.3	2.3	100.0(934)
40대	1.5	11.4	22.6	30.4	32.7	1.5	100.0(966)
50대	0.6	10.3	18.4	33.7	34.9	2.2	100.0(496)
60대	1.6	5.3	21.1	24.2	47.6	0.3	100.0(380)
70+	1.3	5.2	15.5	23.9	52.9	1.3	100.0(155)
여자	1.7	11.1	20.4	27.8	37.1	1.9	100.0(4,063)
20대	1.9	16.5	25.4	29.4	25.3	1.5	100.0(807)
30대	1.7	13.4	22.3	26.3	34.1	2.3	100.0(1,066)
40대	2.2	10.4	19.5	28.9	37.4	1.6	100.0(920)
50대	0.8	7.5	19.9	28.8	41.2	1.7	100.0(517)
60대	2.3	4.6	14.4	26.6	50.6	1.5	100.0(474)
70+	1.1	5.7	12.5	25.5	50.9	4.3	100.0(279)

자료: 은기수, 2004. p.25.

여성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표 5-11〉), 남녀 모든 연령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지는 데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전지하고 있다. 혼외출산을 찬성하는 긍정적인 태도는 남성보다 여성 그리고 고연령층보다 저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반대 태도에 비해 아주 낮다. 혼외출산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는 여전히 완강하여, 적어도 단기적으로 출산 대부분은 전통적인 결혼제도 하에서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즉, 미래에도 결혼 연기 및 기피는 바로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라. 남녀간 가사분담 등에 관한 태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면서 한국사회에서도 맞벌이부부(double earners)가 보편화 되고 있다. 제2장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보았듯

이, 서구사회에서의 저출산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자녀양육간의 양립가능성이 낮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과 양육간의 양립가능성이 낮은 이유로는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사에서 남녀간 역할 불평등, 직장에서의 차별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외 저출산 원인으로 높은 교육비용이 지적되기도 한다(2장 이론적 고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가사분담에 관한 태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1998년 사회통계조사(통계청, 1998)와 2003년 전국가족조사(온기수, 2004)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가사를 부부간 공평하게 분담하여야 한다는 태도는 1998년 조사에서 남성의 경우 47.4%, 여성의 경우 54.8%로 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표 5-12>).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자의 경우 67.4%로 기혼자의 45.2%보다 높았다. 2003년 조사결과, 공평분담 태도(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

<표 5-12>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1998

(단위 : %)

구 분	부인 전적 책임	부인 주로 책임	공평 분담	남편 주로 책임	남편 전적 책임	전 체
전체	3.3	43.7	51.2	0.2	1.6	100.0
남자	3.7	47.0	47.4	0.3	1.7	100.0
여자	2.9	40.7	54.8	0.1	1.4	100.0
혼인상태						
미혼	1.1	30.2	67.4	0.1	1.1	100.0
기혼	4.1	48.8	45.2	0.2	1.7	100.0

자료: 통계청, 1999.

<표 5-13> 맞벌이 부부의 가사 공평분담에 관한 태도, 2003

(단위 : %, 명)

구 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비해당	전 체
남 성	28.9	52.8	15.9	12.4	1.1	100.0(3,558)
여 성	43.6	43.9	10.5	0.8	1.2	100.0(4,063)

자료: 온기수, 2004, p.22.

〈표 5-14〉 여성취업 장애요인에 관한 의식, 2003

(단위: %)

구 분	차별관행	직업의식 책임부족	능력부족	불평등 근로여건	육아부담	가사부담	기 타
1995	24.7	8.7	4.3	9.5	52.5	0.3	
남자	24.5	10.8	5.0	9.1	50.3	0.3	
여자	24.8	6.8	3.7	9.9	54.6	0.2	
1998	28.2	10.0	4.3	12.5	29.3	10.6	5.2
남자	28.8	11.9	4.6	11.9	27.1	10.4	5.3
여자	27.6	8.1	4.0	13.0	31.4	10.8	5.0

자료: 통계청, 1999.

〈표 5-15〉 자녀 1인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

(단위: 천원)

구 분	취학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전체 평균
2000	122	112	175	227	547	221
2004	158	186	239	348	573	287

주: 전체 평균에는 재수생, 휴학생 포함.

자료: 통계청, 2004a.

의 합)는 남성의 경우 81.7%, 여성의 경우 87.5%로 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표 5-13〉). 두 조사간 비교를 통해, 맞벌이부부의 가사공평분담에 관한 일반적 의식이 상당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여성이 생각하는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 및 가사부담은 1995년 54.6%에서 1998년 42.2%로 감소하였다(〈표 5-14〉). 대신, 차별관행은 1995년 24.8%에서 1998년에 27.6%로 그리고 불평등근로여건은 동 기간 9.9%에서 13.0%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남성응답자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2004년에 실시한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표 5-15〉), 지난 1년간 취학전 아동이나 재수생, 휴학생을 모두 포함한 자녀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287천원으로 2000년 221천원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취학전 158천원, 초등학교 186천원, 중학교 239천원, 고등학교 348천원, 대학이상 573천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지출내용 중 학

〈표 5-16〉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단위: %)

구 분	매우 부담	부 담	보 통	별로 부담 안됨	전혀 부담 안됨	전 체
2000	28.6	43.9	19.2	6.0	2.2	100.0
2004	37.6	39.6	16.6	4.7	1.5	100.0

자료: 통계청, 2004a.

원·보충교육비(135천원)가 전체의 47.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교납입금(102천원), 하숙·자취비(18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교육비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가구는 2004년 77.2%로 2000년 조사의 72.5%보다 증가하였다(〈표 5-16〉).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 보충교육비 64.6%, 학교납입금 30.9%, 하숙비 등 2.4%, 교재비 1.7% 순으로 사교육비(학원비 및 과외비)의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교육비 부담은 2000년(56.0%)에 비해 8.6%p가 증가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양성간 가사분담, 여성의 취업장애요인, 교육비 부담 등에 관한 의식은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여성의 취업장애요인으로서 근로여건불평등이나 여성차별, 사교육비 부담 의식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결국 출산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4. 출산력 변동의 사회경제적 요인

출산력에 인구학적 요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인구학적 요인들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출산력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어느 한 요인보다 많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사회경제적 요인들로는 교육수준, 경제활동참가, 산업 및 직업, 소득, 주거환경, 가족환경, 정부정책 등 무수하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출생아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용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원자료)」이다.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은 [그림 5-2]에 제시된 분석모형에 의거하여 사회구조적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기혼여성의 특성들이다. 그러한 변수들로는 여성의 주거지, 현재연령, 혼인상태, 초혼연령, 가구구성, 교육정도, 경제활동상태, 가구소득이다. 특히, 여성의 일과 자녀양육간의 양립 가능성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상태는 취업경력(모형1), 직업(모형2), 종사상지위(모형3)로 구분하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실시된 회귀분석 결과는 <표 5-17>에 제시하였다. 한편, 일부변수에서 역인과성이 존재할 것으로 여겨지나, 여기에서는 독립변수들이 출생아수 결정에 미치는 방향만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우선 모든 모형에서 연령 증가와 함께 출생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출산기간 증가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연령은 통제 목적으로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구학적 특성으로 혼인상태가 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은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배우상태와 다른 혼인상태(재혼, 이혼, 사별)간의 출생아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초혼연령이 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은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초혼연령이 15-24세보다 많은 경우(25-27세, 28-29세, 30-34세, 35세 이상), 출생아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모든 모형에서 동일하였으며, 영향정도는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가구구성 중 다세대는 여성의 일과 자녀양육 양립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모든 회귀모형에서 3세대 이상의 경우 2세대에 비해 출생아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도시화는 모든 모형에서 출생아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에서의 생활비용이 농촌에 비해 고가인데다가, 도시여성들이 농촌여성들에 비해 가치관이 가족중심이기보다 개인중심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여성의 교육정도도 모든 모형에서 출생아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학력보다 대학교 학력이 중학교 이하 학력에 비해 출생아수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득수준이 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과 관계없이

<표 5-17> 출생아수 변동 요인

구 분	모형1 b (S.E.)	모형2 b (S.E.)	모형3 b (S.E.)
연령	0.05 (0.00) ***	0.05 (0.00) ***	0.05 (0.00) ***
혼인상태			
이혼	-0.02 (0.05)	0.02 (0.05)	0.00 (0.05)
재혼	-0.14 (0.08) *	-0.14 (0.08) *	-0.15 (0.08) *
사별	-0.11 (0.06) *	-0.08 (0.06)	-0.09 (0.06)
초혼연령			
25-27	-0.26 (0.02) ***	-0.25 (0.02) ***	-0.25 (0.02) ***
28-29	-0.47 (0.04) ***	-0.46 (0.04) ***	-0.46 (0.04) ***
30-34	-0.75 (0.05) ***	-0.74 (0.05) ***	-0.74 (0.05) ***
35+	-1.29 (0.14) ***	-1.26 (0.14) ***	-1.28 (0.14) ***
가구구성			
1세대	-0.94 (0.03) ***	-0.94 (0.03) ***	-0.94 (0.03) ***
3세대이상	0.07 (0.03) **	0.05 (0.03) *	0.07 (0.03) *
주거지	-0.27 (0.03) ***	-0.21 (0.03) ***	-0.25 (0.03) ***
교육정도			
대학이상	-0.14 (0.03) ***	-0.11 (0.03) ***	-0.14 (0.03) ***
고등학교	-0.11 (0.02) ***	-0.09 (0.02) ***	-0.12 (0.02) ***
취업경력			
계속취업	-0.05 (0.02) *		
혼인후 취업	0.02 (0.03)		
계속 비취업	-0.06 (0.03) *		
직업			
관리/전문직		-0.05 (0.04)	
사무직		-0.15 (0.05) ***	
판매/서비스직		-0.07 (0.02) **	
농업직		0.37 (0.05) ***	
기능/노무직		0.01 (0.03)	
종사상지위			
고용주/자영업			0.04 (0.03)
상용직			-0.10 (0.03) ***
임시직			-0.04 (0.03)
무급가족종사			0.07 (0.03) *
가구소득	0.00 (0.00)	0.00 (0.00)	0.00 (0.00)
상수	0.58 (0.07) ***	0.52 (0.07) ***	0.58 (0.07) ***
R ²	0.43 ***	0.44 ***	0.44 ***
사례수	5,939	5,935	5,935

주: 1) 준거범주: 혼인상태(유배우), 초혼연령(15-24세), 가구구성(2세대), 주거지(도시), 교육정도(중이하), 취업경력(혼전 취업, 혼후 비취업), 직업(무직), 종사상지위(무직).

2) + p<0.1; * p < .05; ** p < .01; *** p < .001.

$p<0.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상실하고 있다. 출산 및 양육에 고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니, 소득수준보다는 다른 속성들에 의해 출생아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일과 자녀양육간의 양립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세 변수 중 취업경력(모형1)은 계속 취업과 계속 비취업의 경우에 출생아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패턴으로 결혼 후 일을 중단한 여성에 비해 계속 일을 하는 여성들이 출생아수를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 후 일을 중단한 여성보다 계속 일을 하지 않은 여성들은 더 적은 자녀수를 두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계속 일을 하지 않은 여성들이 고학력 및 중산층 이상으로 일할 필요가 없거나 일을 희망하나 기회가 없는 여러 계층들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일과 양육의 용이성만을 근거로 이들 여성의 다른 집단보다 더 많은 자녀를 둘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다른 하나는 준거집단여성들은 주로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해 일을 그만두는 경우로 그 결과 비교집단 여성들보다 많은 자녀를 둘 것이라는 점이다.

무직여성을 준거집단으로 취업여성의 직업별로 회귀분석한 결과, 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은 출생아수를 감소시키는 반면, 농업직은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직에 종사한 여성의 경우, 일과 자녀 양육간의 양립 가능성에 큰 구애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관리/전문직과 기능/노무직의 경우 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은 $p<0.05$ 에서 통계적으로 무의미 하였으며, 그 이유는 이들 직종에 종사한 여성의 수가 아주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무직여성을 준거집단으로 한 취업여성의 종사상지위에 대한 분석결과는 상용직과 무급가족종사의 경우에만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피고용자로서 상용직에 종사한 여성은 그 만큼 일과 자녀양육간의 양립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출생아수를 줄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일과 자녀양육간의 양립가능성이 커, 무직여성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은 자녀를 둘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 논의에서 시사하는 점은 첫째,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사무직이

나 판매/서비스직에 상용직으로 종사하는 경우 일과 자녀양육간의 양립 가능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적은 자녀를 가질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무급가족종사자로서 농업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일과 자녀양육간의 양립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녀를 둘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일과 자녀양육간의 양립 가능성과 관계없이 전업주부도 출산력 저하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사회구조적인 변수로서 도시화와 교육수준 상승은 출산율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연령 상승도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출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3세대 이상에서 출생아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다세대가족 하에서 특히 취업여성의 자녀 양육이 용이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5. 출산력 변동요인의 시사점

저출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여러 분석들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 요인으로 혼인력과 유배우부인의 출산력은 최근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혼인력에 관해서는 혼인연령이 급격히 상승하고, 그로 인해 출산이 집중되는 연령층(20-34세)에서의 미혼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범률혼에 의한 출산이 보편적인 한국사회에서 혼인연령 상승 및 미혼율 증가는 단기적인 기간 출산율 저하로 직결된다. 여성의 혼인연령 상승은 가임기간을 단축시키고 독신경향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코호트출산율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그 동안 가임여성의 증가 추이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수와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연령 구조적으로 향후 가임여성 인구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 예상되어, 출생아수 감소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혼인연령을 낮추고 미혼율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 향후 출산율을 일정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근거는 최근 서유럽 및 북유럽에서 출산율 회복세가 혼인연령의 안정화와 관련되고 있다는 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둘째, 또 다른 인구학적 요인으로 유배우출산력이다. 기혼여성이나

미혼인구의 가치관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혼인하는 경우에도 부인 1명당 출생아수는 평균적으로 2명을 상회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 가임세대의 이상자녀수를 살펴보면 1.5명 이하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실제 최근 유배우출산율도 30대초 수준이 출산기간이 완료되는 연령층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무리 적령기에 혼인을 장려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출산에 대한 선호나 실천이 없이는 출산율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선호도를 증가시키고, 그러한 선호도가 실천될 수 있도록 적합한 사회환경 조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저출산에 기여하는 사회구조적 요인들로 도시화, 여성의 교육정도, 경제활동참가와 직업 및 종사상지위, 가족구성, 혼인상태, 주거형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출산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일과 자녀양육간의 양립가능성 제고는 출산관련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출산관련 정책들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혼관, 자녀관, 가족관 등의 가치관은 여전히 자녀 출산 및 양육을 더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태도에서 기혼자와 미혼자간의 세대차이가 엄연히 존재하여, 점차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가치가 약화될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징후는 일부 시계열적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결혼 및 자녀출산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이 어느 정도 사회경제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나, 사회규범으로 고착되는 경우 출산을 회복에 결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 환경조성과 함께 의식개선을 위한 사회운동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제 6 장 외국의 인구고령화와 대응사례

앞서 향후 우리나라에서 인구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단되었다. 인구고령화 수준과 속도는 출산력과 사망력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중장기적으로 출산력 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사 출산율을 인구대치수준까지 회복시키는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저출산 및 저사망의 지속으로 인구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인구고령화 정도는 낮추기 위해서는 전자의 출산을 회복정책이 중요하며, 동시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인구고령화에 따른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오래 전에 출산전환(fertility transition)을 겪었던 외국의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상과 이에 대한 대응 사례를 분석하였다. 주된 목적은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대응책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은 OECD국가의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황을 살펴보고, 대응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대응사례는 몇몇 대표적인 국가들을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I. OECD국가의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황

가. 출산율 수준

OECD국가의 출산율은 일부국가(예를 들어, 터키,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아주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6-1> 및 [그림 6-1]에는 30개

OECD국가들 중 특정 지역 또는 사회시스템의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일부 국가들의 출산력 변동을 제시하였다. 지리적으로 OECD국가들은 극동아시아, 서유럽, 동유럽, 남유럽, 북유럽, 북미 및 오세아니아로 구분될 수 있다.

합계출산율은 2000년대 초 동유럽/남유럽, 서유럽/북유럽, 북미/오세아니아 순으로 나타났다. 동유럽 국가 중 체코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에 1.14로 아주 낮았으며, 폴란드도 1.29로 낮았다. 남유럽 국가들 중에는 이태리와 스페인의 합계출산율이 1.25로 낮았다. 동아시아 국가로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02년 1.29까지 낮아졌다.

서유럽의 경우 국가간 편차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영국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초 각각 1.9와 1.7로 비교적 높은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1.4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다. 우리나라자는 동유럽 국가로서 체코와 함께 출산력이 가장 낮은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표 6-1〉 일부 OECD국가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70-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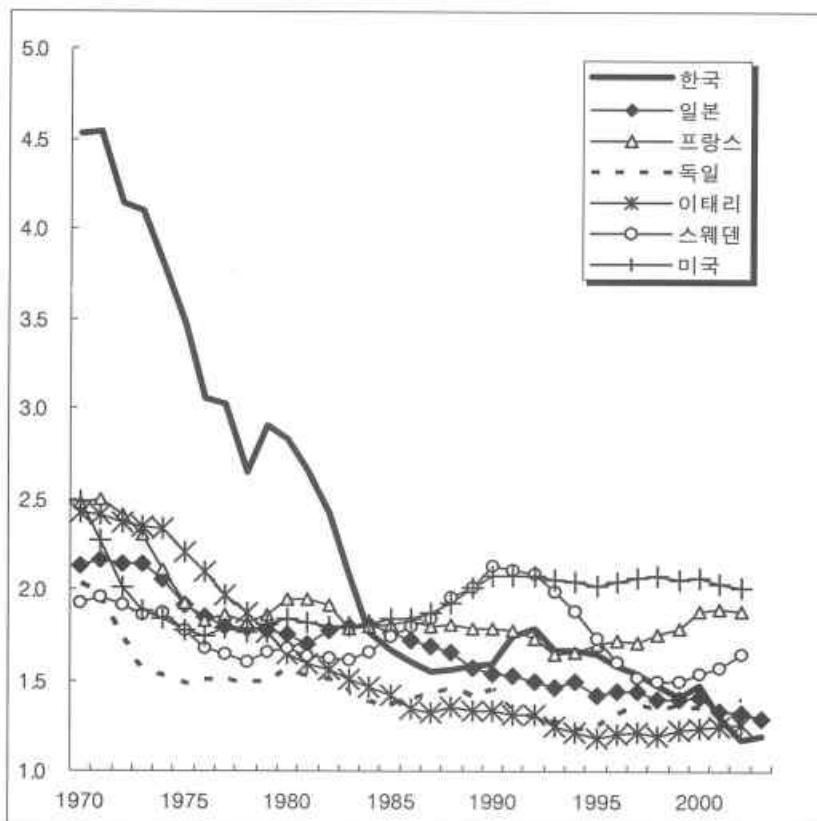
(단위: 여자 1명이 가임기간 낳을 평균자녀수)

구분	동아시아		서유럽			남유럽		북유럽		동유럽		북미/오세아니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체코	폴란드	미국	호주
1970	4.53	2.13	2.47	2.03	2.43	2.42	2.90	1.92	2.50	1.91	2.20	2.48	2.86
1975	3.47	1.91	1.93	1.48	1.81	2.20	2.79	1.77	1.98	2.43	2.27	1.77	2.22
1980	2.83	1.75	1.95	1.56	1.90	1.64	2.20	1.68	1.72	2.10	2.28	1.84	1.90
1985	1.67	1.76	1.81	1.37	1.79	1.42	1.64	1.74	1.68	1.96	2.33	1.84	1.89
1990	1.59	1.54	1.78	1.45	1.83	1.33	1.36	2.13	1.93	1.89	2.04	2.08	1.91
1995	1.65	1.42	1.70	1.25	1.71	1.18	1.18	1.73	1.87	1.28	1.61	2.02	1.82
2000	1.47	1.41	1.88	1.36	1.64	1.24	1.23	1.54	1.85	1.14	1.34	2.06	1.75
2001	1.30	1.33	1.89	1.35	1.64	1.25	1.24	1.57	-	1.14	1.29	2.03	1.73
2002	1.17	1.32	1.88	1.40	1.65	1.26	1.25	1.65	-	-	-	2.01	1.75
2003	1.19	1.29	-	-	1.73	-	-	-	-	-	-	-	-

주: -는 최근 자료가 없는 경우임.

자료: UN, 2004; 통계청, 2001.

[그림 6-1] 일부 OECD국가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70~2003



자료: UN, 2004; 통계청, 2001.

OECD국가들 중 과거 고출산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더 급격히 감소하여, 최근에는 오히려 다른 국가들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 6-2>). 197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 수준은 2002년에 26% 수준으로 그리고 일본의 출산율은 62% 수준으로 각각 낮아졌다. 출산율 수준이 비교적 높은 프랑스의 2002년 출산율은 1970년의 76% 수준, 스웨덴의 경우 86%로 나타나, 지난 30년 동안 출산율 감소속도는 비교적 늦은 편이었다. 반대로 2002년 출산율이 비교적 낮은 스페인의 경우에는 1970년 수준의 43%, 이태리의 경우 52%, 그리고 체코의 경우(2001년 수준) 60% 수준으로 감소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다.²²⁾

〈표 6-2〉 일부 OECD국가의 합계출산율 변동 속도, 1970-2003

(단위: 1970년=100)

구분	동아시아		서유럽			남유럽		북유럽		동유럽		북미/오세아니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체코	폴란드	미국	호주
197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75	77	90	78	73	74	91	96	92	79	127	103	71	78
1980	62	82	79	77	78	68	76	88	69	110	104	74	66
1985	37	83	73	67	74	59	57	91	67	103	106	74	66
1990	35	72	72	71	75	55	47	111	77	99	93	84	67
1995	36	67	69	62	70	49	41	90	75	67	73	81	64
2000	32	66	76	67	67	51	42	80	74	60	61	83	61
2001	29	62	77	67	67	52	43	82	-	60	59	82	60
2002	26	62	76	69	68	52	43	86	-	-	-	81	61
2003	26	61	-	-	-	-	-	71	-	-	-	-	-

주: -는 최근 자료가 없는 경우임.
 자료: UN, 2004.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100으로 하여 다른 국가들의 출산율 수준을 비교하였다(<표 6-3> 참조). 다른 OECD국가들의 출산율 수준은 198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5년에 들어서는 남유럽 국가들이나 서유럽 일부국가(독일)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출산율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에는 남유럽 국가들과 서유럽의 독일 및 일본만이 한국보다 출산율이 다소 낮았을 뿐이다.

그러나 2001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은 동구국가들과 남유럽국가들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동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은 1990년대 하반 경제전환기 체제에서 급격히 낮아져, 우리나라보다 더 낮아졌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2년 1.17로 더 감소하여, 이태리나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2) 체코는 2001년 기준,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2002년 기준임.

〈표 6-3〉 한국과 일부 OECD국가의 합계출산율 비교, 1970~2003

(단위: 한국=100)

구분	동아시아		서유럽			남유럽		북유럽		동유럽		북미/오세아니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체코	폴란드	미국	호주
1970	100	47	55	45	54	53	64	42	55	42	49	55	63
1975	100	55	56	43	52	63	80	51	57	70	65	51	64
1980	100	62	69	55	67	58	78	59	61	74	81	65	67
1985	100	105	108	82	107	85	98	104	101	117	140	110	113
1990	100	97	112	91	115	84	86	134	121	119	128	131	120
1995	100	86	103	76	104	72	72	105	113	78	98	122	110
2000	100	96	128	93	112	84	84	105	126	78	91	140	119
2001	100	102	145	104	126	96	95	121	-	88	99	156	133
2002	100	113	161	120	141	108	107	141	-	-	-	172	150
2003	100	108	-	-	145	-	-	-	-	-	-	-	-

주: -는 최근 자료가 없는 경우임.

자료: UN, 2004.

2. OECD국가의 출산력 변동 특징

가. 출산율과 인구고령화

OECD국가들의 출산율 수준과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로 측정되는 인구고령화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1970년 한국의 노인인구비율은 3.1%에 불과하였으나, 다른 OECD 회원국들의 인구고령화 수준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표 6-4〉). 일본만 해도 1970년에 인구고령화 수준이 한국의 2000년 수준(약 7%)과 유사하였다. 서유럽국가(프랑스, 독일, 영국 등), 북유럽국가 및 동유럽국가(체코), 남유럽국가(이태리)에서 많은 국가들의 1970년 당시 노인인구비율은 10% 수준을 상회하였다. 나머지 국가들의 노인인구비율도 거의 10%에 접근하고 있었다. 이 당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4.5 수준으로 다른 OECD 회원국들이 인구대치수준 전후에 도달하여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과 회원국들간의 인구고령화 정도 차이는 어느 정도 가늠될 수준이었다.

〈표 6-4〉 일부 OECD 국가의 노인인구비율, 1970-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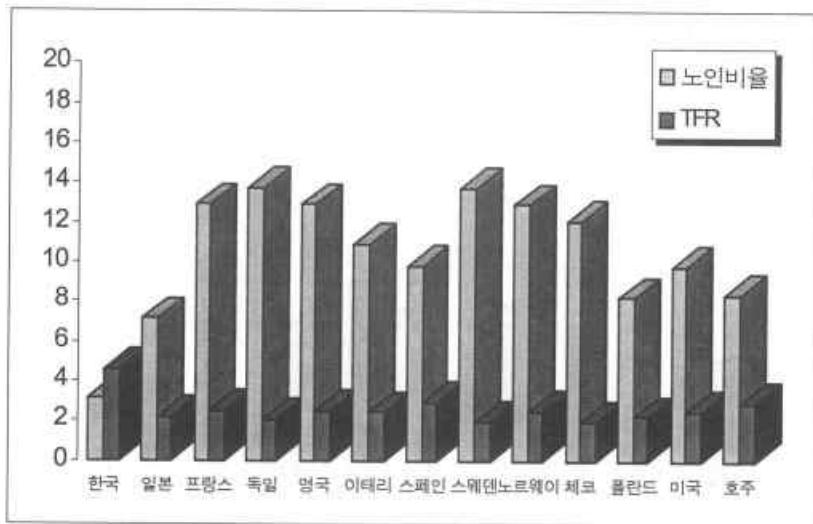
(단위: %)

구분	동아시아		서유럽			남유럽		북유럽		동유럽		북미/오세아니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체코	폴란드	미국	호주
1970	3.1	7.1	12.9	13.7	12.9	10.9	9.8	13.7	12.9	12.1	8.2	9.8	8.4
1975	3.4	7.9	13.5	14.8	14.0	12.0	10.0	15.1	13.7	12.9	9.5	10.5	8.7
1980	3.8	9.0	14.0	15.6	15.1	13.1	10.7	16.3	14.8	13.4	10.1	11.2	9.6
1985	4.3	10.3	12.9	14.6	15.1	12.7	12.0	17.9	15.7	11.6	9.4	11.7	10.1
1990	5.1	12.0	14.0	15.0	15.9	15.3	13.8	17.8	16.3	12.5	10.1	12.2	11.2
1995	5.9	14.6	15.1	15.5	16.0	16.6	15.3	17.5	15.9	13.2	11.1	12.3	11.9
2000	7.2	17.2	16.0	16.3	15.9	18.1	16.8	17.4	15.4	13.8	12.1	12.3	12.3
2005	9.1	19.7	16.3	18.6	15.9	19.6	17.2	17.7	15.1	14.2	12.9	12.3	12.8
2010	10.8	22.4	16.5	20.2	16.4	20.6	18.1	19.3	15.9	15.8	13.0	12.8	13.7
2015	12.8	26.0	18.5	20.8	17.8	22.3	19.2	21.4	18.0	18.6	14.8	14.2	15.5
2020	15.5	28.1	20.3	22.1	18.6	23.7	20.5	22.7	19.7	21.3	17.6	15.9	17.3
2025	19.7	29.2	22.0	23.8	19.6	25.5	22.8	23.8	21.6	22.9	20.3	17.8	19.1
2030	23.9	30.4	23.6	26.4	21.1	28.2	25.4	25.2	23.3	24.1	21.5	19.2	20.7
2035	27.9	31.9	24.9	28.6	22.4	31.2	28.3	26.5	25.1	25.3	22.1	19.8	21.8
2040	31.9	34.4	25.9	28.7	23.0	33.7	31.5	27.2	26.2	27.9	23.4	19.8	22.9
2045	34.7	35.9	26.1	28.2	23.1	34.7	34.1	27.2	26.2	30.9	25.7	19.8	23.3
2050	37.3	36.5	26.4	27.9	23.3	34.4	35.0	27.1	26.1	32.2	28.4	20.0	23.9

주: 2000년까지 자료는 추정치이며, 그 후 자료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2001; 통계청, 200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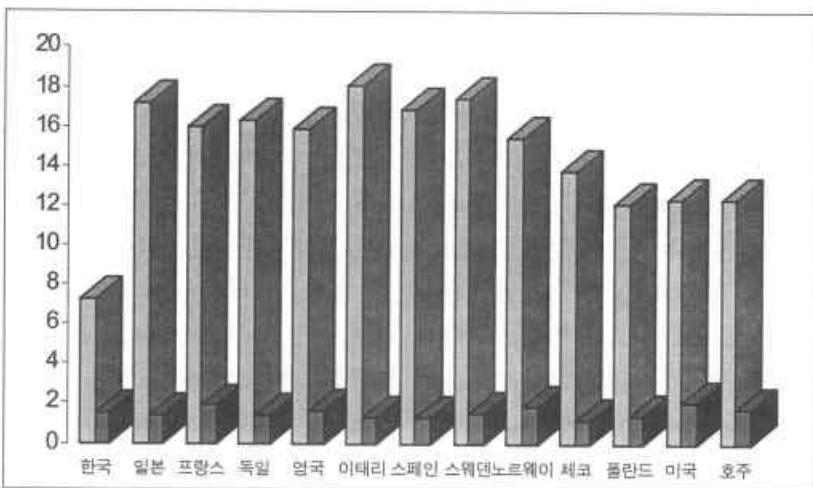
다른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 인구고령화 수준은 계속 높아졌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오래 전부터 저출산시대에 진입한 대부분 회원국들의 출산율은 완만한 속도로 감소하였다. 오히려 서유럽 국가 등 일부에서는 출산율 수준이 최근에 다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출산율 회복 및 이민의 영향으로 1990년대에 인구고령화 수준이 다소 낮아졌다. 스웨덴의 노인비율은 1990년 17.8%에서 2000년에 17.4%로 감소하였으며, 노르웨이의 경우 동 기간 16.3%에서 15.4%로 감소하였다. 서유럽 국가들 중 최근 출산율이 다소 회복세에 있는 프랑스와 영국의 인구고령화 추이는 다소 둔화되고 있다.

[그림 6-2] 일부 OECD국가의 노인인구비율과 합계출산율, 1970



자료: UN, 2004; 통계청, 200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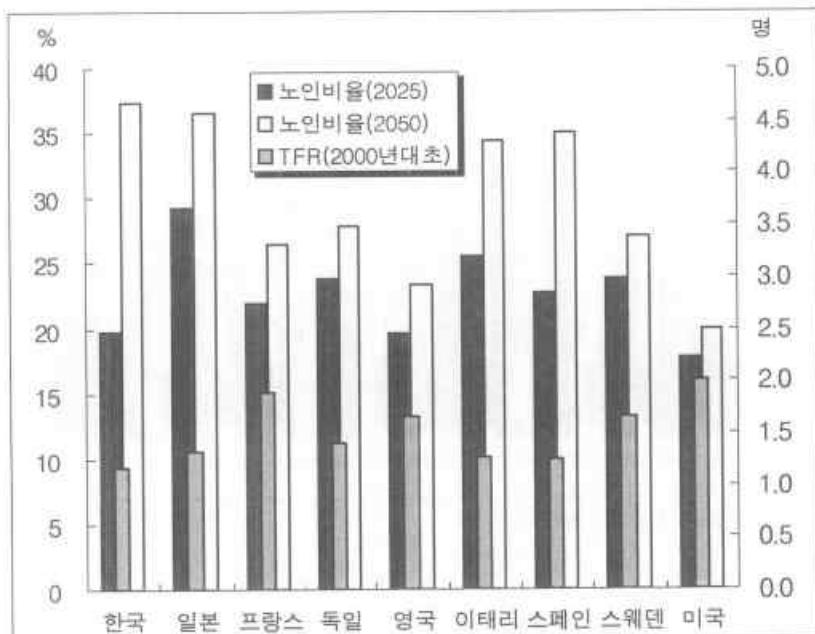
[그림 6-3] 일부 OECD국가의 노인인구비율과 합계출산율, 2000년대 초



주: 한국, 일본, 영국은 2003년, 노르웨이는 2000년, 체코 및 폴란드는 2001년, 나머지 국가들은 2002년임.

자료: UN, 2004; 통계청, 2004b.

[그림 6-4] 일부 OECD국가의 노인인구비율과 합계출산율



주: 합계출산율의 경우 한국, 일본, 영국은 2003년, 나머지 국가들은 2002년임.
자료: UN, 2004; 통계청, 2004b.

프랑스의 경우 노인비율은 1990년 14.0%에서 2000년 16.0%로 다소 높아졌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1.59% 수준에 유지되고 있다. 반면, 출산율 수준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서유럽 국가 중 독일과 남유럽의 이태리 및 스페인,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의 인구고령화 수준은 보다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태리의 노인비율은 동기간에 15.3%에서 18.1%, 스페인의 경우에는 13.8%에서 16.8%로 증가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영향 등으로 인하여 노인비율이 1990년 12.0%에서 2000년에 17.2%로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노인비율은 2000년에 7%대에 진입하여, 고령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증가비율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2], [그림 6-3]).

그러나 향후 인구고령화 수준을 전망해 보면([그림 6-4]), 다른 OECD 회원국들의 노인비율 상승폭에 비해 우리나라의 상승폭이 커 그 차이가 좁혀질 전망이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현재 출산율 수준($TFR=1.19$)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노인비율은 2000년 7%대에서 2025년에 20%대에 접근하여(19.7%), 미국, 영국 및 호주의 고령화 정도를 상회할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비율은 2030년에 23.9%로 추정되어, 영국과 미국 및 호주뿐만 아니라 프랑스, 노르웨이, 폴란드의 고령화 정도도 추월할 전망이다. 2040년부터는 일본을 제외한 그리고 2050년에는 전체 OECD 회원국들 중 인구고령화 수준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 출산력 차이의 사회문화적 배경 및 정책적 영향

OECD 국가들 대부분의 합계출산율은 장기적으로 인구대치수준 이하에서 지속되고 있는데, 주된 배경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임이 보급되고 인공임신중절이 합법화되면서 원치 않은 임신 및 출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은 자아실현을 위하여 생활패턴을 선택하는 등 가치관이 변동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혼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정책으로서 조정이 어려운 것으로 출산력 저하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요인들이 되고 있는 것이다.

OECD 국가들의 출산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다. 북유럽, 불어권 국가(프랑스, 벨기에 등) 및 영어권 국가(미국, 영국 등)의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독일어권 국가(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남부유럽(이태리, 스페인 등) 및 일본의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와 같은 출산력 차이는 인구학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및 정책적 요인에 기인한다(Atoh, 2003).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만혼 및 만산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의 경우 동거, 혼외출산 비율이 높고 30대에서 캐치업(catch-up)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의 경우 만혼 및 만산 경향이 강한데다가 캐치업현상이 약하고, 동거, 혼외출산현상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

〈표 6-5〉 일부 OECD 국가의 혼외출산율, 1995-1997

(단위: 명, %)

국가	합계출산율	혼외출산율	국가	합계출산율	혼외출산율
동유럽국가			남유럽국가		
불가리아	1.09	30	이탈리아	1.22	8
체코	1.17	18	스페인	1.15	13
헝가리	1.38	25	그리스	1.32	3
폴란드	1.51	11	포르투갈	1.46	20
루마니아	1.32	22	북유럽국가		
러시아	1.28	25	덴마크	1.75	46
유고	1.80	18	핀란드	1.74	37
스리랑카	1.47	14	아이슬란드	2.04	65
우크라이나	1.40	14	노르웨이	1.86	49
구동독	0.95	44	스웨덴	1.53	54
서유럽국가			비유럽국가		
오스트리아	1.36	29	캐나다	1.64	30
벨기에	1.59	18	미국	2.06	32
프랑스	1.71	39	호주	1.77	23
구서독	1.39	14	뉴질랜드	2.04	41
아일랜드	1.92	27	일본	1.44	1
룩셈부르크	1.71	17			
네덜란드	1.55	19			
스위스	1.48	8			
영국	1.71	37			

자료: Council of Europe, 1998; Lantoine and Monnier, 1998; Demographic Yearbook, each year.

혼외출산율의 경우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유럽국가인 프랑스(혼외출산율 39%), 영국(37%), 북유럽국가인 스웨덴(54%), 노르웨이(49%), 비유럽국가로서 미국(32%), 호주(23%) 등에서 혼외출산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6-5〉). 반면,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유럽국가인 체코(18%), 서유럽국가인 서독(14%), 남유럽국가인 이탈리아(8%), 스페인(13%) 그리고 비유럽국가로서 일본(1%)에서 혼외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합계출산율과 혼외출산율은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혼외출산율은 국가나 지역마다 혼인제도와 혼인형태가 다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유교주의적 사상이 강한 국가에서 혼외출산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아 혼외출산 발생이 억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교적 윤리성이 강조되고 있는 남유럽 등의 국가들의 경우에도 혼외출산은 사회적으로 억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서구 국가들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사실혼(동거)간의 구별이 어려운데다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시하지 않으므로, 혼외출산 역시 법률혼에 의한 출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혼인과 출산과 관련한 제도적 및 문화적 차이는 초혼연령이 증가할수록 출산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혼인연령 상승으로 사회-생리적 차이(socio-bio gap)가 증가하고 그로 인하여 법률혼에 의한 출산을 혼외출산이 대체할 것이나, 혼외출산 자체가 사회적으로 억제되는 경우 전체 출산율은 결국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문화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은 여성의 일과 자녀양육을 포함한 가족생활의 양립에 관련된 것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는 동시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어, 여성의 일과 가사간의 양립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즉, 국가 간 및 지역간 출산력 차이는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의 일과 가사간의 양립이 어느 정도 어려운가와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얼마나 노력하고 효과가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여성의 일과 자녀양육간의 양립문제를 소득보상, 육아휴직제도, 공공보육서비스의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가사 및 육아에의 참여를 제도화하였다(Papa Quota 제도). 북유럽 국가 중 스웨덴 사례는 이후 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프랑스어권 국가들도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노력하고 있으며, 동시에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를 출산장려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육아휴직제도를 북유럽형으로 강화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가정과 고용 및 사회전반에서 남녀평등 정도도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프랑스 사례는 이후 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그 결과 북유럽 국가들이나 프랑스어권 국가들은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출산율의 양립을 실현하고 있다.

영어권 국가들의 경우 양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정책이 미흡하며,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약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출산율이 동시에 실현되고 있는 이유는 파트타임(part-time)노동의 보급, 재고용의 용이성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직장의 융통성 등을 제고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민 대다수가 “자녀양육 비용이 낮고 생활이 용이한 사회”라는 의식이 강한 것도 출산율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서 남녀평등이 다른 국가보다 높았던 것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과거 유럽인이 정착하고 있는 영어권 국가의 경우 다문화국가로 이민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독일어권 국가에서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증가하나 자녀들을 어머니가 돌보아야만 한다는 사회규범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규범은 가족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 즉,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있으나, 육아휴직은 여성(어머니)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0~3세 아동의 보육서비스는 극도로 부족한 설정이다. 또한, 사회적 규범의 영향으로 동거 및 혼외출산의 발생정도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독일어권 국가들의 출산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 남녀간 역할분할이라는 전통적인 가족관이 강하게 지배하여, 여성의 사회진출과 가사간의 양립가능성이 낮다. 게다가 일과 가사간의 양립문제에 대한 가족정책적 대응이 미약하며,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미약하다. 이외에도 청년실업, 임대주택 부족에 의한 청년의 자립 곤란도 출산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이들 국가의 출산율은 아주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스페인 사례는 이후 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한 연구 결과, 이탈리아인의 약 80%는 결혼이 유효한 제도라고 믿고 있다(Palomba et al., 1997). 10명중 6명은 자녀들을 결혼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연령층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학력수준이 높아, 자녀 출산시기를 늦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25세 미만 청년층의 실업률은 30%로 성인보다 아주 높다. 그로 인해 청년층은 일을 찾는데 보다 많은 시간을 소요하며, 동시에 경제적으로 독립능력이 없어 결국 결혼을 연장하고 가족형성 시기가 늦추고 있다.

청년층이 직업을 가지는 경우에도 임시직 및 파트타임 고용이 많다. 따라서 이들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시기가 정규직이 될 때까지 지연되고, 그 만큼 결혼과 가족형성시기가 연기되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과 경제적 독립능력은 주택마련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의 집에 동거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여 결혼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청년기업가 및 자금대부 등에 관한 입법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Palomba et al., 1997)

동아시아국가로서 일본과 한국은 유교주의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인하여 남부유럽과 마찬가지로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가족규범이 강하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는 남성지배적인 엄격한 성역할 분담, 부부관계를 초월하는 “효 의무” 등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가치관의 영향으로 가정에서 가사에 대한 남편의 분담역할이 약하고, 직장에서는 혼인, 출산 및 양육에 기인한 차별이 관행화되어 왔다. 즉, 가사와 자녀양육간의 양립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개인주의와 자아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사상이 증가하고 있으나, 동거와 혼외출산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인 문제로 높은 청년층 실업은 혼인연기 및 출산지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여성의 일과 자녀양육간의 양립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으로 인하여 이들 국가의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일본 사례는 이후 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요컨대, 남성이 가계를 책임져 온 사회에서는 남녀평등 구현이 저출산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즉, 여성이 교육과 고용을 통해 주요 보상(rewards)을 받는다면 여성은 많은 자녀수를 둘으로써 그러한 보상을 축소 당하지 않을 것으로 이는 출산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제로 여성의 노동력 참가율이 높고 일과 양육을 동시에 수행하기에 용이성을 제공하는 국가에서는 비교적 높은 출산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 주요 국가 사례

여기에서는 OECD 국가들 중 출산수준이나 지역적 및 문화적 특성이 서로 다른 4개 국가를 선정하여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사례들을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로는 프랑스(서유럽), 스웨덴(북유럽), 스페인(남유럽) 및 일본(동아시아)을 선정하였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은 유럽국가들 사이에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되었다. 스페인과 일본은 사회문화적 및 정책적 이유로 인하여 최근까지 출산율이 아주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되었다.

이들 국가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은 <표 6-6>에 제시되었다. 가장 최근 기준으로 합계출산율 수준은 프랑스(2002년 1.88)와 스웨덴(2002년 1.65)에서 비교적 높은 반면, 스페인(2002년 1.25)과 일본(2002년 1.29)은 상대적으로 낮다. 혼외출산율은 프랑스 42.6%, 스웨덴 55.5%로 높은 반면, 스페인(17.0)과 일본(1.0%)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스웨덴의 경우 혼인연령은 30.1세인 반면, 첫째아 출산연령은 27.9세로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프랑스와 스페인 및 일본의 경우에는 첫째아 출산연령이 혼인연령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혼인연령은 27.8세와 27.7세로 거의 차이가 없으며, 첫째아 출산연령도 28.7세와 29세로 대동소이하였다. 일본의 혼인연령(27.2세)과 첫째아 출산연령은 유럽국가들과 거의 유사하였다. 이혼율은 스웨덴 2.4%, 일본 2.3%, 프랑스 2.0%, 스페인 1.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석대상 유럽국가들의 평균 수명(남자 75-77세, 여자 82-83세)과 인구고령화 수준(16-17%) 및 생산가능인구 비중(65% 전후)은 국가간 큰 차이가 없다. 일본의 평균수명은 남자 78.1세, 여자 84.9세로 가장 높았으며, 그로 인해 인구고령화 비율도 1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특성 중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스웨덴 73.4%, 프랑스 62.3%, 스페인 51.7%, 일본 48.2% 순으로 높았다. 일본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실업률은 스페인에서 10.6%로 가장 높고, 프랑스 8.5%, 스웨덴 4.9%, 일본 3.3% 순으로 나타났다.

〈표 6-6〉 사례분석대상 국가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

구 분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일 본
총인구(만명)	5,904('01)	888('01)	4012('01)	12,729('01)
TFR(여성1명 당 출생아수)	1.88('02)	1.65('02)	1.25('02)	1.29('03)
혼외출산비율(%)	42.6('00)	55.5('01)	17.0('00)	1.0('98)
첫째아출산연령(세)	28.7('99)	27.9('00)	29.0('99)	28.0('01)
혼인연령(세)	27.8('01)	30.1('01)	27.7('00)	27.2('01)
이혼율(%)	2.0('99)	2.4('01)	1.0('00)	2.3('00)
평균수명(세)				
남자	75.5('01)	77.5('01)	75.6('01)	78.1('01)
여자	83.0('01)	82.1('01)	82.9('01)	84.9('01)
65세이상 노인(%)	16.1('01)	17.2('01)	16.9('01)	18.0('01)
생산가능인구(%)	65.1('01)	64.4('01)	68.4('01)	67.7('01)
실업률(%)	8.5('01)	4.9('01)	10.6('01)	3.3('01)
여성경제활동참가율(%)	62.3('01)	73.4('01)	51.7('01)	48.2('01)
여성대출비율(남자100명당)	124.3('00)	140.1('00)	134.3('01)	-

주: ()는 연도임.

자료: ENDB, 2002; CIA, 2003;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03.

일본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으며, 실업률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여성 중 상당 비중은 전업주부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스페인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실업률은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스페인에서는 여성의 취업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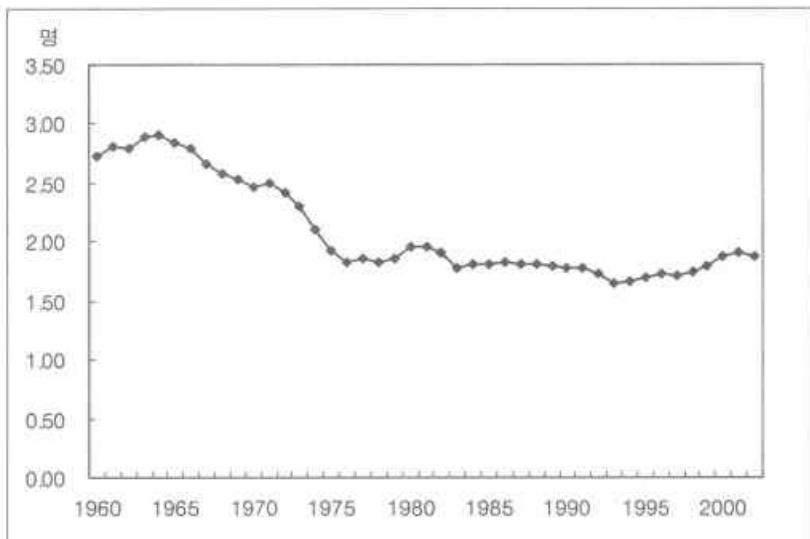
대출 이상 고학력 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3개국에서 남자보다 높았다. 혼외출산율이나 이혼율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감안하면, 스페인이 가장 보수적인 국가로 간주될 수 있겠다.

가. 프랑스 사례

프랑스는 1830년에 유럽국가로는 처음으로 출산력 저하를 경험하였다. 18세기 중엽부터 출산력과 사망력이 동시에 감소하여 고출산·저사망에 의해 인구가 급증하는 인구전환기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에 프랑스 인구는 3천만명에서 4천만명이 증가하는데 그쳐, 유럽 전체인구의 증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20세기 초에는 합계출산율이 2.0 수준으로 낮아져 이른바 “인구감소공포(fear of population decline)”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아래 프랑스에도 베이비붐 현상이 나타나 프랑스 인구는 유럽 전체인구에 비해 젊어지게 되었다. 합계출산율은 1960년 2.73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1974년에 처음으로 인구대치수준인 2.11에 도달하였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점진적으로 낮아져, 1993년에 1.65까지 낮아졌다. 이를 최저점으로 합계출산율은 다시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 1.90 수준에 근접하였다([그림 6-5]).

[그림 6-5] 프랑스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60-2002



자료: 통계청, 2004b.

사실 프랑스에는 출산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다 (Toulemon, 1998). 여성의 교육수준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참가율(25-49세)이 증가하여 유럽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여성의 취업률은 1962년 41.5%에서 2001년 62.3%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5-29세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여성 중 약 80%가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1960년 이래 1명 또는 2명의 자녀를 둔 부인의 취업이 계속 증가한 반면, 이들 여성 중 직업을 중단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였다(Desplanques, 1987). 전체 실업률은 1970년 2.5%에서 1980년 6.3%, 2001년 8.5%로 높아졌다. 여성들이 서비스부문에 주로 고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남자보다 더 높다. 인공임신중절은 1974년에 합법화되었으며, 특히 1981년부터는 보상에 제공되었다.²³⁾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EU 회원국 중 아일랜드 다음으로 가장 높은 출산력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이유들은 여러 현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서로 다른 두 현상이 결합된 결과로서 볼 수 있다. 두 현상은 출산연기, 불임여성 증가, 한 자녀 가족 증가 등으로 인하여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과 두 자녀 사회규범이 사라져 세 자녀 여성의 비율이 증가한 현상이다.

둘째, 새로운 가족생활형태가 증가한 결과이다. 1970년대에 가족생활형태로 법률적 결혼이 아닌 동거현상이 나타났으나, 이는 당시 일시적인 현상으로 대부분 결혼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동거가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동거가 보편화되어 전체 부부 중 10%(45세 이하 부부의 20%)을 차지하였으며,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출생아 중 동거부부로부터 태어난 출생아의 비율은 1970년 7%, 1980년 11%, 1997년 39%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²⁴⁾ 모자가정은 모 기준으로 1968년 720천명에서 1990년 1.1백만명 그리고 2000년 1.4백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 수준은 25세 미만 자녀를 가진 가족(모)의 16%로 높았다. 프랑스에서 인공임신중절 효과는

23) 인공임신중절 자유화를 법제화한 이후에도 인공임신중절율의 급격한 증가는 없었다.

24) 새로운 사회현상으로서 동거부부가 출생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1986년과 1994년 공히 0-18세 자녀의 85%로 높게 나타났다.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혼과 동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외출산 및 만산이 증가하여 무자녀 비율이 낮은 수준에서 머무를 수 있었다.

셋째, 프랑스 여성의 출산연령이 2002년 29.4세로 1998-2001년 29.3세에 비해 다소 증가한데 그쳤다. 즉, 혼인연령과 출산연령이 안정화되면서 출산연기가 더 길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프랑스에서 출산력 감소는 오래 전에 발생한 것으로 정책적 관심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으로서 이민을 장려하여 왔기 때문이다. 최근 인구증가의 80%는 자연증가이며, 20%는 이민에 의한 것이다(Tapinos, 2000).²⁵⁾

마지막으로 유럽의 대부분 국가와 달리 프랑스가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인구정책(출산장려정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인구감소에 대한 공포에서 국가주의적 의식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1986년에 인구감소대처민족연맹(Alliance Nationale contre Depopulation)이 설립되어 출생아 증가를 위한 정치적 지지를 요구하였다. 이 당시 가족을 강화시키기 위한 가족제도동기(familial institutional motives)가 마련되었다. 인구관련 국가주의적 운동과 가족강화운동은 프랑스에서 가족정책의 발달을 가져왔다. 1913년에 처음으로 모성휴가가, 그리고 1919년에는 고용주에 의한 임금보상책으로 가족수당이 각각 도입되었다. 1929년에 “가족권리”가 선언되고, 1939년에는 가족법(Code de la Famille)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가족법에는 가족수당과 첫째아에 대한 보상, 가족형성을 위한 주택 및 육아 지원 등의 규정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가족법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사회정책 발달에 중요한 특징이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광범위한 가족정책들이 도입되었다(McIntosh, 1983: 124).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여러 법들이 가족정책을 규정하였다. 1950년 이래 최근까지 가족정책의 변천 과정은 <표 6-7>에 제시하였다.

25) 프랑스 거주 혼인여성의 출산률은 1999년 4.07, 이태리 여성의 경우 1.41로 가장 작다. 당시 전체 합계출산율은 1.79로 외국인 출산이 미치는 영향은 0.07명 증가이다.

〈표 6-7〉 프랑스 가족정책의 변천, 1967-2004

연도	정책 내용
1967	- 폐임자유판매금지법 폐지
1975	- 인공임신중절 자유화
1977	- 재고용 보증 부모무급휴직(24개월) 제도 통과
1978	- 특수집단을 위한 5가지 급여 통폐합 및 3명의 자녀를 가지거나 3세 미만 한 자녀를 가진 저소득 가족 모두에 유용 - 한 부모 소득가족에 대한 추가 지원
1979-80	- 3인 가족기준 월 최소 533유로로 가족수당 증액 - 1980년 추가 정책수단: 가족수당의 구매력 연간 2배 증가, 셋째아 이상 출생에 대한 원조 2배 증가
1980	- 대가족에 보다 넓은 공간을 가진 주거 배정의 우선순위 부여
1985	- 3자녀 여성을 위한 정액률 급여인 육아휴직수당(APE: Allocation Parentale d'Education) 도입
1987	- 3세 미만 아동의 부모휴직기간 연장
1994	- 근로시간 단축 또는 아동양육을 위해 직업경력 중단을 원하는 경우 두 자녀까지 APE 확대
1996	- 신생아수당(APJE: Allocation Parentale pour Jeunes Enfants) 지급을 위한 자산소득조사 도입
1997-98	- 사회보장 상한선까지 지불될 수 있도록 모성급여 제한 - 1998년 대부분 사회법령을 기혼에서 미혼까지 확대 적용
1999	- 일과 가산간의 균형화를 위해 근로시간규칙 제조정(연간 1,600시간, 주당 35시간)
2001	- 가족소득보충급여를 2자녀 이상 가정에 제공
2004	- 출산관련 제 수당을 하나의 수당으로 통폐합(PAJE: Prestarion d'Accueil du Jeune Enfant)

자료: Grant et al., 2004.

프랑스 가족정책의 주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하는 여성의 증가함에 따라 일과 가족생활간의 양립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는 모든 근로여성들에게 보편적으로 선택을 제공하고 있다. 출산력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여성들을 노동시장에서 가정으로 되돌리기보다 이들 여성을 위해 보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보육서비스가 확충되었으며, 2세 이하 아동의 25% 그리고 3-5세 아동의 95%가 공공보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가족수당과 육아

휴직수당은 모성에 대한 대가로서보다 벌어들이지 못한 임금의 대가로 지급되었다.

둘째, 프랑스 가족정책의 중점은 수평적(horizontal) 분배에서 수직적 분배로 전환되었다. 수평적 분배정책이 자녀수 또는 출산순위나 소득수준 등과 관계없이 정책수단들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반면, 수직적 재분배정책은 특정 자녀수나 출산순위 및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수혜범위를 한정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대가족 달성을 위한 정책들을 고수하며, 최근에는 셋째아정책(third policy)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아 양육시 여성 이 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낮고 더 넓은 집에 거주하여야 하는 등 비용이 더 소요된다. 따라서 수직적 재분배정책으로 셋째아 출산관련 급여를 증가시키고 휴직기간을 연장해주는 반면,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첫째아에 대한 수당지급을 중단하였다.²⁶⁾ 산전 및 모성 수당은 모든 출생아에 지급되었으나, 질병 및 빈곤가족 예방 차원에서 3~6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새로운 가족수당제도는 특정한 계층을 보다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그러한 계층들로는 취학자녀를 둔 가족, 미혼모, 사별 남녀, 노인, 장애인 등이다. 가족 중 1명만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은 셋째아(현재 둘째아 포함) 출산 후 취업을 중지한 여성에게 지급하는 일시부모수당(temporary parental allowance)으로 대체되었다.

셋째, 출산관련 혜택은 다른 공공제도에서도 적용하고 있다. 조세제도에서는 일종의 가중치를 성인과 자녀수에 대한 소득의 비율로서 가족지수(family ratio)에 근거하여 부여하였다. 부부는 1.0, 각 자녀는 0.5의 가중치가 부과된다. 특히, 1981년에는 3번째 자녀 그리고 1986년에는 4번째 자녀 이상에게도 0.5의 가중치가 각각 부과되었다. 연금제도에서는 37.5년 고용이 완전수령조건이나, 여성의 경우에는 1자녀마다 2년의 고용기간을 그리고 3년 이상 자녀를 양육한 부부의 경우에 부부 모두 연금기간에 합산하여 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다(Toulemon, 1998).

26) 1990년대 후반 총 수당은 GNP의 4.3% 그리고 계 사회수당의 15%를 차지하고 있다(주택 및 세금관련 혜택을 제외하면 2.4%).

〈표 6-8〉 프랑스 가족정책

구 분	내 용
모성휴가/ 육아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성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근로여성 대상, 유급, 직장보존, 의무화(강제적) - 둘째아까지 16주(산전 6주 포함), 셋째아 26주(산전 8주), 쌍둥이 34주(산전휴가 12주), 세쌍둥이 이상 다태아 42주(산전 24주) ○ 육아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성휴가 말미에 모(또는 부)는 아동이 3세에 이를때까지 휴직 가능 - 휴직 후 이전의 또는 유사한 일에 복귀 가능 - 3세미만 자녀 양육 위해 일을 전적(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휴직수당 제공
자녀급여/ 가족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18세미만 자녀 2명 이상 가족 - 급여: 2자녀시 매월 80유로, 3자녀시 193유로(1자녀마다 103유로 추가 지급)(1999년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자녀 부부기준 아동급여는 1992년 남성평균임금의 약 9.5% 수준(대부분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음) ○ 수입자산조사에 의거한 추가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 이상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을 위한 가족보조 - 한 부모 수당 - 입양수당(21개월 지급) - 부모교육수당 - 특별교육수당(아동 장애수준에 따라 78-873유로) - 6-18세 자녀를 위한 연간학교수당 - 주택수당(임차료와 가족상황 고려)
모성급여 (maternity benef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수입조사에 의거 임신 4개월부터 3세까지 지급 ○ 모성급여(모성휴가 중 지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수준까지 순봉급액과 동일 - 보험가입 모에 첫째아와 둘째아를 위해 16주까지 수입의 80% 지급 - 셋째아 이상 26주, 다태아 46주까지 지급
보육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모든 아동(부모가 집에 있는 경우 포함)은 온종일보육센터나 가족보육 및 유치원에 위탁 ▶ 급여: 저소득층은 무료, 고소득층은 소득의 10-15% 범위에서 지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시설이나 집에서 보육사를 고용하는 경우 3자녀 미만 가족에게도 비용부담을 위해 수당 지불

마지막으로, 최근 자산소득조사에 기초한 급여가 증가하고 있다. 자산소득조사에 기초한 수당제도는 근로여성보다 부모 중 한 사람만이 소득이 있는 가정을 위한 것이다. 미혼모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아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 프랑스 가족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6-8>에 제시하였다.

프랑스는 2004년 제 수당들을 대체할 목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즉, 제 수당들을 하나의 수당(PAJE: Prestarion d'Accueil du Jeune Enfant)으로 통합하자 하며, 이는 다음 4가지로 구성된다(EOSS, 2003). 1) 아동 출산전 800유로 출산보너스, 2) 고정율 소득자산조사된 수당(최대 4,120유로를 아동이 3세에 이를 때까지 분배 지급), 3) 아동을 보모나 탁아소에 맡기고,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부모들을 위한 보조(소득과 보육형태에 따라 차별), 4) 아동양육을 위해 직업을 포기하는 부모들을 위한 보조(부모휴직수당 매월 340유로) 등이다. 이러한 수당은 2자녀를 가진 경우 3세까지 지급하며, 지급조건은 지난 4년 동안 적어도 2년 이상 직업활동을 했어야 한다. 이 수당은 첫째아에도 지급될 수 있으나, 기간은 모성휴직후 6개월이며 지난 2년 동안 일한 경우로 한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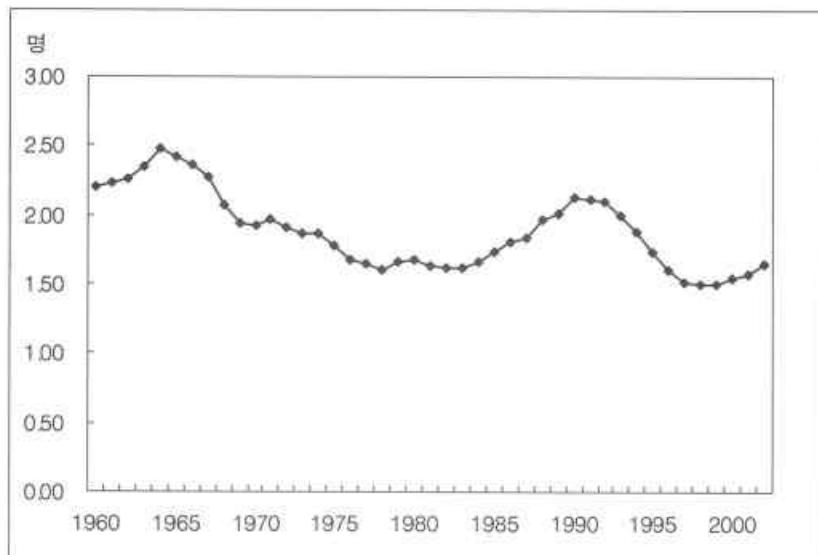
프랑스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는 소수의 연구들에서만 이루어 졌을 뿐이다. 예를 들어, Calot와 Hecht는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에 프랑스 출산율의 약 10%를 출산장려 가족정책의 효과로 보고 있다. Chesnais는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상관분석 결과로서 가족정책이 출산력 수준을 증가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한다. Kaufmann에 의하면, 프랑스는 1830-1950년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력을 보이고 있으나, 포괄적인 가족정책 후 출산율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Letablier도 프랑스의 가족정책이 자녀와 가족생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가족정책은 아동양육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지불하기보다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을 지원하는 목표로 변경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출산율이 수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하였다고 한다(Grant et al., 2004).

나. 스웨덴 사례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968년 처음으로 인구대치수준인 2.07에 도달하였다. 합계출산율은 1978년 1.60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회복하여 1990년 2.13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다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1998-1999년 1.50까지 낮아졌다. 최근에는 다시 회복세를 보여 2002년 1.65로 상승하였다([그림 6-6]).

스웨덴에서 출산력 감소는 경제위기와 시기가 서로 일치하고 있다. 즉, 1930년대, 1970년대 및 1990년대 경제위기는 출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스웨덴에서 여성의 수입이 맞벌이 가계의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가족행위는 거시적 경제조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거나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들은 다른 집단보다 저출산 경향이 강하다. 1990년대 저출산은 부분적으로 그러한 여성들이 증가한 사실에 기인한다(Grant et al., 2004).

[그림 6-6] 스웨덴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60-2002



자료: 통계청, 2004b.

이에 대해, Andersson(2000)은 스웨덴의 출산력은 “pro-cyclical” 특징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여성의 수입 수준이 자녀출산과 정적인 관계를 갖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실업은 가족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한다. 스웨덴 통계청에서도 출산력 변동이 취업과 경제적 조건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된 이유로는 육아휴직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수준이 부모의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경우 경제적 조건의 향상은 출산력을 다시 증가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Bernhardt, 2000). 한편, Jonsson(2003: 64)은 스웨덴 출산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로 노동시장에서 모에 대한 차별, 일과 가족생활간의 양립 가능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요인과 관련하여, 과거부터 스웨덴에서 실시되어 온 가족정책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과거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스칸디나비안 모델(Scandinavian model)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복지를 책임지는 것이다(UN/ECE, 2002). 현대에 들어 벨기에, 오스트리아, 프랑스 및 독일의 사회정책은 가족을 수당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설정하고 있으나, 스웨덴은 혼외 아동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들 아동을 직접적인 수혜자로 설정하고 있다(Kaufmann, 2002). 전통적으로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양 부모 모두에게 아동양육의 책임을 부과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성 정책(gender policy)의 특징이 강하며, 생식보건정책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정책수단들로는 1938년 이래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과 피임방법을, 그리고 1975년 이래 임신 12주 이내 여성들을 위해 인공임신중절 무료시술을 제공하여 왔다.

스웨덴 가족정책은 고용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일과 자녀양육 간의 양립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책모형으로 생업 가족모형(breadwinner family model)은 1970년대에 맞벌이가족모형(dual-earner family model)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의거하여 남녀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가족생활과 노동시장에서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Jonsson, 2003). 이를 위한 정책수단들로는 출산과 아동질병과 관련한 유급육아휴직(paid parental leave)과 공공보육보조가 있다. 현대 스웨덴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는 3가지 주요 특징 즉, 개인세(individual taxation, 1971), 육아휴직(1974) 및 공공보육확대는 1970년대에 형성되었다. 1980

년대에는 육아휴직보험(parental leave insurance)의 기간과 재정적 보상이 개선되었으며, 공공보육에 대한 보조도 확대되었다.

육아휴직제도는 아동복지 향상, 여성의 독립성 제고, 가족생활 및 아동보호에의 남성 참여 증대에 그 목적이 있다(Jonsson, 2003). 보육정책은 여성의 일과 양육간의 양립을 지원하고, 동시에 아동의 발달 및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OECD, 2001). 정부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공공보육시설들을 확충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아동보육은 스웨덴 복지의 주요 특징이 되었다. 실제 자녀를 가진 모의 약 2/3가 집 밖에서 노동을 하며, 이들 대부분은 아동을 공공보육에 위탁시키고 있다(Bernhardt, 2003). 이외 정책으로 부모가 출산하거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부여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수혜가 보편적인 권리로 되고 있다. 일과 자녀양육 간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과 별개로 일반적인 아동수당제도도 사회정책의 주요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스웨덴은 경제위기를 겪었으며, 그 여파로 특히 젊은 여성들의 취업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감소로 인하여 사회보장과 가족지원의 제공이 감소하고, 그 수혜범위가 축소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은 공공보육시설 운영비용의 축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었다. 이에 가족정책수단들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해졌으며, 그 일환으로 1990년대 중반 처음으로 자녀급여가 약 20% 축소되었다.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족을 위한 보조급여도 1996년에 폐지되었다.

현재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덜 관대해졌으나, 아동 및 가족에 대한 급여와 서비스는 유지되어 왔다. 아동급여는 2001년에 950크라운으로 회복되었으며, 다자녀 가족을 위한 보조급여수준도 다시 높아졌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을 위한 경제지원정책은 재정상태의 호전으로 가능해졌다. 스웨덴 가족정책의 주요 내용은 <표 6-9>에 정리, 제시하였다.

스웨덴의 출산률은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UN/ECE(2002)에 의하면, 희망자녀수와 실제자녀수간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 출산완료여성(38-43세)은 8.7%에 불과하였다(스페인의 경우 18%).²⁷⁾

〈표 6-9〉 스웨덴 가족정책

구 분	내 용
아동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자녀양육간의 양립과 별개 정책으로 실시(16세 이하 모든 아동에 지급하는 보편주의 체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2년에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 특별급여 계급(proportional model)(셋째아 50%, 넷째아 100%, 다섯째아 150% 추가 지급) - 2001년에 모든 아동에 대해 월 약 85유로를 모에 지급 * 한부모가족의 아동을 위해 혼인상태와 상관없이 비보호부모의 지불 원칙(지불능력없는 경우 정부가 쇄소)
보성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9년 도입, 1955년 유급화 ○ 현 정책은 1974년 체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와 모 모두의 권리로 정착 - 휴직기간은 초기 6개월에서 수차례 연장 후 1990년대에 수입과 연동하여 유급 390일+추가적으로 무급 90일(정액제 보험급부, 직장 보존).
육아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직기간은 회망에 따라 부와 모간 분리 가능 ○ 1985년 "Speed premium" 도입 - 30일 이내 다른 자녀가 태어난 경우 두 자녀 출산시간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첫아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을 대체해 줌. ○ 1995년 아래 부성휴직기간(30일 daddy month)을 배타적 부여 ○ 2002년 부성휴직기간을 60일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하지 않은 부모들은 기간동안 정률제 지급(약 200유로) - 아동이 8세에 이르기까지 육아휴직기간의 탄력적 이용 가능
공공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년대까지 공공보육은 배우자가 없는 모 위주로 제공 ○ 1970년부터 가족정책 수단으로 공공보육시설 공급

스웨덴에서 출산율 회복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자녀출산 및 양육과 노동시장참여간의 양립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1990년까지 일과 자녀양육에 있어서 양성평등 증가는 출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Grant et al., 2004). 출산율 증가의 구조적인 장애요인(양성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부로 하여금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머물도록 하는 교육적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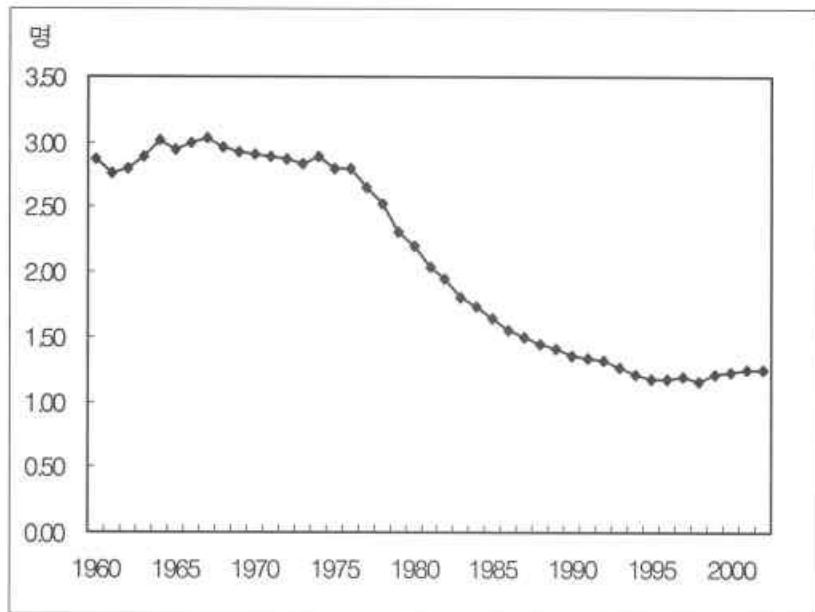
27) 스웨덴의 사회정책들이 미치는 인구학적 영향은 출생간격을 통해 나타났다. 완결 코호트출산율은 2명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Calot, 1990). 그리고 영구적인 무자녀 가족이 증가하지 않았다(Hoem, 1990). 1985년에 도입된 육아휴직제 "speed premium"은 출생간격을 보다 단축시켰다(Andersson, 1999).

(Palomba et al., 1997). 육아휴직정책은 출산에 관한 개인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리고 보육제도도 1980년대에 출산율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Grant et al., 2004).

다. 스페인 사례

스페인은 다른 남부유럽 국가들(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과 마찬가지로 출산율 수준이 아주 낮다. 스페인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 거의 3.0수준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1년에는 인구대치수준에 도달하였다([그림 6-7]). 그 후에도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5-1998년에 1.2미만으로 낮아졌으며 특히, 1998년에는 1.5까지 낮아졌다. 2000년대에 들어서 출산율 수준은 다소 증가세에 있으나, 여전히 1.3미만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림 6-7] 스페인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60-2002



자료: 통계청, 2004b.

스페인의 민주주의는 1975년 프랑코 정권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 때 폐임이 법으로 금지되었으며, 여성들은 배우자로서 어머니로서 전통적인 역할을 유지하였다. 대가족제도가 우대되었으며, 이는 가족을 보호하고 인구를 증가시켰다. 스페인의 가족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은 이념적 및 정치적인 변동을 겪어왔다. 프랑코 정권 하에 가족정책은 강력하였으나, 이후 가족은 국가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으며,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돌보는데 활용되어야 한다는 이념으로 변경되었다. 스페인의 저출산은 출산율이 너무 높다는 국민의식과 프랑코 독재정권과 관련된 정책들을 반대한다는 이념적 이유가 강했기 때문이다(Cordon, 2000).

스페인 저출산은 국가체계에도 기인한다. 스페인은 중앙정부(nation), 지역(region) 및 지방(local)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세 지역단위마다 관심이 달라, 하나의 정책이 통일되게 실행되는 것이 어렵다. 이에 따라, 2003년 정부는 국가적 가족정책을 3년 사업으로 도입하여, 모든 지역에서 통일되게 실행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Grant et al., 2004).

1998년 이래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문제와 높은 이민율이 여론화되면서, 일과 가족생활간의 양립이 이슈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 빈곤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복지정책의 특징을 가진다. 연간 소득이 78,000유로 미만인 자녀양육가족은 사회보장으로부터 자녀 1명당 연간 300유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2003년 1/4분기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1,412유로)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800천명이 수혜를 받음으로써 연간 예산은 6억 유로에 이르렀다. 빈곤가정을 위하여 교육비와 세금을 완화시키는 정책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족규모가 증가하여 재정압박이 커짐에 따라, 아동연령을 기준으로 기간을 감소하고 있다(Grant et al., 2004).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라 일과 가족생활간의 양립을 위하여 모성휴가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수급조건으로 여성들은 자녀출산 전 5년 내에 적어도 180일간 일정한(등록된) 일에 종사했어야 한다. 급여수준은 여성의 봉급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모성휴기는 사회보장에 의해 지불되

나, 대부분 기업은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다. 모성휴가는 최대 16주로 무급이며, 부는 10주간 휴가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1/3만이 휴가를 가고 있다. 등록된 일을 가져야만 하며, 대부분 일들이 가족에 의해 소유되는 자영업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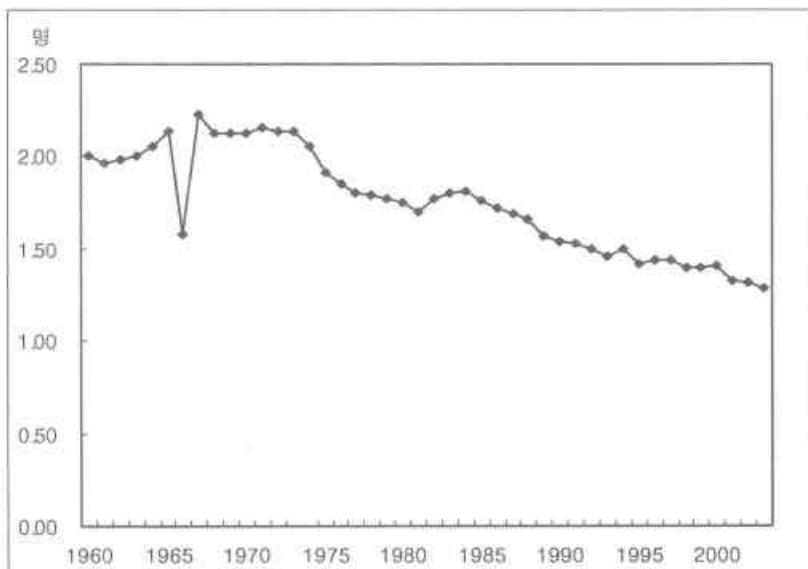
보육서비스는 교육보다 보육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근로시간보다 짧으며, 전일제 근로자에게 부적절하다. 새로운 법에 의거하여, 대체적으로 4세 이상 모든 아동들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때 모든 부모는 3세 이하 아동의 보육비용의 20%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나머지 비용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지불하고 있다. 스페인은 GDP의 2.1%만이 아동보육 등에 소요하여 유럽연합국가들(평균 8.5%) 중 가장 낮다(Vidal and Valls, 2002). 그러나 공공보육시설이 부족하여 사설보육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부모는 1일 5-6시간 보육에 월평균 150유로를 지급하고 있다(Grant et al., 2004). 결국 스페인에서의 저출산 경향은 세 가지 원인에 기인된다. 한 원인으로 낮은 혼외출산율, 혼인 및 출산 연기 등 인구학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 충분하지 않은 가족정책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남부유럽 국가들과 달리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라. 일본 사례

일본에서 저출산 문제는 1980년대에 이미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어떠한 정책적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그 주된 이유로는 첫째, 80년대 중반까지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출산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많은 인구학자들이 저출산의 주된 원인인 결혼연기현상이 일시적인 것으로 조만간 출산력이 회복될 것으로 낙관하였기 때문이다.²⁸⁾ 셋째, 정부의 출산조절 정책에 관한 여론의 반대이다. 이는 실제 일본에서 전쟁 전 및 전쟁 중 출산장려정책을 하였기 때문에 그 반감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Atoh, 1998).

28) 일본에서 유배우 부인의 출산율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성의 결혼 비율이 급속히 낮아지고 또한 결혼연령이 연기되어 전체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Kojima, 1998).

[그림 6-8] 일본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60-2002



자료: 통계청, 2004b.

그러나 일본의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였다. 여성을 위한 직업이 계속적으로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원하는 여성이 증가하여 25~29세 미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교육비가 증가하고 주간보호시설도 크게 부족해졌다. 과거 3세 이상 아동을 위한 보호시설만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모가 영유아를 돌보는 것이 좋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 4주, 출산 후 8주(기본급의 60% 지불)의 모성휴가제도가 있었으나, 장기적인 육아 휴직제도가 없었고, 아동수당도 서유럽 국가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었다.

합계출산율이 1989년 1.57로 낮아져 소위 '1.57쇼크'가 발생하자, 출산력 감소와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를 계기로 1990년 8월에는 관련 부처 및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설립되었다. 동 협의체는 1991년 1월 "아동의 건강한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출하였다. 권고안에는 고용, 주택, 환경, 지역 사회, 교육 및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아동양육에 더욱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전제 조건으로 정부가 개인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선택권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Kojima, 1998).

이 권고안에 의거하여 1991년에 육아휴직법(Child Care Leave Act)이 제정되어, 기존의 모성휴가에다가 출산 후 최대 1년까지 모 또는 부에게 육아휴직이 제공되었다. 동년에 아동수당법(Child Allowance Act)이 개정되어,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종전 2자녀 이상에서 1자녀까지로 확대되었다.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은 3세미만 그리고 지급액은 1~2번째 자녀의 경우 5천엔, 3번째 자녀의 경우 1만엔으로 정하였다.²⁹⁾

이어서 1994년에는 휴직기간 중 휴직당시 봉급의 25%를 지불하며, 휴직기간 동안 연금(Employee's Pension)과 건강보험(Health Insurance)의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었다. 동년 12월에는 아동양육 지원과 관련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대장성, 후생성, 노동성, 건설성의 합의에 따라 앤젤플랜(Angel Plan)과 골드플랜(Gold Plan)이 수립되었다.

엔젤플랜의 구체적인 목적은 i) 모가 취업 중 계속 아동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 ii) 가정에서의 아동양육 지원, iii) 아동양육에 유리하게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iv) 교육에 있어서 학업성취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고 감정발달과 사회화 교육에 강조, v) 부모의 아동양육 비용 감소 등이다. 엔젤플랜에 의거하여 동년에 “5개년(1995-1999) 긴급아동 보호프로그램(5 Year Emergent Childcare Program)”이 되었다. 그 내용은 도시지역에서 보육시설의 확충 및 관련서비스 확대, 아동보호시간 연장, 유치원에서 아동관련 서비스 확충,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 보호 확대, 가족지원센터(도시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베이비시터 네트워크) 설치 등이다. 이외 “양성평등사회를 위한 기본법(Basic Law for Gender Equal Society)”과 고용평등법(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이 제정되어, 공적 자원을 통한 양육지원시스템이 강화되었다. 한편, 많은 기업들은 1~2세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일부 회사에서는 3세 이상 아동에 대해 재정적인 보너스를 지급하였다 (Zoubanov, 2000).

29) 이외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서비스의 확대실시를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보육 소의 10시까지 연장운영, 심야와 휴일보육을 담당하는 기업보육시설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는 기업위탁형 보육서비스 실시 등이다.

1997년에는 보건후생성 산하 인구문제심의회(Advisory Council on Population Problems)에서 10개월 동안 인구문제를 논의한 후 “인구대처 수준이하 출산력 관련 문제대응방안(How to deal with issues related to below-replacement fertility)”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어서 1998년에는 후생성에서 위 보고서를 보강하여 보건복지백서(White Paper on Health and Welfare)를 발간하였다. 이들 두 보고서를 근거로 1998년에 “출산력 감소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고려하기 위한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 of Experts to Consider Policy Responses to Declining Fertility)”가 총리실에 설치되고, “출산력 감소관련 내각회의(Cabinet Minister's Conference on Declining Fertility)”가 구성되었다.

1999년에는 엔젤플랜에 의거하여 “출산력 감소관련 프로그램 증진을 위한 기본정책(Basic Policies to Promote Programs Related to Declining Fertility)”이 공포되었다. 이러한 신엔젤플랜에 의거하여 보육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녀양육지원 대상에 재가아동을 포함시키고, 방과후 아동보육을 지원하였다. 2000년에는 육아휴직기간 중 휴직당시 봉급의 40%(종전 25%)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의 연령도 3세에서 6세로 연장되었다 (Atoh, 2000).

한편, 1994년 12월에 엔젤플랜과 함께 노인을 위한 골드플랜(Gold Plan)이 마련되었다. 1996년 일본정부는 총 국민소득에 대한 세금 및 보장부담률(1995년 36.7%)을 향후 국가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50% 이하로 유지하는 정책이 채택되었다. 이를 위한 주요 개혁내용으로 사회보장지출과 국가 경제간의 조화 등이 강조되었다(Atoh, 1998).

인구고령화에 따라 사회보장지출이 증가하자, 정부는 재정적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해 1994년에 연금법을 개정하여 퇴직연금 수령자격을 종전 60세에서 남성은 2013년까지, 그리고 여성은 2018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을 정하였다. 1999년에는 소득관련연금이 남자 대상 2025년, 그리고 여자대상 2030년에 각각 시행되도록 하였다. 또한, 연금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용주·피고용인 비율을 매 5년 단위로 2025년까지 증가시킬 계획에 있다. 연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연금관리를 공공에서 사기업 또는 개인으로 전환을 피하고 있다. 연

금수령시기를 늦추거나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였을지라도 계속 일을 하여 연금에 기여토록 고용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고용을 연장하거나 일정 비율의 고령근로자를 유지하도록 보조하는 제도도 도입되었다(Zoubanov, 2000).

그러나 일본의 출산율은 최근에도 계속 감소하여 2003년에는 1.30미만(1.29)으로 낮아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2003년에 소자화대책기본법 및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을 제정하여 2005년에 시행 예정에 있다. Atoh(2004)는 일본의 계속적인 출산력 저하의 원인을 부분적으로 정책적 실패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일본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여성의 일과 자녀양육간의 양립을 제고하려는 정책이 비효과적이고 불충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가정 내 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사회보장혜택(세제감면, 육아수당, 육아휴직에 대한 소득보상 등)이 아주 낮았다는 점들이 지적되었다.³⁰⁾

일본의 저출산 경향은 무엇보다도 남부유럽과 마찬가지로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가족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Atoh, 2004). 일본의 가족제도에서는 유교주의적 가치를 지향하여 남성지배와 엄격한 성역할 분담, 부부관계를 초월하는 “효 의무” 등이 강조되어 왔다. 전후 일본의 헌법과 민법(가족법 포함)은 개인권리 존중, 남녀간 평등 및 교육기회의 양성평등을 원칙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고정적인 노동에 대한 양성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규범은 1970년대 이후에야 변화하기 시작했을 뿐이며, 아직까지도 서구국가들에 비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즉, 가사와 양육에 대한 남편 분담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녀가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규범도 변화하였으나, 여전히 서구사회보다 강하게 남아 있다. 최근 개인주의와 자아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가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혼외출산도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대신, 기생충적 미혼인구(parasite single)가 증가하고 있다.

30) 단적으로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음에도 1999년에는 단지 56%의 일하는 어머니들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Atoh, 2004).

4. 외국사례의 시사점

20세기 하반기에도 개발도상국에서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20세기 말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이슈는 장기적인 인구 유지에 부적합한 출산수준에 관한 것이다. 저출산 신드롬은 이미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발생하였으며, 이어서 1920년대와 1930년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한 바 있다. 특히, 남부와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들의 출산율 수준은 전에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낮아졌다. 최근에는 동아시아 국가로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OECD국가의 출산율은 지역별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대체적으로 동유럽과 남유럽국가들, 서유럽과 북유럽, 미주/오세아니아 순으로 낮다. OECD국가의 출산율 변동의 주된 특징으로는 과거에 출산율이 높은 수준에 있는 국가일수록 감소속도가 더 커, 최근의 수준이 더 낮아졌다는 점이다. 대부분 OECD 국가들에서 인구고령화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있다. 인구고령화는 최근의 출산율 수준보다 장기적인 변동 추이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최근 출산율이 회복하고 있는 서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의 인구고령화는 안정적이거나 다소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출산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서유럽 국가 중 독일, 남유럽의 이태리와 스페인,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일본의 인구고령화 수준은 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출산율이 아주 낮은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향후 인구고령화 속도는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아주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출산율 수준($TFR=1.19$)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우리나라 노인비율은 2025년에 미국, 영국 및 호주의 고령화 수준을 상회할 전망이다. 2030년에는 프랑스와 노르웨이의 수준을 상회하며, 2040년부터는 일본을 제외한, 그리고 2050년에는 전체 OECD 회원국들 중 인구고령화 수준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저출산 국가들은 인구의 규모 및 구조를 미래 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강구하여 왔다. 그러나 각국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정책적 대응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로서 출

산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모든 OECD 국가들에서 만혼 및 만산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들의 경우 동거 및 혼외출산 비율이 높고 30대에 캐치업(catch-up) 현상이 나타난 반면,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의 경우 캐치업 현상이 약하고, 동거 및 혼외출산 현상이 확산되지 않았다.

대부분 국가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일과 자녀양육(가사)간의 양립 문제가 출산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 또는 지역간 출산력 차이는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의 일과 자녀양육간의 양립의 어려운 정도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및 효과에 달려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일과 자녀양육간의 양립문제는 소득보상, 육아휴직제도, 공공보육서비스의 강화 등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특히, 제도적으로 부의 가사 및 육아 참여가 장려되고 있다. 프랑스어권 국가들도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높은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출산장려수단으로 이용하여 왔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출산율간의 양립이 실현되고 있다. 가정과 고용 및 사회전반에서 남녀평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큰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영어권 국가들의 경우 양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정책이 미흡하며,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약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출산율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들로는 파트타임(part-time) 노동의 보급, 재고용의 용이성 등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직장의 융통성 등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들 사회 전반에서 남녀평등이 높게 구현되고 있었던 것과 연관이 있다. 또한, 미국, 호주 등은 다문화국가로 이민을 통해 인구 규모와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독일어권 국가에서는 어머니가 자녀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규범이 강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가족정책에도 반영되었다. 즉,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있으나, 육아휴직은 어머니에게 한정되어 있고 0~3세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가 극히 제약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규범의 영향으로 동거 및 혼외출산이 아주 적다.

남유럽의 경우 남녀역할의 구분이라는 전통적인 가족관이 강한데다가, 여성의 사회진출과 가정간의 양립을 제고하기 위한 가족정책이 미약한 설정이다. 게다가 높은 실업률, 임대주택 부족 등에 의한 청년의 자립 곤란도 출산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실업률이 아주 높으며, 이로 인해 일을 찾는 시간이 길어지며 동시에 경제적으로 독립능력이 없어져 결국 결혼이 연장되고 가족형성시기가 늦추어지고 있다. 그리고 직업을 가지는 경우에도 임시직 및 파트타임 고용이 증가하여 결국 이들은 정규직이 될 때까지 결혼과 가족형성시기가 연기되고 있다. 저연령층 인구의 취업과 경제적 독립능력 등은 결국 주택마련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의 집에 동거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정책사례 연구를 위해 선정한 서유럽의 프랑스, 북유럽의 스웨덴, 남유럽의 스페인 및 동아시아의 일본은 나름대로의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스웨덴은 여성의 높은 경제 활동참여율과 고출산율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고 있으며, 스페인과 일본의 경우 출산율이 아주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 가족정책의 주된 특징은 첫째, 일하는 여성들이 증가함에 따라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는 출산력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여성들을 노동시장에서 가정으로 되돌리기보다 보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였다. 가족수당과 육아휴직급여는 모성에 대한 대가로서 보다 벌어들이지 못한 임금의 대가로 지급되었다. 둘째, 프랑스 가족정책은 수평적 분배에서 수직적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수직적 분배로는 셋째아 출산을 위해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제공(셋째아정책, third policy)하고, 대신 그로 인한 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첫째아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산전 및 모성수당도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되었으나, 질병 예방 및 빈곤가족 예방 차원에서 3~6세 미만 자녀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새로운 가족수당제도 대상도 취학자녀를 가진 가족, 미혼모, 사별남녀,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국한시키고 있다. 가족 중 1명만이 소득원인 경우 지급되는 수당은 셋째아(현재 둘째아 포함) 출산 후 취업을 중지한 여성에게 지급하는 일시부모수당으로 대체되었다. 셋째, 자녀를 두는 데에 대한 혜택을 다른 공공제도에

서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제도로는 조세제도와 연금제도를 들 수 있다. 자녀에게도 세금 감면을 위한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자녀수에 따라 연금기간을 증가시키는 혜택을 주고 있다.

스웨덴 가족정책도 자녀양육과 일과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1970년대에 가족정책모형은 생업가족모형에서 맞벌이가족모형으로 전환되었다. 남녀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가족생활과 노동시장에서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정책수단들로는 출산과 아동질병과 관련한 유급육아휴직과 공공보육보조를 들 수 있다. 육아휴직제는 아동복지, 여성 독립, 가족생활과 아동보호에의 남성 참여 등을 지향하고 있다. 보육정책은 고용과 가족생활의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동시에 아동의 발달 및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보육시설들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개선되어, 자녀를 가진 근로여성의 대부분이 자녀를 공공보육에 위탁시키고 있다.

스페인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은 출산율이 너무 높다는 국민의식, 프랑코 독재정권 하에 실시된 정책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 지방정부의 강한 자치권으로 인한 통일된 정책 실시 곤란 등을 들 수 있다. 관련 가족정책의 방향도 출산장려보다 빈곤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특징을 가진다. 유럽연합의 지침에 따라 일과 가족생활간의 양립을 위하여 모성휴직을 계획하고, 양성 평등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하였으나, 수혜수준이 낮고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대가족제도가 성행하여, 가족이 최고의 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신념체계가 지배적이어서 출산율 회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저출산 경향도 남부유럽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가족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바가 크다. 일본의 가족제도는 유교적 가치를 지향하여, 남성 지배와 엄격하게 고정된 성역할 분담, 부부관계를 초월하는 효의무가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규범은 1970년대부터 변화하였으나, 현대 일본사회에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 그 결과, 젊은이들 사이에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와 혼외출산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적인 인식도 여전하여, 취학 전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가사와 양육에 대한 남편 분담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가족정책들은 출산을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가족정책은 자녀와 가족생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성공적이었으며 특히, 아동양육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지불하기보다 일과 자녀양육간의 양립 지원과 직장 및 가정에서의 양성 평등 구현 등을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정책적 효과가 컸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육제도도 출산을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의 경우 가족정책이 출산장려보다 빈곤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실시되었으나, 그 나마 재정적 곤란으로 대상과 수혜정도가 축소되어 출산을 회복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외 전통적인 가족중심의 가치관과 정치적인 이유가 출산을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여성의 일과 자녀양육간의 양립을 제고하려는 정책이 비효과적이고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정 내 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사회보장혜택이 아주 낮았다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정책사례에서 간과해서 안 될 점들은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정책들이 경제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재정적인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스웨덴의 경우, 1990년 이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적인 압박으로 사회보장과 가족지원의 제공이 감소하고, 그 수혜범위가 축소되었다. 공공보육시설 운영비용의 축소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저하되었다. 반면, 맞벌이 가계의 실질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의 실업이 증가하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가족행위는 저출산 방향으로 반응하였다. 이와 같이, 스웨덴에서의 출산력 감소는 거시적인 경제위기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그러한 시기로 1930년대, 1970년대 및 1990년대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스웨덴은 경제적 조건의 향상이 출산력을 다시 증가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제 가족수당이 GNP의 4.3%(제 사회수당의 15%)을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가족정책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자녀급여를 축소하였으며, 3자녀 이상 가족을 위한 보조급여가 1996년에 폐지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가족정책에 이용된 제 수당들을 대체할 목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하고 있다.

이상 외국의 사례들을 종합할 때, 우리나라 향후 정책을 위해 도출될

수 있는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수준은 최근 출산율 수준과 달리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최근 출산율 수준이 중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수준은 어느 OECD 회원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인구구조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낮은 출산율을 일정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은 여성의 일과 자녀양육간의 양립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고안되어야 한다. 이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양성 평등에 대한 의식개선과 실천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산정책은 양성평등관련 정책들과 통합적으로 수립, 시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정책의 성공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강하게 남아있는 가부장적인 자치체계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상당한 정책적 노력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남부유럽이나 일본에서 출산율 회복에 실패한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재정 소모적인 정책수단들을 적용하기에 앞서,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의식개혁이 절실히 의미한다. 또한, 일반사회에서 여성 특히, 출산 및 양육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출산율을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수단들의 적용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킬 것이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출산장려정책에 기인한 재정적 압박에 대응하여, 최근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책수립과정에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중복적이고 효과가 높지 않은 정책수단들은 사전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편적인 수평적인 재분배정책보다 수직적인 재분배정책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사례에서 경제위기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의 활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가임기에 있는 인구의 가족형성(혼인 및 출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에 못지않게, 경제 활성화, 청년실업 감소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노력도 저출산 극복에 매우 중요함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제 7 장

인구고령화 대응전략

1. 대응전략 기본틀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총인구 중 노인비율의 증가,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 노인인구 중 중기 및 후기노인 비율의 증가)로 야기되는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는 동시에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인구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정책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한 정책으로 인구정책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인구정책은 정부가 인구변화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용하는 계획적으로 설정하거나 수정한 제도적인 준비 또는 특정한 프로그램들로 정의된다(Demney and McNicoll, 2003). 이러한 인구정책은 인구의 양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출산 및 이동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인구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는 정책들도 포함한다.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수준은 최근의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심지어 인구고령화 수준이 상당히 높은 OECD국가들보다도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사망력의 지속적인 저하에도 기인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 유지가 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력 저하를 통한 평균수명의 증가는 인류가 바라는 것으로 인위

적인 조정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인구고령화는 기본적으로 출산율 증가를 통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 중심의 이민정책도 인구고령화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남북통일에 의한 북한인구의 활용도 인구고령화 대응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생략하기로 한다.³¹⁾ 끝으로 절대적 및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을 부양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사회제도적 준비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출산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회복하는 방안, 국가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력 유지 방안,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로 구분될 수 있다. 출산율 회복방안이 사전적 대응책이라면, 노후생활보장방안은 사후적 대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노동력 유지방안은 사전적 및 사후적인 성격 모두를 갖는다.

출산율 회복 및 안정화 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정책목표는 단기, 중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출산율이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단기목표는 합계출산율이 적어도 1.5수준까지 회복하는 것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 수준은 1990년대 하반기 수준에 해당된다. 앞선 분석(합계출산율 1.4 가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출산율 1.5 수준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인구고령화 정도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중기목표로 최근 출산율이 회복하고 있는 프랑스나 영국의 수준인 약 1.8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출산율이 인구대치수준($TFR=2.1$)에서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그 인구의 구조는 안정화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인구대치수준 미만에서 오래 동안(1983년 이래) 유지되어 왔으며, 앞으로 그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 경우 인구고령화 수준은 상당히 높

31) 향후 북한인구의 변동에 관한 분석은 이삼식 외(1999)와 이삼식 외(2000)를 참조한다. 그들에 의하면, 북한도 경제난과 식량난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온 관계로 주민은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 초부터 추진된 북한당국의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인구대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지역에 기본적으로 인력이 필요함을 감안하면, 북한의 생산가능인구가 남한사회의 노동력 부족에 충분한 대응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아질 것이다(시나리오 V의 결과로 2050년 노인인구비율 30%). 따라서 장기적인 정책목표는 합계출산율이 최대한 빠르게 인구대치수준에 도달한 후, 그 수준에서 유지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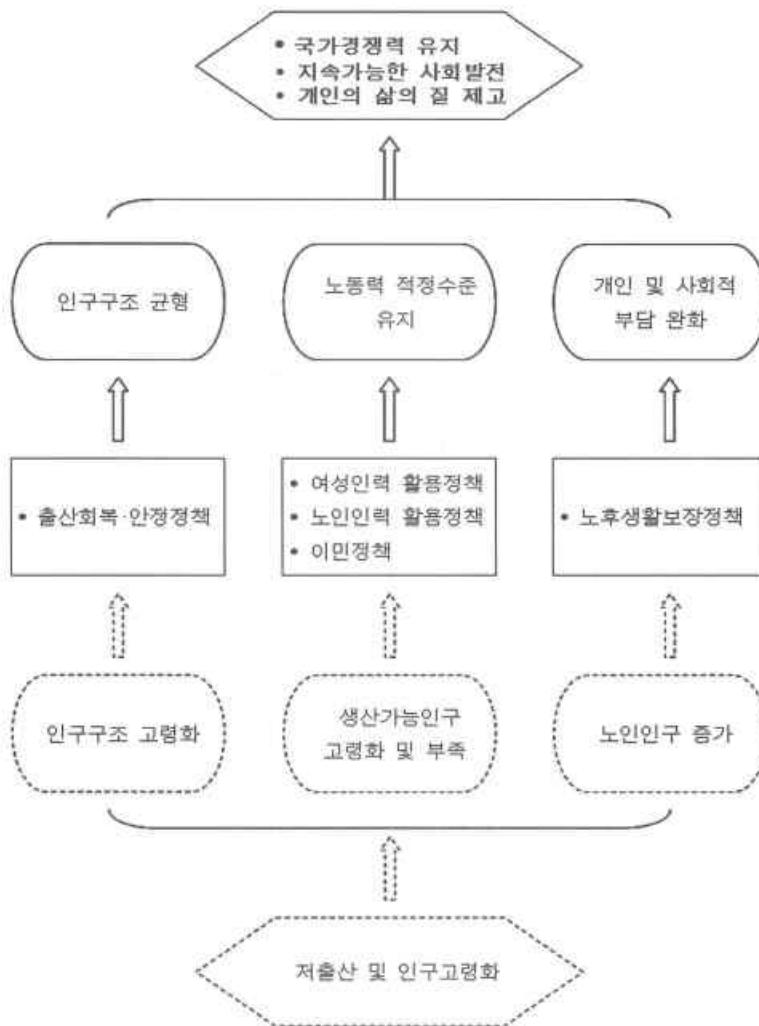
이러한 출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안들은 가족주기에 따라 가족가치증대정책, 가족형성정책, 가족확대정책, 가족보호정책, 가족재생산기능강화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가족가치증대정책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주의 만연으로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족의 가치를 중대시켜, 사회적 가치관이 결혼과 출산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가족형성정책은 적령기에 혼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가족확대정책은 부부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자녀를 지향하도록 유도하도록 한다. 가족보호정책은 사망과 질병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여 인구감소를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족재생산기능강화정책은 주로 생식보건(reproductive health)에 관한 것으로 미래 가임세대의 재생산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노동력 유지방안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여성인력활용정책, 노인인력활용정책 및 이민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우선적으로 가용 인력을 발굴하여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한 인력으로 여성과 노인을 들 수 있다. 여성인력활용은 자칫 출산력 저하를 유도하여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으로 악순환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여성인력활용의 전제조건으로 여성의 일과 자녀양육간의 양립 가능성이 충분히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인력활용방안은 출산율회복방안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인력활용은 미래 노인의 건강수준이나 교육정도가 현재 노인보다 높아질 것임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높은 방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인구고령화 수준이 상당한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복지차원뿐만 아니라 노동력 확보차원에서 노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인구의 절대규모가 감소함으로써 여성뿐만 아니라 노인인력의 활용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민정책은 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실제 많은 선진국들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 오래 전부터 이민정책을 실시해 왔다. 후술하겠지

[그림 7-1] 인구고령화 대응전략 기본틀



만, 전 세계적으로 인구증가가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UN은 저출산 국가들에 출산장려 대신 이민을 통해 과잉인구국가의 노동력을 수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끝으로, 출산을 수준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사망률의 지

속적 저하와 기존 인구구조에 의해 노인의 절대적 규모는 급격히 증가 할 것이다. 노후생활보장방안은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동시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노후생활보장방안은 노동력 유지방안으로서 노인인력활용방안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 논의된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의 기본틀은 [그림 7-1]에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제시된 방안들은 배타적이기보다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방안들이 통합적으로 수립되고 운영될 경우,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인구정책은 앞서 외국의 정책사례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순수한 인구학적 의미에서의 정책뿐만 아니라 가족정책, 복지정책, 여성정책 등 일반적인 사회정책들과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인구고령화 대응전략의 기본틀에 입각하여 개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인구고령화 대응전략

가. 출산수준 회복 및 안정화 전략

과거 독재국가 시대에 독일, 이탈리아, 소련 등은 출산력 저하에 기인한 병력자원 상실을 이유로 피임사용 등 가족계획과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여 출산을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이탈리아는 1926년 독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채택하기도 하였다(Beets, 1997). 1966년 루마니아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을 제한하여 이듬해 출생률이 두 배로 증가한 적이 있었다. 과거 아시아 국가들에서 출산을 감소는 정부의 리더십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말레이시아에서는 정부의 권고에 의해 출산감소가 중지된 사례가 있었다(Freedman, 1995).

서구사회에서 피임 및 인공임신중절 중단 등을 통해 출산율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은 여성운동에 반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정부는 곤경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왔다. 결과적으로 일부 국가에서만 출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뿐, 대부분 국가에서는 출산 증가를 위해 가족 또는 개인의 생활양식을 변경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Caldwell et al., 1988). 이에 대해 UN의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1994)에서도 조치계획(Programme of Action)을 채택하여 “정부는 어떠한 전략에서도 가족계획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과 부부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였다(Para 7.12.). 즉, 인구변동과 사회, 경제 및 환경관련 목적들 간에 발생되는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에서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Para 6.3.).

따라서 향후 국가가 가족형성 및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출산관련 정책들을 수립 및 이행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의사결정과 개인 및 부부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출산회복안정정책 즉, 가족가치증대정책, 가족형성정책, 가족학대정책, 가족보호정책 및 가족재생산기능강화정책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정책별로 개별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1) 가족가치증대정책

산업화, 도시화 등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또한 서구의 개인주의적 사상의 만연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족은 급격히 핵가족화 및 탈가족화 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특히 젊은층에서 변화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혼인시기가 늦추어지고 심지어는 평생 혼인을 하지 않은 독신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제5장 참조). 또한 혼인을 하는 경우에도 소수의 자녀만을 두는가 하면, 아예 자녀를 두지 않으려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출산율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은 가족의 가치 내지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것이다. 홍보는 관련 정부부처가 홀로 실시하기보다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도록 하

〈표 7-1〉 출산수준 회복 및 안정화: 가족가치증대 전략

방안	내용
저출산/인구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대국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부처,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참여유도 ○ 민관합동 공동홍보위원회(가칭) 설립추진 ○ 학교교육, 사회교육 강화
결혼과 출산 및 가족의 아름다움 및 필요성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혼, 독신 등과 관련하여 결혼관, 가족관 등의 가치관 변화유도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사회교육을 통한 양성평등적 가족관, 직업관 교육 ○ 가족친화적, 양성평등적 가족/직장 문화운동전개

며, 이를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홍보위원회(가칭)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만혼, 독신 등의 경향에 대응하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등을 통해 결혼과 출산 및 가족의 아름다움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결혼과 출산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을 통해 양성평등적 가족관과 직업관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동시에 가족친화적 및 양성평등적인 가족 및 직장 문화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2) 가족형성정책

외국 사례에서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 증가 및 고용 불안정은 출산율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시기는 경제위기의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경제 위기로 인하여 여성의 실업이 증가하면서 맞벌이부부의 수입에 타격을 가하여, 결과적으로 자녀 출산 및 양육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도 경기 침체로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가족형성 및 자녀출산 시기가 늦추어지고 있다. 취업한 경우에도 고용이 불안정하여 주택마련 등이 어려워지면서 부모세대에 기생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도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부적응 문제로 인하여 젊은층의 결혼이 늦추어지고 자녀수가 축소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 이래 경기침체, 고용불안정, 높은 청년 실업 등으로 인하여 혼인연령이 급상승하고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따라서 가족형성을 유도하여 출산수준을 회복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경기가 살아나서 실업이 감소하고 고용이 안정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 안정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므로, 출산을 회복 및 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 직접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 및 고용불안정의 대책에 출산 및 인구고령화 이슈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젊은층의 실업을 감소시키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청년창업을 권장하고 사업자금을 대부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이탈리아에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입법 조치한 바 있다). 임시직, 파트타임(part-time)직 등의 일시적인 일거리 제공으로 젊은이들의 가족형성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혼인연령 상승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구 국가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취업 중인 미혼여성들이 가족 형성(혼인) 시기를 늦추고 있으며, 심지어 독신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유 배우출산율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될지라도 미혼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면, 전체적인 출산율 수준은 감소하기 마련이다. 미혼여성 특히, 취업 중인 미혼여성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은 그로 인한 기회비용의 상실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 중인 미혼여성들이 적령기에 혼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불이익이 철폐되어야 한다. 미혼여성의 혼인을 방해하는 다른 사회적 요인들로 혼인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며,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하여 마땅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들을 들 수 있다. 미 혼여성들이 도시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 점도 지역간 미혼인구의 불균형 분포를 야기하여 가족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특히 농촌사회에서의 미 혼남성). 최근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급격한 증가도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족형성의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결혼 및 출산을 이유로 한 강제(혹은 권고) 퇴직관행이 철폐되어야 한다. 결혼 및 출산을 이유로 한 직장 내 인사상(직무배치, 승진, 전보, 훈련 등) 불이익도 철폐되어야 한다. 건전혼례를 지향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여 혼인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는 노력에도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있어야 한다. 농촌 젊은이들의 만혼 및 비자발적 독신을 줄이기 위해 농촌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짝 찾아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국제결혼과 관련해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주거지원으로 젊은 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나 저가의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에 대해 주택자금 융자를 우대하고 소득공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족해체 방지도 가족형성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여기에는 이혼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사전 이혼상담제도가 도입(확대)되고, 현행 합의이혼절차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표 7-2〉 출산수준 회복 및 안정화: 가족형성 전략

방안	내용
청년실업 감소/고용안정	○ 청년창업 권장 및 사업자금 대부 등 지원
가족친화적 고용환경조성	○ 결혼/출산 이유의 강제/권고퇴직관행 철폐 ○ 결혼/출산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철폐
혼인비용부담 완화 및 혼인 적령인구의 지리적 불균형 분포 대책	○ 건전혼례문화 조성을 통한 결혼비용 완화 ○ 농촌 젊은이들의 비자발적 독신 및 만혼 대책 강구
주거지원	○ 젊은 부부를 위한 저가의 소형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융자조건 우대 및 소득공제 확대
가족해체 방지	○ 이혼사전상담제 확대, 합의이혼절차 개선

3) 가족확대정책

가족은 자녀 출산을 통해 확대된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자녀 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은 더 크게 인식된다. 따라서 출산수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일과 자녀양육간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지원 및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즉,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출산율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로 높은 교육비용과 주거비용은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체계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을 극복하여 일과 자녀 양육간의 양립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을 보조하기 위한 소득지원, 보육비용을 포함한 교육비용 경감, 다자녀가족을 위한 주거지원 등 다양한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방안들을 통해 개인이나 가족에게 전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자녀 출산 및 양육의 부담이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일부 전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안들은 여러 구체적인 정책수단들을 통해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³²⁾ 우선 여성의 일과 자녀양육간의 양립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확대(수혜기간 연장, 유급 기간 및 비율 증가 등), 양성평등 육아휴직제도 확대(기간 증가 등) 등을 들 수 있다.³³⁾ 또한 맞벌이부부를 위한 보육시설로 공공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 확충, 보육프로그램 다양화(방과 후 보호, 전일제 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³⁴⁾

32) 2004년 6월 11일 제46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제시된 “육아지원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i) 0세아: 가정 양육 중심으로 지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확대, 가정보육교사 지원 및 육아지원센터를 통한 부모가정교육 지원, ii) 0·4세아: 육아비용의 지원강화 및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부모부담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경감, 지원대상 아동 확대(22.6% → '08년 70%), iii) 5세아: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 확대, 지원대상 아동 확대(21% → '08년 70%), iv) 6~8세아: 방과 후 보육 교육 활성화 등이다.

33) 노르웨이의 경우, 모성휴직기간 42주 중 4주는 부에 주어졌으며, 이는 모에게 부여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도 부에게 모성휴직기간의 일부를 할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34) 핀란드에서는 가정으로 하여금 시설보호나 가정보호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며, 후자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표 7-3〉 출산수준 회복 및 안정화: 가족확대 전략

방안	내용
취업여성의 일과 자녀양육 간의 양립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수혜기간 연장, 유급기간 및 유급비율 증가 ○ 맞벌이부부를 위한 보육시설(서비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 확충 - 보육프로그램 다양화(방과후, 전일제 등) ○ 가족친화적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 여성의 근무조건 탄력적 적용(대상자녀의 연령조건 확대) - 자녀양육 여성의 업무배치 유동성 제고 - 육아휴직 후 복직여성의 승진권리 보장 - 자녀 양육후 (재)취업훈련프로그램 ○ 취업모를 위한 집, 직장, 탁아소, 시장 등의 연계 공공교통수단 개발
다자녀가족의 소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수당(산전산후수당을 포함한 모성수당,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가족수당 등) 지급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를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일정률로 지급하여 수입대체율 증가 ○ 다자녀 저소득층 가족의 취업 우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족의 부/모의 취업가산점 부여 - 다자녀 가족에 생업자금 우선융자 등 ○ 공공제도에 의한 소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기간중 연금/건강보험료 지불유예/감면 - 연금의 완전수령조건인 기간을 자녀수에 따라 추가 - 조세제도에서 자녀수에 따른 근로소득 차등 감면, 다자녀 가족의 주민세 감면
다자녀가족의 교육비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보육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에 대한 부모부담액 최고한도 설정하고, 차액은 바우처, 매월 지급금, 세금감면 등 형태로 지원 - 공보육 확대 등 ○ 다자녀가족의 자녀를 위한 교재교구비, 학교피복비, 교통비 등 지원
다자녀가족의 주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아파트,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분양권 우선 제공 및 평형 선택시 우대 ○ 임차료 보조, 주택자금 읍자 확대, 주택수당 지급 등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으로 자녀양육 여성의 근무시간 및 다른 근무조건들이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수혜조건으로서 해당자녀의 연령조건을 확대하고, 수혜내용(예를 들어, 근무시간 단축 등)을 증가시키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연령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의 업무배치에 있어서 융통성을 높이고,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여성의 보류된 승진권리 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집과 직장, 택아소, 시장 등을 편리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공공교통수단의 개발도 중요하다. 자녀 출산 및 양육 후에 일을 하고자 하는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취업훈련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자녀가족을 위한 직접적인 소득지원방안으로 출산 및 양육관련 제수당의 도입 및 확대를 들 수 있다. 제 수당으로는 산전산후수당을 포함한 모성수당(출산휴가동안 지급),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가족수당 등이 포함된다. 이들 수당은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일정비율로 지급하여 수입대체율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다자녀가족을 위한 간접적인 소득지원방안에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족의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으로서 다자녀가족의 부 또는 모에 취업가산점을 부여하여, 취업기회나 생업자금 융자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공공제도를 통해 다자녀가족의 소득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도입될 수 있다. 일례로 연금제도로 급여수령조건으로서 연금부과기간을 자녀수에 따라 추가로 증가시켜 주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제도(연금제도도 적용 가능)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 보험료의 지불을 유예 또는 감면해주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조세제도의 경우에는 자녀수에 따른 근로소득세 차등 감면과 다자녀가족을 위한 주민세 감면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다자녀가족의 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방안으로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보육보조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³⁵⁾ 여기에는 보육에 대한 부모부담액의

35) 2004년 2월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들을 발표하였다. 여기

최고한도를 설정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바우처, 지급금, 세금감면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공보육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다자녀가족의 자녀를 위한 교재교구비, 학교 피복비, 교통비 등의 지원도 고려될 수 있다. 다자녀가족의 주거지원체 으로 임대아파트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권 우선 제공 및 평형 선택시 우대를 들 수 있다. 이들 가족을 위해 주택자금 융자를 확대하고, 임차료를 보조하며,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

4) 가족보호정책

출산율을 일정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나, 출생한 자녀를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출생아보호는 모성보호와 함께 향후 가임력과 노동력을 보존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출생아보호 및 모성보호는 불안정한 가족에서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보호정책은 출생아보호, 모성보호 및 가정보호로 구분될 수 있다. 가족보호정책에서는 재정적인 지원보다 부모와 자녀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출생아보호정책에는 임신 및 출생아의 의료보장, 영유아 보건 지도, 맞벌이부부 가족에서 자녀의 질병 간호를 위한 자녀가정방문간호제도, 유급자녀질병휴가제도, 무료건강서비스, 저소득층 미숙아 지원(의료비, 양육비 등), 선천성이상아 지원(의료비 지원 확대 등), 미혼모 아이 보호 및 국내 입양 활성화 등이 제안될 수 있다. 출산 및 양육을 위한 건강한 환경 조성 및 지원도 출생아보호방안 중 하나로 포함될 수 있다.

모성보호정책은 여성의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지원 강화, 건강보험 급여항목 확대, 산전산후검사의 보험적용 확대,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의 보험진료비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가정 보호정책에는 동거가족 및 미혼모(혼외출산) 가정 보호와 3세대 이상 가족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3세대 주거환경 조성과 노부모 부양 가족 지원 및 확대가족문화 조성 등이 제안될 수 있다.

에는 단기적 대책으로 사교육 수요 공교육 체제 내 흡수, 중장기 대책으로 우수교원 확보, 수업·평가방법 개선 등 학교교육 내실화, 그리고 장기적 대책으로 학벌주의, 왜곡된 교육관 극복 등 사회제도 및 의식 개혁을 제시한 바 있다.

〈표 7-4〉 출산수준 회복 및 안정화: 가족보호 전략

방안	내용
출생아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및 출생아의 의료보장, 영유아 보건 지도 ○ 맞벌이부부 등의 자녀의 질병 간호를 위한 자녀가정방문간호제도, 유급자녀질병휴가제도 도입 ○ 무료건강서비스 ○ 저소득층 미숙아 및 그 가정 지원(의료비, 양육비 등) ○ 선천성이상아 및 그 가정 지원(의료비 지원 확대 등) ○ 미혼모 아이 보호 및 국내 입양 활성화 ○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건강한 환경 조성 및 지원
모성보호(임신/출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 건강보험 급여항목 확대 ○ 산전산후검사 보험 적용 확대 ○ 자연/제왕절개 분만 보험진료비 지원
가정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거기족, 미혼모(혼외출산) 가정 보호 ○ 3세대 가족 증가를 위한 3세대 주거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노부모 부양 지원 - 확대가족문화 조성 등

5) 가족 재생산 기능 강화 정책

가족재생산기능강화정책은 미래의 출산율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행위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임신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청소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선택하게 된다. 인공임신중절 시술은 청소년 생식기관에 각종 합병증을 유발시키며, 후천성 불임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미래 가임세대의 가임력이 손실된다. 따라서 여성의 생식기 건강 증진은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하며, 가임력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불임부부도 출산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서 지적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만연되고 있는 전통적인 가족관으로서 남아선호도 인공임신중절 등을 통해 여아를 소모하여 미래의 가임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재생산기능강화정책은 여성의 생식기 건강 증진, 불임가족 예방 및 지원, 남아선호 근

절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

우선 여성 생식기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사전적인 방안으로 성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청소년 성교육의 활성화 및 체계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성교육과 아울러 성상담 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성교육 및 성상담뿐만 아니라 생식건강관련 문제를 효과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이 긴요하다.

불임가족을 예방하고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불임 검사 및 치료의 보험적용 확대, 정·난관 불임의 복원수술관련 보험급여 확대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여성의 비자발적(후천성) 불임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임신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으로서 불법 인공임신중절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불법사항에 대해 의료법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남아선후를 불식하는 노력과도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성행은 여아의 출생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미래인구의 순재생산율(net reproduction rate)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외국에서와 같이, 인공임신중절 시술 전에 반드시 상담하도록 하는 사전상담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습관적 인공임신중절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제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서 남아선후관을 근절하기 위해 양성평등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표 7-5〉 출산수준 회복 및 안정화: 가족 재생산 기능 강화 전략

방 안	내 용
여성(청소년) 생건강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교육 강화 및 성상담 기능 활성화 ○ 청소년의 임신, 인공임신중절 등에 대한 치유를 위한 효율적인 서비스전달 체계 구축 ○ 인공임신중절 대책
불임가족 예방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임검사 및 치료 보험적용 확대 검토 ○ 정·난관 불임시술 복원수술 보험급여 확대
남아선후 불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인공임신중절 감시체계 확립, 의료법 엄격 적용 ○ 인공임신중절 시술 전 사전임신상담제도 도입 ○ 인공임신중절 반복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제 도입 ○ 양성평등 교육 강화

끝으로 출산수준의 회복 및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이다. 앞서 제시한 많은 정책수단들 중에는 모든 계층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과 일부 특수계층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한편, 필요한 정책수단들 모두를 집행할 경우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부 국가는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수단들의 집행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는 모든 출생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던 보편적인 접근방식(수평적 재분배 접근방식)을 지양하고, 출산순위, 자녀수, 소득자산 등 일정한 기준들에 의거한 차등적 접근방식(수직적 재분배 접근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추가출산이 부부에게 많은 경제적 및 심리적 부담을 안겨다주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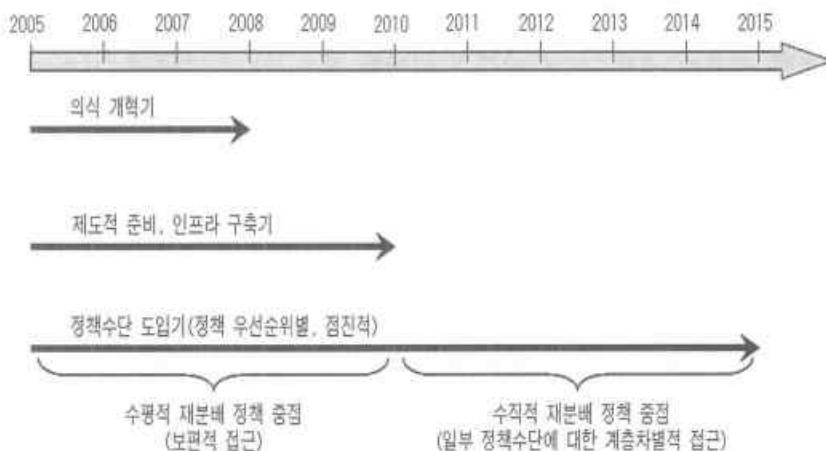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출산회복정책의 실시 방향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출산회복정책은 선별적이면서 통합적으로 실시될 것이 제안된다. 선별적 접근은 재정의 한계를 인식하여 평가 등을 통해 저비용·고효과의 정책수단(프로그램)들을 선정한 후, 이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통합적 접근은 선정된 비용효과적인 정책수단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선별적 접근에서 대표적인 비용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려 의식을 전환하기 위한 홍보를 들 수 있다. 홍보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자녀와 가족에 관한 가치관을 출산증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노력에도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선정된 정책수단들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조속한 마련(제정 또는 개정)과 필요한 인프라의 구축이 제안된다.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는 교육제도, 고용제도, 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인프라로는 다양한 보육시설 및 관련 서비스의 확충이 대표적인 예로 제시될 수 있다.

셋째, 정책수단들의 수혜대상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초기에는 보편적 접근방식(수평적 재분배 정책)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점차 일정한 기

[그림 7-2] 출산회복 및 안정화 정책 추진 방안



준(출생순위, 자녀수, 소득자산 수준 등)에 의거한 차등적 접근방식(수직적 재분배 정책)을 중심으로 실시될 것을 제안한다. 즉, 최근 지나치게 낮은 출산율 수준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비용효과적이면서도 보편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정책수단들을 선정하여 강도 높게 실시한다. 이어서 점진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정지출을 요하는 정책수단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출생순위, 자녀수, 소득자산 수준 등)에 의거하여 차등적으로 실시한다.

이러한 정책제안들은 [그림 7-2]에 제시한 시간적 프레임에 의거하여 실시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점은 출산수준 회복을 위한 정책들은 저출산 및 그 결과로서 미래 인구고령화 수준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속히 실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정책실시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수단들은 비용-효과분석을 토대로 신중하게 선정·실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책수단들이 막대한 재정적 지출에도 불구하고 출산회복에 대한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일방적인 출산억제정책의 결과를 교훈삼아, 출산회복정책이 미래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이 신중히 고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 노동력 적정수준 유지 전략

1) 여성인력활용정책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정책은 출산회복정책들과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력 부족만을 감안하여 여성을 시장에 내몰 경우, 출산율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회복정책의 기조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출산율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과 자녀양육간의 양립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정책수단들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혼인과 출산 및 자녀양육을 이유로 한 직장 내 차별관행이 철폐되어야 하며, 기혼여성의 재취업에 장애요인들이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가족친화적인 고용환경이 조속히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2) 노인인력활용정책

향후 급격히 증가할 노인들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적자원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나, 노동연령층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노인층이 증가하는 인구구조 상의 변화를 감안할 때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가용 자녀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족구조 및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부양체계에서 볼 수 있는 가족에 의한 사적자원에도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노인의 노동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고령사회에서도 그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즉, 향후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노인인력 활용을 제시할 수 있다. 미래 노인세대는 현재보다 교육정도가 더 높고, 건강수준이 더 좋을 것으로 노동시장에서 활동이 더욱 유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인들을 경제활동의 주체로 인식하여 노년기에도 생산적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고령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노인의 고용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기준고용률을 설정하고, 고령자격합직종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고용률이나 정년연장지도, 고령자 적합직종 선정 등과

같은 정책들은 거의 상징적이면서도 구빈적인 성격이 강하다.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의 노동 참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노인노동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부터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은 단순히 고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모집, 채용, 해고 등)을 금지하는 관련법령을 제정하거나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 제도들에 의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1967년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연령고용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젊은 노동력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새로운 기법들을 배우거나 변경하는데 융통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고용주들에 의한 연령차별은 계속 되어 많은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Andrew et al., 1997).

따라서 사회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연령차별주의적 시각을 불식시켜 노인의 고용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노인들의 노동능력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평생교육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지식정보사회 진전에 대응하여 노인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교육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능훈련프로그램의 개발도 중요하다. 훈련프로그램은 노인의 경력, 능력,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고용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나, 질적 수준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노인고용관련 프로그램들 특히,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의 경우 노인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한다고 하나, 관련 직종들은 고령자적합직종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종들과 큰 차이가 없이 단발적이고 비전문적인 성격이 강하다. 즉, 정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까지 노인들을 노동에 적합지 않은 대상으로 간주하여, 노동시장 주변의 직종에 한정시키는 소극적 부정적인 시각에 머무르고 있다. 노인노동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은 노동능력이 소진하여 비생산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서 재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의 적극적인 근로동기를 유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노인들을 위해 근로기회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노동이 가능한 노인들의 적극적인 근로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사회교육이 중요하다. 또한 노인에 대한 재 정의를 통해, 노인은 은퇴 후 여생을 보내는 복지수혜자로서 보다 고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회와 경제의 한 축으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 고용 형태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현행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은 노인만을 위한 노인들만이 모여서 일하는 고용형태를 전제하고 있다.³⁶⁾ 보다 바람직한 노인의 고용 혹은 참여 형태는 예를 들어 노인들을 주축으로 창업을 유도 및 지원하고, 조직 구성원으로는 경상적인 직장에서와 같이, 젊고 유능한 지원들로 채워, 신구가 조화되는 형태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일반노인들이 보다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분야(특히 전문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노인들을 중심으로 인력을 구성하되, 주변 인력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한 인력으로 채우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경제활동을 원하는 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러한 일자리가 요즈음 청년 고실업과 퇴출된 중장년층을 흡수하도록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들이 주축이 되고, 다양한 세대가 공유될 때 그러한 일자리는 경쟁력이 있으며 활기찰 수 있다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원하는 노인들이 바라는 노동의 행태도 바로 이러한 모습일 것이다.

보다 바람직한 고용형태는 노인들이 조기에 은퇴하지 않고, 자신이 일해 왔던 직업에서 노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 경우 노인들은 새로운 일에 대한 부적합성이 사라질 것이며, 근로동기도 크게 감퇴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노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결국 정년선택제를 실시하여, 개인이 노동에 한계성을 느끼고 스스로 중단할 때까지 노동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36) 예를 들어, 지역사회시니어클럽사업의 참여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50세 이상의 퇴직자로서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과 일반노인들도 참여시키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노인노동의 연장 내지 계승은 노인들이 평생을 반쳐 헌신하였던 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인구고령화의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라 예견되는 노동력 부족과 사회보장부담의 증가 및 노인복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도 책임감을 가지고 경제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복지와 사회보장 영역에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법에서 매 5년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1년씩 연장하기로 한 계획에 맞추어 정년퇴직 연령을 연장하여, 고령자의 고용이 안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인력 재고용을 연금수령시기와 연계할 경우, 연금제도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외 노인을 위해 노동조건의 유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근로시간 단축(고령노동자가 자신의 가족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할애할 수 있는 시간 보장), 임시직종 증가, 인터넷을 이용한 재택근무 도입 등이 포함된다.

끝으로, 본격적 고령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적인 노인복지 사업 대안으로 일반 노인의 복지 욕구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욕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긴요하다. 우리사회에서 노인이 소비적이고 무능력하다는 부정적 인식은 불식되고, 더 나아가 고령사회에서 긴요한 노동 자원으로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존의 “연령중심 패러다임”은 “능력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3) 이민정책

대부분 연구에서 출산율 감소를 방지하여 증가세로 전환하는 것은 거의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UN, 2000). 결국 연금, 의료보험, 경제력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이동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저출산을 겪어오면서도 어느 정도 인구가 안정되어 온데에는 외국으로부터 이민자에 힘입은 바가 크다. 유럽국가 대부분은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1996년 유럽전체의 인구증가율은 2.8%에서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중 자연증가율은 0.8%(조출생율 10.8, 조사망률 10.0)에 그치고 대부분은 이민에 의한 사회적 증가율에 기인하였다. 이 당시 독일과 이태리는 자연

증가율이 부(-1.1%, -0.3%)로 나타난 유일한 국가들이었다. 반면, 이민에 의한 인구증가율은 독일의 경우 0.37%(순이동자로 300천명), 이태리의 경우 0.26%로 나타났다.

최근에 들어, 유럽 국가들의 이민 추이는 엄격한 제한법 등으로 인해 안정되었다. 프랑스의 경우에 이민의 역할은 다소 덜 중요하다. 예를 들어, 1996년 자연증가율이 0.34%(조출생율 1.26%, 조사망률 0.89%)인 반면, 이동에 의한 증가율은 0.07%에 불과하였다(Toulemon, 1998) 이민은 비단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ies)에서도 인구감소나 고령화를 어느 정도 방지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반면, 일본과 같이 역사성과 정체성이 강한 국가에서는 이민에 대해 강한 사회적인 저항을 갖고 있어 이민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못함으로써, 인구고령화가 급격히 이루어 졌다(Lesthaeghe et al., 1988).

물론, 우리나라도 현재 주로 3D직종에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를 산업연수원제도 등을 통해 유입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은 여전히 단기적인 대책으로서만 수용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불법노동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도 임금이 아주 낮아 불법적 노동자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요컨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단편적인 성격을 가지며, 사회적으로 부조화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는 노동력 부족을 겪은 경우에 노동유입을 단기적으로 필요한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동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들의 관점에서만 인구이동을 바라다보고 있다. 즉, 이들 국가들은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에 이동자를 환영하나 그 전제조건으로는 이들이 필요 없을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이민은 노동력과 세금원으로서 장점을 가진 데에 비해 사회·정치적 비용이 과다하여 거절되고 있다(McIntosh, 1986). 우리 정부도 외국인 노동자 수입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긴장과 영향 등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7-6〉 UN의 국제이민 추계 가정 및 결과, 1999

가정	시나리오				
	I	II	III	IV	V
출산률, 사망률 가정	1998 UN추계가정 (중위)과 동일	1998 UN추계가정 (중위)과 동일	1998 UN추계가정 (중위)과 동일	1998 UN추계가정 (중위)과 동일	1998 UN추계가정 (중위)과 동일
인구이동 (순이동) 가정	1995-2020년 450천명, 이후 없음	1995-2050년 없음	1995년 이후 없음	1995년 이후 없음	1995년 이후 없음
인구규모			최대인구(20 35년 53.5백만명) 2050년까지 유지	최대생산가 능인구(2020 년 36.3백만) 2050년까지 유지	최대잠재적 부양비(1995 년 12.6명) 2050년까지 유지
2050년까지 필요이민자 (천명)	-350	0	1,509	6,426	5,128,147

주: UN 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이동은 1995-2020년 45만명, 최대인구는 2035년 53.5백만명, 최대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에 36.3백만명, 최대 잠재적부양비는 1995년 12.6임.

자료: UN, 2000.

저출산 국가들은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달리,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국제 이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세계적으로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구차원에서 계속 출산을 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UN에서는 1999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을 대상으로 향후 필요한 이민자수(1995~2050년)를 추정한 바 있다(UN, 2000).³⁷⁾

유엔 추계결과(〈표 7-6〉)에 의하면, 비교대상 국가 중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마이너스 순이동을 보이고 있다. 최대인구 및 최대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하여 할 경우 2050년까지 필요한 이민자수(순이민 개념)는 1,509천명과 6,426천명으로 각각 추정되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

37) 사례국가로 한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러시아, 영국, 미국 등 8개국이 포함되었다.

로 적었다. 그러나 최대 잠재적부양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이민자 수는 2050년까지 총 51억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적부양비가 아주 높아 향후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유엔의 가정을 따른다면, 향후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인구고령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이민자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은퇴연령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생산가능인구 및 잠재적 부양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다. 만약 은퇴연령을 조정하여 현 잠재적부양비 수준을 향후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연령까지 상승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엔의 추정은 비현실적인 면이 없지 않다. 가정으로 도입하고 있는 인구규모 및 구조의 최적수준은 사회, 경제 등 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추정결과는 인구고령화 수준을 줄이고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출산율 회복뿐만 아니라 이민정책도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국제이동이 저출산 지속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성장을에 대한 영향을 상쇄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Espenshade, 1986; Ulrich, 1998). 이민유입이 인구구조 특히, 인구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로 나누어진다(UN, 2000). 긍정적인 주장으로는 이민유입이 전체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인구고령화를 늦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주장으로는 이민유입이 총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거의 영향이 없거나, 장기적으로 이민자도 인구고령화의 한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인구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세하다 것이다(Lesthaeghe et al., 1988).

최근 저출산 현상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수준이 심각할 것이며, 노동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발달 등의 변수가 있으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현재 유럽 국가나 다문화국가들의 예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민정책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민정책은 출산회복정책의 성과를 보면서 사후적인 수단으로서 장

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도입을 검토할 경우, 과연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며, 이들이 유입될 경우 어느 정도 사회문화적 충격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중요하다.

다. 노후생활보장방안

인구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의료보호, 연금 등 사회보장에 대한 부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제성장은 이를 따라갈 만큼 같은 속도로 증가하지 못하여 결국 사회보장 재정은 악화될 것이다. 특히, 고령자는 고가의 의료보호를 받기 때문에 노인의 증가는 곧 의료지출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고령자의 노령화로 인해 와상 및 치매노인이 증가하여 간호 등 많은 요보호 욕구가 발생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는 결국 노동세대의 부담이 크게 과중 될 것임을 의미하며 세대간 수혜와 지나친 부담에 대한 좌절이 발생할 것이다.³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노인인력 활용방안들과 함께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중요하다. 연금제도의 경우, 평균수명, 인구고령화, 은퇴 근로자 대체율 등 인구학적 요인의 변동에 따라 연금을 조정하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³⁹⁾ 노후 의료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 방문서비스나 주간보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8) 일본정부는 총국민소득에 대한 세금 및 보장부담률을 향후 국가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50%이하로 유지고자 하고 있다. 사회보장부담률 50% 이하 유지 목표를 위한 개혁의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요구와 국가경제간 조화 등이다(Atoh, 1998).

39) 초기 퇴직연금 수령을 제한하며, 프랑스에서는 퇴직연금 수령조건으로 연금가입기간을 2003년부터 37.5년에서 40.0년으로 증가시켰다. 이태리에서는 은퇴 후 평균수명에서 변화를 감안하기 위해 매 10년마다 인구학적 조정자(demographic adjuster)를 도입하였으며, 자영업자의 낮은 연금기여율을 반영하여 이들의 연금을 피고용인에 비해 낮게 책정하였다.

제8장 결 론

우리나라 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치수준에 도달하였다. 이후 약 20년 동안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치수준 미만에서 계속 감소하여 왔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보다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특히 최근 유래 없이 낮은 수준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복잡 다양하다.

인구학적으로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두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여성의 혼인연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출산이 집중된 연령층에서의 미혼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법률혼이 보편적인 한국사회에서 미혼율의 급격한 상승한 적어도 단기적으로 출산이 가능한 인구의 감소를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여성들이 혼인을 하는 경우에도 가임기간에 높은 출생아수가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실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여성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다가, 자녀 생산이 가능한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 즉 유배우출산력이 감소하여 출산율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임기간 여성의 수가 2000년대 초를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출산이 집중된 연령층의 여성규모는 이미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다. 즉, 가임기 여성규모의 감소, 적령기에의 혼인비율 감소 및 유배우여성의 출산력 감소가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향후 출산력 전망은 상당히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들의 변화는 사회경제적 현상과 개인적인 가치

관의 변화에 기인한다. 도시화와 함께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및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 비율의 증가, 핵가족화 및 가족해체 증가 등은 출산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개인 특히, 미래 가임제대인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자녀관은 혼인력과 출산력 모두에 불리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현상 및 가치관의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출산율이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환연하면, 향후 인구학적 및 사회적 현상의 변화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그러한 변화방향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저출산 및 그로 인한 인구고령화 현상이 장래에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해주며, 실제 시나리오별 인구추계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수준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현 출산력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50년 이전에 모든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인구고령화 수준을 보일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인구대치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구고령화 현상은 이미 결정된 인구구조 이외 향후 출산력과 사망력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현 출산율 수준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출산력이 인구고령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망력보다 크며,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기존의 인구구조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구고령화에 대한 사망력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은데다가, 인위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향후 인구고령화는 출산율을 일정 수준까지 회복시키는 노력에 의해 그 수준이나 속도가 변경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노력은 출산율 회복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이민유입은 출산관련 정책의 사후적인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OECD 국가들 대부분은 오래 동안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여 왔으며, 그로 인해 현재 인구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많은 국가들이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을 비롯하여 가족정책, 여성정책, 복지정책, 이민정책 등에서 노력하여 왔다. OECD 국가들의 경험은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적 노력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이들 국가의 정책 모두가 성공한 것이 아니며, 비용측면에서도 상당한 재정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최근 일부 국가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의 개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외국의 사례를 교훈삼아, 향후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 노력은 좀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향후 인구고령화 대응전략은 여러 저출산 원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구축하되, 정책적 수단들은 선별적이면서도 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입체적인 차원에서 저출산 대응은 가족가치증대 정책, 가족형성정책, 가족확대정책, 가족보호정책 및 가족재생산기능강화정책으로 구분하되,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모든 가능한 정책적 대안(수단)들이 정밀한 평가없이 도입될 경우, 나름대로 복지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지라도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정책대안들을 한꺼번에 주입하기보다 비용효과적인 대안들을 선별하여 점진적으로 실시되도록 한다. 이들 선정된 정책대안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되도록 한다.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선정된 정책수단들의 경우에도 모든 대상에 적용하는 보편적인 접근(수평적 재분배 정책)과 일정한 기준에 의거한 차등적 접근(수직적 재분배 정책)이 구분되어 적용되도록 한다.

출산율이 단기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여 유지되지 않는 한, 사망력과 인구구조의 작용으로 인하여 인구고령화 정도는 계속 심화될 것이다. 특히, 향후 50년 이상 동안 출산율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 인구의 절대적 규모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향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이를 노인을 부양하여야 할 노동세대의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력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여성 인력활용정책과 노인인력활용정책도 중요한 대안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여서인력활용정책은 출산율 회복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여성의 출산율과 경제활동참가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는 여성의 일과 자녀양육간의 양립 가능성 제고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인력활용정책은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으로서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방안으로서

도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어야만 하며, 재정적인 부담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 부담은 국가와 기업 및 가족(개인)으로 분할될 것이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분담의 공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어떠한 정책이라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향후 연구에 대한 제안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외국의 정책사례들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그 효과에 대해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인구고령화 수준이나 발전 수준이 다르며, 무엇보다도 인류문화학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외국의 정책사례들은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기보다 근대사를 포함한 역사학적 및 인류문화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재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문화적으로 수용되고,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대안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출산율 회복정책에서는 수평적 재분배 정책대안들 못지 않게 수직적 재분배 정책대안들이 중요하다. 이는 정책 효과가 큰 계층을 중점적인 대상으로 삼은 접근방법이다. 수직적 재분배 접근을 위해서는 계층간 출산력 차이가 우선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를 포함하여 최근까지 실시된 연구들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저출산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은 미혼남녀를 포함한 현재 및 미래의 가임인구를 대상으로 혼인 및 출산의 연기, 혼인 및 추가 출산 포기 등을 유인하는 실질적인 원인들을 토대로 수립될 때,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미시적인 서베이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는 인류문화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현상에 대한 연구 활동이 지속되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앞선 제안들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이 연구의 결론으로 인구고령화는 사회문제로서가 아니라 새롭고 꾸준한 변화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리고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상

은 결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회현상이 아니다. 대응이 시급하나, 그렇다고 결코 조급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회현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들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 경우,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노력은 보다 적극적일 수 있으며, 그 성과도 보다 클 것이다.

참고문헌

- 공세권 외, 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03. 『인구통계자료집』. 일본.
- 김승권 외, 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 2003.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수립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2004. “한국사회 출산을 변화의 원인과 향후 전망.” 『2004년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 자료집』.
- 박순일·이삼식·변용찬 외, 2004. 『저출산 현황과 전망』. 워킹페이퍼 2004-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용찬·이삼식·김유경, 1999. 『우리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각 연도. 내부자료.
- 온기수, 2004. 『가치관과 혼인 및 출산, 전국가족조사에 따른 한국가족의 현실과 정책전망: 19-32』. 여성부.
- 이삼식 외, 1999. 『북한 총인구 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외, 2000. 『남북한 인구변동과 인구사회학적 영향』.
- 이삼식 외, 2001. 『국민연금재정주체를 위한 장기인구전망』.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센터·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1998. “미혼모 증가문제와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26: 54-6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남훈 외, 1997.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1991. 『사회통계조사』.
- _____, 1994. 『사회통계조사』.
- _____, 1998. 『사회통계조사』.
- _____, 1999. 『사회지표』.
- _____, 2001. 『장래인구추계』.
- _____, 2002. 『생명표』.
- _____, 2004a. 『2004 사회통계 조사』 보도자료.
- _____, 2004b. Kosis. <http://kosis.nso.go.kr/>.
- _____, 2004c. 『2003년 출생 및 사망 통계』 보도자료.
- _____, 각 연도 『인구동태통계』.
- _____,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전국 출산력 및 보건실태조사』.
- 한성현, 김민자. 1994. “한국 부인들의 출산조절행태의 변천과 그 관련요인 분석.” 『한국인구학회지』, 17(1): 32-52. 한국인구학회.
- Andersson, G.. 1999. “Trends in childbearing and nuptiality in Sweden, 1961(71)-1997.” *Stockholm Research Reports in Demography* No. 133. Stockholm: Stockholm University Demography Unit (also in Andersson, G., Trends in childbearing and nuptiality in Sweden: a period analysis, dissertation series, Stockholm University Demography Unit).
- _____, 2000. “The impact of labour-force participation on childbearing behaviour: procyclical fertility in Sweden during the 1980s and the 1990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16: 293-333.
- Atoh, Makato, 1998. “Countries with substantially below-replacement fertility: the case of Japan.” A paper presented to the International Symposium: Population and Development Policies in Low fertility Countries: Challenges of changing age structur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eoul, 7-12 May 1998.
- _____, 2000. “The Coming of A Hyper-aged and Depopulat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ies: The Case of Japan.” *Expert Group Meeting on Policy Responses to Population Ageing and Population Decline*. NY 16-18 Oct. 2000. UN.
- _____, 2003. 先進諸國の少子女化の動向と少子女対策に関する比較研究. 人口

- 問題研究 59-1: 1-6. 2003. 3.
- _____, 2004. "How can Japan Cope with its New Demographic Challenge?" proceeding in 한국인구학회 국제학술세미나, 2004. 11. 5. 서울.
- Beets, Gijs 1997. "European Variations in Education and in Timing of First Birth: Primarily FFS Evidence." A Paper Presented in the 23rd General Population Conference of the IUSSP. 11-17 October 1997. Beijing.
- Bernhardt, E.. 2000. "Sweden-low fertility, European Observatory on Family Matters." available at: http://europa.eu.int/comm/employment_social/eoss/downloads/sweden_2000_fertil_en.pdf.
- Blake, J. 1968. "Two successive motivations for the declining birth rate in the west." In C. Hohn and R. Mackensen (1981). pp. 123-130.
- Caldwell, John C., Pat Caldwell, and Peter F McDonald, 1998. "Consequences of 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A paper presented to the International Symposium: Population and Development Policies in Low fertility Countries: Challenges of changing age structur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eoul. 7-12 May 1998.
- Calot , G and Hecht, J.. 1978. *The Control of Fertility Trends, in Population Decline in Europe*. pp. 178-97. London: Council of Europe.
- Cardwell, J. C.. 1976. "Toward a restatement fo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Population and Development* 2:321-366.
- Central Intelligence (CIA). 2003. Central Intelligence (CIA).
- Chesnais, J.C., 1985. "Les conditions d'efficacite d'une politique nataliste: examen theoristique et examples historiques."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3: 413-25. Liege:International Un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 (IUSSP).
- Council of Europe, 1998. *Recent Demographic Developments in Europ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cations.
- David, K., 1963. "The theory of change and response in modern demographic history." *Population Index* 29:345-366
- De Guibert-Lantoine and Monnier, 1997. "La conjoncture demographique: L'Europe et les pays developpes d'outre-mer." *Population* 5: 1204-5.
- Demney, P. and G. McNicoll eds., 2003. *Encyclopedia of Population*. Thomson Gale.

- Desplanques G., 1987.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fertility." in pp 496-501. *Donnees Sociales* Paris: INSEE.
- Easterlin, R. A. 1978. "New directions for the economic of fertility." In Yinger, J. Milton and S. J. Culter, eds. *Major Social Issues*. pp. 310-320. NY.
- _____, 1983. "Modernization and fertility: a critical essay." In Bulatao, R. A. and R. D. Lee. pp562-86 The Free Press.
- _____, 1980. *Birth and fortune: the impact of numbers on personal welfare*. NY: Basic Books
- Espenshade, Thomas J. 1978. "Zero Population Growth and the Economies of Developed Nation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4): 645-680.
- European Observatory on the Social Situation. 2003. *Demography and Family: Key Family issues in the EU member states*. pp. 8-9. URL: http://europa.eu.int/com/m/employment_social/eoss/index_en.html.
- Eurostat Newcronos database, 2002. Eurostat Newcronos database.
- Freedman, Ronald. 1995. "Asia's Recent Fertility Decline and Prospects for Future Demographic Change," *Asia-Pacific Population Research Reports* No. 1. Honolulu: East-west Center.
- Grant, J., S. Hoorens, S. Sivadasan, M. Loo, J. DaVanzo, L. Hale, S. Gibson, and W. Buzz. 2004.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Causes, Consequences, and Policy Options*. Rand.
- Hermalin, A. I., 1983. "Fertility Regulation and its Costs: A Critical Essay." pp. 3 in Determinants of Fert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Volume 2, Edited by Bulatao, R. A. and R. D. Lee, Academic Press.
- Hoem, B. and Hoem, J. M., 1996. "Sweden's family policies and rollercoaster fertility." *Journal of Population Problems* 52: 1-22.
- Hoem, B., 2000. "Entry into motherhood in Sweden: the influence of economic factors on the rise and fall in fertility, 1986-1997." *Demographic Research* 2(4).
- Hoem, J.M., 1990. "Social policy and recent fertility change in Swede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6(4): 735-48.
- _____, 1993. "Public policy as the fuel for fertility: effects of a policy reform on the pace of childbearing in Sweden in the 1980s." *Acta Sociologica* 36: 19-31.

- Kim Choe, Minja and Li Lei. 1997. "Later Marriage or No Marriage: An Examination of Marriage Pattern in Korea Using A Mixture Model for Duration Data." A Paper Presented in the 23rd General Population Conference of the IUSSP, 11-17 October 1997. Beijing.
- Kojima, Hiroshi 1998. "Aging and social welfare policies-health care and income maintenance programmes: Japanese experience." A paper presented to the International Symposium: Population and Development Policies in Low fertility Countries: Challenges of changing age structur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eoul, 7-12 May 1998.
- Kuroda, Toshio 1998. "Age Structure and Ageing Policy: Japan's Case." A paper presented to the International Symposium: Population and Development Policies in Low fertility Countries: Challenges of changing age structur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eoul, 7-12 May 1998.
- J Krishnamurthy, 1998. "Impact of the ICPD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Policies in East and South-East Asia." A paper presented to the International Symposium: Population and Development Policies in Low fertility Countries: Challenges of changing age structur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eoul. 7-12 may 1998.
- Jonsson, I.. 2003. "Fertility changes and family policy in Sweden." in M.-T. Letablier and S. Pennec (eds) *Changing family structure in Europe: new challenges for public policy*. Loughborough: European Research Centre.
- Kaufmann, F. X.. 2002. "Politics and policies towards the family in Europe." in F.X. Kaufmann and H.J. Schulze (eds) *Family life and family policy in Europe* 12: 419-9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R. D. 1994. "human fertility and population equilibrium."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 709:396-407
- Lesthaghe, Ron J. et al., 1988. "Cultural dynamics and economic theories of fertility chang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4(1): 1-46..
- Letablier, M. T.. 2003. *Fertility and family policies in France*. Paris: Centre d'Etudes de l'Emploi.
- Lutz. Wolfgang . 1998.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Policy*. Paper presented to the International Symposium: population and development policies in low fertility

- countries, Seoul, May 1998
- McIntosh, C. Alison 1986. "Recent Pronatalist Policies in Western Europe." i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2: 319-333. Below-Replacement Fertility in Industrial Societies - causes, consequences, policies -, A supplement.
- Monnier, A. 1998. "La conjoncture demographique - L'Europe et les pays developpes d'outre-mer." *Population* 54(4-5): 747-773.
- Namboodiri, Krishnan, and Luying Wei. 1997. "Fertility Theories and their implications regarding how low can low fertility be." A Paper Presented in the 23rd General Population Conference of the IUSSP, 11-17 October 1997, Beijing.
- Olah, L.S.. 1998. *Do public policies influence fertility? Evidence from Sweden and Hungary from a gender perspective.* Stockholm Research Reports in Demography 130, papers HB885.S5, no. 130. Stockholm: Stockholm University Demography Unit.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01. *Starting stro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welve nation thematic review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Palomba, Rossella., Adele Menniti, and Maria G. Caruso. 1997. A Paper Presented in the 23rd General Population Conference of the IUSSP, 11-17 October 1997, Beijing.
- Preston, Samuel H.. 1987. "Changing values and falling birth rates." In Davis, K. et al., pp. 176-95.
- Roussel, Louis. 1994. "Fertility and Family." European Population Conference, 23-26, March 1993, Genf, Proceedings, UN, Vol. 2, 35-110
- Ryder, Norman B. 1997. "Migration and Population Replacement" *Canadian Studies in Population* 24(1).
- Shryock, Henry S, Jacob S. Siegel, and Associates. 1976. *The Methods and Materials of Demography.* Edited by Edward G. Stockwell, Academic Press
- Tapinos, G. P. 2000. *Policy Responses to Population Ageing and Population Decline in France.* paper presented at the experts group meeting on policy responses to population ageing and population decline, 16-18 October, New York.

- Toulemon, Laurent. 1998. "Demographic Trends and Family Policy in France. A paper presented to the International Symposium: Population and Development Policies in Low fertility Countries: Challenges of changing age structur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eoul, 7-12 May 1998.
- Ulrich, R. E.. 1998. "Grau oder bunt? Zuwanderungen und Deutschlands Bevölkerung im Jahre 2030 [Grey or colourful? Immigration and Germany's population in 2030]." in M. David, T. Borde and H. Kentenich (eds) *Migration und Gesundheit: Zustandsbeschreibung und Zukunftsmodelle*. pp. 17-32. Frankfurt-am-Main: Mabuse.
- UN. 1956. *Methods of Population Projections by Age and Sex, Manual III (Manuals on methods of estimating population)*, ST/SOA/Series A, Population Studies, No. 25.
- _____, 1995. *Women's Education and Fertility behavior: recent evidence from the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New York, NY: United Nations.
- _____, 1997. *Fertility trends among low fertility countries*. In proceedings of the expert Group Meeting on Below-Replacement Fertility. New York: 4-6 Nov. 1997. ESA/P/WP.140. pp.19-77
- _____, 2000. *Replacement migration: Is it a solution to declining and ageing popul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Geneva and New York: United Nations.
- _____, 2004.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2 Revision and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01 Revision*. <http://esa.un.org/unpp>. 13 October 2004.
- _____, Each Year. *Demographic Yearbook*.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 2002. "Dynamic of fertility and partnership in Europe." in *insights and lessons from comparative research* (vol. II, eds E. Klijzing and M. Corijn). Geneva and New York: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 Vidal, I. and Valls, C.. 2002. *The case of Spain. Changes in family structures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policies: services for small infants*. Centre d'Iniciatives de l'Economia Social, available at: <http://www.emes.net/files/Spain-I-PT.doc>.
- Witte, J. C. and Wagner, G. G.. 1995. "Declining fertility in East Germany after

- unification: a demographic response to socio-economic chang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1(2): 387-97.
- Zoubanov, A.. 2000.. "Population ageing and population decline: government views and policies." expert group meeting on policy responses to population ageing and population declin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pp. 1-15. New York: United Nations.

인구고령화 협동연구과제 04-02

인구고령화의 전개와 인구대책

2004년 12월 24일 인쇄

2004년 12월 31일 발행

저 자 이 삼 식 외

발행인 박 순 일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

대표전화 : 02)380-8000

등 륙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일 지 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ISBN 89-8187-313-5 93330

